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95호

2021.7.15.(목)





[]

제2021-1919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21-19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21-34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7
제2021-345호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15~’ 24)」 시행을 위한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 24)」 고시	8
제2021-349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동 224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10
제2021-351호	개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2
제2021-352호	염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2
제2021-353호	평고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0
제2021-35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68
제2021-357호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2
제2021-358호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3
제2021-36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서울대학교)	111
제2021-365호	마포구 동교동 17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 도면 고시	119
제2021-366호	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2
제2021-3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54
제2021-187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156
제2021-1884호	2019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금반환금 채납분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알림 공시송달	158

제2021-1888호	중구 황학동 249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60
제2021-1899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	164
제2021-190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166
제2021-1903호	서울공예박물관 자료구입공고(재공고)	170
제2021-1911호	서울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완료	175
제2021-191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78
제2021-1918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80
제2021-1920호	도시관리계획(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81
제2021-1921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182
제2021-1930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183
제2021-1934호	공인 등록 공고	184
제2021-1935호	공인 폐기 공고	185
제2021-273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186
제2021-7호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고시	187
제2021-11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	189
제2021-127호	용두희망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	193
제2021-1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199
제2021-14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201
제2021-1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203
제2021-1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노원구) ..	206
제2021-1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209
제2021-1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동작구)	211
제2021-1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212
제2021-1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213
제2021-13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219

제2021-789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종로구)	224
제2021-790호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종로구)	234
제2021-990호	행당제6,7구역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성동구) ..	239
제2021-995호	행당제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성동구)	246
제2021-1034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도봉구)	251
제2021-944호	도시계획시설(수락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노원구)	253
제2021-1159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은평구)	278
제2021-11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은평구)	279
제2021-1162호	도시관리계획(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내발산동 755-1 공공시설용지2 용도변경) 재열람공고(강서구)	280
제2021-18호	소방시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양천소방서)	282
제2021-189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83
제2021-32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5
제2021-32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6
제2021-32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7
제2021-32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8
제2021-32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9
제2021-33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0



[]

2021 - 1919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 21. 6. 23.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등)의 반영을 통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의 원활한 조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 나.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나.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법에 맞추어 보완함.
 - 1) 법에 따라 목적 조항에 모법을 명시(안 제1조)
 - 2) 법 제2조의 정의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안 제2조)
- 다. 그 밖에 법에서 서울시장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1) 법 제6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 3) 법 제11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안 제16조)
 - 4) 법 제14조의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안 제17조)
 - 5) 법 제23조의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6)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시장 → 구청장) 등(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보행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행정책과(전화: 02-2133-2420, 팩스: 02-2133-1052, 이메일: blueocea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93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을 위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명칭 변경(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전문위원 등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5조).
- 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면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7960, 팩스: 02-2133-0832, 이메일: lionk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34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고구동산교	동작구 본동 485-4	동작구 도로관리과	- 다중이 이용하는 교량시설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제3중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손상에 대해 보수·보강 실시	

2021 - 345

「2 (' 15~ ' 24)」
「 (' 20~ ' 24)」

「2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15~ ' 24)」수정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 ' 24)」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1. 시행계획 개요

- 가. 수립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나. 계획성격 : 정부 기본계획*에 따른 5년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15~ ' 24)」수정계획(환경부, ' 20.4월)
 다. 계획기간 : 2020~2024년
 라.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사업 주요내용

- 도로이동오염원 관리
 -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 조기폐차, DPF 부착 등
 - 저공해 자동차 확대 보급 : 전기·수소 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 비도로이동오염원 관리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 DPF 부착, 동시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 김포공항 대기질 관리 : 공항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 강화,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을 통한 친환경인프라 전환 등
- 배출시설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강화 : TMS 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 평균 30%,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 평균 33% 강화
- 생활오염원 관리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및 사업용 저녹스버너 확대 보급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 도로청소차 확대 보급 :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운영

나. 2024년 오염물질 삭감계획

(단위 : 톤/년)

구 분		PM-10	PM-2.5	NOx	SOx	VOCs
전망 배출량(A)		8,432	2,240	60,545	4,667	64,816
목표 배출량(B)		6,048	1,677	48,705	4,616	61,280
목표 삭감량(A-B)		2,384	563	11,840	51	3,536
삭감량(C=C1+C2+C3+C4)		2,387	563	14,696	54	3,555
삭 감 량	도로이동오염원(C1)	227	209	7,015	6	725
	비도로이동오염원(C2)	92	85	1,080	0	278
	배출시설(C3)	9	8	413	47	0
	생활오염원(C4)	2,059	262	6,187	0	2,553
삭감 후 배출량(A-C)		6,045	1,677	45,849	4,613	61,261
달성률(C/(A-B)*100)		100%	100%	124%	105%	101%

다. 소요 재원 : 5년간(' 20~' 24) 약 4조 7,378억 원 투자계획 수립

※ 국비 23%(1조 1,022억 원), 지방비 67%(3조 1,747억 원), 기타 10%(4,609억 원)

3. 행정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 또는 서면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팩스) : ☎ 02-2133-3637(팩스 02-2133-1025)

2021 - 349

() ()
(224 KCTC)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08호(2004.12.15.)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95호(2017.3.16.)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된 바 있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KCTC부지(서초구 양재동 224번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3.10.) 및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1.4.2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양재동 224번지,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을 해제하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R&D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R&D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0	-	3,067,090.0	' 01.12.15 (서고 제2001-418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155	대 1-	지구계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19	10~16	국지도로	155	대 1-	지구계	일반도로	-	-	현황도로 확폭

주)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해당 부분만 기재

○ 결정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9	소로 1-19	• 노선일부 폭원 확장 (B = 10 → 10~16m)	• KCTC부지 내 일부 폭원 확장을 통한 현황도로 유지

나) 철도(변경없음)

다) 주차장(변경없음)

라)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 일대	328,072.95	감)9,741.4	318,331.55	' 82.02.18 (건고 제76호)	-

○ 유통업무설비 총괄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8,072.95	감)9,741.40	318,331.55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사무소	양재동 214	15,355.20	-	15,355.20	
		대규모점포(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양재동 215	28,972.30	-	28,972.30	
		간이주유소	양재동 216외1	7,976.90	-	7,976.90	
		화물터미널	양재동 217-7외2	3,768.50	-	3,768.50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양재동 217외3	12,858.90	-	12,858.90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대규모 점포	양재동 217-6	9,598.50	-	9,598.50	
		집배송시설	양재동 222외1	16,789.60	-	16,789.60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양재동 223외1	32,093.47	-	32,093.47	
폐지	유통 업무 설비	물류터미널, 전문상가단지, 출고장	양재동 224	9,741.40	감)9,741.40	-	
기정	유통 업무 설비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양재동 225외6	86,002.50	-	86,002.50	
		생활물자저장소	양재동 229외2	17,539.30	-	17,539.3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재동 230외2	64,438.40	-	64,438.40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창고,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양재동 231	22,937.98	-	22,937.98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세부시설명	건 축 규 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24	9,741.40	물류터미널, 전문상가단지, 출고장	60%이하	317%이하	10층이하 (해발55m이하)	' 17.03.16. (서고제95호)
폐지		양재동 224	-	-	-	-	-	-

○ 건축물조서(양재동 224) : 폐지(삭제)

○ 결정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통업무 설비	면적 변경 - 328,072.95㎡ → 318,331.55㎡ (감 9,741.40㎡)	시 정책과 부합하는 R&D용도 개발을 위해 KCTC부지 유통업무설비 시설해제
		KCTC부지 유통업무설비 시설해제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 및 건축물조서 폐지	물류터미널로 개발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한 R&D용도로의 개발을 위해 세부시설 및 건축 결정내용 폐지

나)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다) 시장(변경없음)

- 4)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방제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가) 불허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허용용도 결정조서(신설)

구분	분류	용도 지역	허 용 용 도				비고
특별 계획 구역 (KCTC)	A	일반 상업 지역	R&D 용도 (전체 연면적 40% 이상)	연구 전용 공간 ^{주1)}	연구 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
				저렴 연구 공간 ^{주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직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간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그 외 일반상업지역 허용 시설 ※ 판매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 연면적 15% 이하(공공지원민간 임대 10%, 분양 5%)	

주1) 연구전용공간 중 업무시설 입주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유기업 입주

주2) 공공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되, 주변시세의 80%로 공급(8년 이상)

2)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조서 : 변경

가) 기준 및 허용용적률 결정조서

○ 기정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	-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	-
	제2종	180%이하	200%이하	-	-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	200%이하	-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별관)
	제3종	220%이하	250%이하	-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102번지, 212번지 (양재리본타워)
준주거지역	-	320%이하	-	유통업무설비시설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	유통업무설비시설
	600%이하	800%이하	-	삼호물산 일대

- 일반주거지역내 블록단위 공동건축 시 기준/상한용적률은 180%이하/230%이하임
(공공용지부담률 10%이상)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변경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	-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
	제2종	180%이하	200%이하	-
		-	200%이하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별관)
	제3종	220%이하	250%이하	-
		220%이하	250%이하	102번지, 212번지 (양재리본타워)
준주거지역	-	320%이하	-	유통업무설비시설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	유통업무설비시설
	250%이하	400%이하	-	특별계획구역 (KCTC부지)
	600%이하	800%이하	-	삼호물산 일대

- 일반주거지역내 블록단위 공동건축 시 기준/상한용적률은 180%이하/230%이하임(공공용지 부담률 10%이상)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나) 상한용적률 결정조서(변경없음)
- 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변경없음)

라) 완화기준 설정표(변경)

○ 기정

구 분	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용 도 사 항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수용시 (이면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기준용적률×(권장면적÷주차장제외한 건축면적)×0.2(건축면적의 20%이상시)
		•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거용도로 건축할 경우	기준용적률×0.2×(주거면적÷건축면적)
대지내 공 지 ¹⁾	2. 전면공지	• 조성시 (법정 공개공지 및 건축법36조2항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조성되는 공지부분 제외)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α (α -피로티형:0.5, 개방형:1.0)
	3. 공개공지	• 조성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α (α -피로티형:0.5, 침상형:0.8, 개방형:1.0)
대지내 통 로	4. 공공보행통로 ²⁾	• 제공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8
환 경 친화적인 요소도입	5. 옥상녹화	• 옥상면적의 50%이상을 보급형 옥상녹화조성기법으로 녹화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법적 설치의무면적 제외)
	6. 녹색주차장	• 조성시	기준용적률×0.05
	7. 빗물저류조	• 우수의 활용을 위해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0.05
밀도에 관한 사항	8. 건폐율	• 1층접지부 건폐율을 40%이하로 건축시	기준용적률×0.5×(0.4-1층접지부 건폐율)

주1) 허용용도 중 R&D용도 적용과 함께 저염연구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을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 2 만큼 의무 확보(5만㎡ 미만의 중·소규모 부지는 저염연구공간을 과반이상 확보)

주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의 설치의무 이상면적을 제공할 경우에만 적용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및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은 완화 적용 제외)

주3) 지점도에 표기된 대지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경우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적용

마)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 변경

○ 기정

구 분	절대높이	계 획 기 준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40m이하	-
양재대로변	18m이하	• 구룡산 경관관리계획 반영
제1종일반주거지역	15m이하	• 법정기준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m이하	• 10m이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24m이하	• 구룡산 경관관리계획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연구시설부지)	35m이하	• 우면동 141(품질시험소 별관)

구 분	절대높이	계 획 기 준
제3종일반주거지역(연구시설부지)	50m이하	-
자연녹지지역	15m이하	• 법정기준 준용
자연녹지지역(교육문화회관부지)	40m이하	• 현황 및 개발계획 기준
양재동 102번지 시프트	88.4m이하(30층)	-
양재동 212번지 시프트	104.4m이하(35층)	-

- 절대높이 제한이 지정되지 않는 획지와 가구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을 적용
- 절대높이를 적용받는 가구 및 획지는 절대높이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을 동시에 적용받음
- 공지 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층부 2/3이상을 피로티로 구성할 경우 지층높이를 절대높이 제한에서 적용하지 않음
- 블록단위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건축시는 절대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7층이하로 규제
-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상한용적률의 달성이 절대높이 제한으로 불가능한 경우 절대높이를 초과하여 2개층 범위 내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
- 절대높이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되는 부분의 층간 높이는 나머지 층의 산술평균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구 분	절대높이	계 획 기 준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40m이하	-
양재대로변	18m이하	• 구룡산 경관관리계획 반영
제1종일반주거지역	15m이하	• 법정기준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m이하	• 10m이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24m이하	• 구룡산 경관관리계획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연구시설부지)	35m이하	• 우면동 141(품질시험소 별관)
제3종일반주거지역(연구시설부지)	50m이하	-
자연녹지지역	15m이하	• 법정기준 준용
자연녹지지역(교육문화회관부지)	40m이하	• 현황 및 개발계획 기준
양재동 102번지 시프트	88.4m이하(30층)	-
양재동 212번지 시프트	104.4m이하(35층)	-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65m이하	• 가로구역별 높이에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고높이 마련

- 절대높이 제한이 지정되지 않는 획지와 가구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을 적용
- 절대높이를 적용받는 가구 및 획지는 절대높이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을 동시에 적용받음

- 공지 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층부 2/3이상을 피로티로 구성할 경우 지층높이를 절대높이 제한에서 적용하지 않음
- 블록단위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건축시는 절대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7층이하로 규제
-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상한용적률의 달성이 절대높이 제한으로 불가능한 경우 절대높이를 초과하여 2개층 범위 내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
- 절대높이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되는 부분의 층간 높이는 나머지층의 산술평균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계획구역(KCTC부지)은 가로구역별 높이에 용도지역별 최고높이 기준 적용 및 중심지 위계에 따른 추가 완화를 통해 최고높이 65m로 계획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배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기 준
건축물의 방향성		•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변	• 가로축과 대지형태에 건축물 방향을 일치시켜 방향성 부여
		• 우면동 141(연구시설④-1)	• 우면산과 양재천의 녹지 생태축과 경관 연계 • 한국교육총연합회 차량출입구 주변 녹지축 훼손 최소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 1~2m이하의 도로확폭이 필요한 가구 및 획지 •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가 이루어지는 지역 • 도로모퉁이 등 공개공지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자연녹지지역(교육문화회관부지) • 우면동 141(연구시설④-1)	•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소요 폭원만큼 지정 • 3m(건축법 시행령 제31조) • 필요면적 또는 범위 • 7m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벽면한계선	• 과다하게 긴 가구 또는 간선도로변 대규모 대지와 이면부간의 보행통로가 필요한 경우	• 폭 4m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 변경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기 준
건축물의 방향성		• 강남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변	• 가로축과 대지형태에 건축물 방향을 일치시켜 방향성 부여
		• 우면동 141(연구시설④-1)	• 우면산과 양재천의 녹지 생태축과 경관 연계 • 한국교육총연합회 차량출입구 주변 녹지축 훼손 최소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 1~2m이하의 도로확폭이 필요한 가구 및 획지 •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가 이루어지는 지역 • 도로모퉁이 등 공개공지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자연녹지지역(교육문화회관부지) • 우면동 141(연구시설④-1) • 특별계획구역(KCTC부지)	•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소요 폭원만큼 지정 • 3m(건축법 시행령 제31조) • 필요면적 또는 범위 • 7m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양재대로 12길변 3m
	벽면한계선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기 준
벽면계선	• 과다하게 긴 가구 또는 간선도로변 대규모 대지와 이면부간의 보행통로가 필요한 경우	• 폭 4m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나) 건축물 형태계획(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가. 대지내 공지계획 : 변경

1) 전면공지 조성기준(변경없음)

2) 공개공지 조성기준(신설)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건축법 제 67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 • 위치 : 결정도상의 표시된 곳에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도록 할 것. 공개공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법 규정을 준수토록 함

나. 경관계획 : 변경없음

다.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변경

1)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지침(변경)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적 용 대 상
기정	간선 가로변	• 간선도로 및 광장에 접한 획지의 차량출입금지구간 규제	•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현릉로, 바우외길 - 다만, 양재동 203-14 차량출입 허용
변경	간선 가로변	• 간선도로 및 광장에 접한 획지의 차량출입금지구간 규제	•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현릉로, 바우외길, 양재대로 12길 변 - 다만, 양재동 203-14 차량출입 허용

2) 공동주차출입구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3)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4)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5) 공공보행도로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라.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지침 : 변경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신설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번지	-	증)9,782.6	9,782.6	

2)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①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번지	9,782.6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16.8)」 및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방안(’ 21.1)」 등 市 R&D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지침 : 신설

1) 지정목적(신설)

- 「양재Tech+City 조성계획(’ 16.8)」 및 「양재Tech+City 조성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방안(’ 21.1)」 등 市 R&D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며 공공성 확보와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계획지침 제시

2) 구역개요(신설)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	9,782.6	-

3) 특별계획구역 지침(신설)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R&D 용도 (전체 연면적 40% 이상)	연구전용 공간 ^(주1)	연구 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저렴 연구 공간 ^(주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직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간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그 외 일반상업지역 허용 시설 ※ 판매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 연면적 15% 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 10%, 분양 5%)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 용적률	• 250% 이하
	허용 용적률	• 400% 이하 ※ 저렴연구공간 + 직접연구지원공간 의무 확보량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 2
	최고높이	• 65m 이하
공공 기여	시설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의무)	• 전체토지가액주3) 20%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배치	• 대상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양재대로 12길변 3m
	대지내 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관장 • 소로 1-19와 면한 부분에 보도 조성
	차량출입 금지구간	• 양재대로 12길변 지정

주1) 연구전용공간 중 업무시설 입주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유기업 입주

주2) 공공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되, 주변시세의 80%로 공급(8년 이상)

주3)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에 따른 토지가액

III.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번지	-	증)9,782.6	9,782.6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번지	9,782.6	「양재 Tech+City조성계획(’ 16.8)」 및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방안(’ 21.1)」 등 市 R&D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수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782.6	-	9,782.6	100.0	-
일반상업지역	9,782.6	-	9,782.6	100.0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155	대 1-	지구계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19	10~16	국지도로	155	대 1-	지구계	일반도로	-	-	현황도로확폭

○ 결정사유서(변경)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9	소로 1-19	• 노선일부 폭원 확장 (B = 10 → 10~16m)	• KCTC부지 내 일부 폭원 확장을 통한 현황도로 유지

2)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

가)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 일대	328,072.95	감)9,741.4	318,331.55	'82.02.18 (건고 제76호)	-

○ 유통업무설비 총괄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8,072.95	감)9,741.40	318,331.55	
		사무소	양재동 214	15,355.20	-	15,355.20	
		대규모점포(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양재동 215	28,972.30	-	28,972.30	
		간이주유소	양재동 216외1	7,976.90	-	7,976.90	
기정	유통 업무 설비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화물터미널	양재동 217-7외2	3,768.50	-	3,768.50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양재동 217외3	12,858.90	-	12,858.90	
		대규모 점포	양재동 217-6	9,598.50	-	9,598.50	
		집배송시설	양재동 222외1	16,789.60	-	16,789.60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양재동 223외1	32,093.47	-	32,093.47	
폐지	유통 업무 설비	물류터미널, 전문상가단지, 출고장	양재동 224	9,741.40	감)9,741.40	-	
기정	유통 업무 설비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양재동 225외6	86,002.50	-	86,002.50	
		생활물자저장소	양재동 229외2	17,539.30	-	17,539.3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재동 230외2	64,438.40	-	64,438.40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창고,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양재동 231	22,937.98	-	22,937.98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세부시설명	건 축 규 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층수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24	9,741.40	물류터미널, 전문상가단지, 출고장	60%이하	317%이하	10층이하 (해발55m이하)	' 17.03.16. (서고제95호)
폐지			-	-	-	-	-	-

○ 건축물조서(양재동 224) : 폐지(삭제)

○ 결정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통업무 설비	- 면적 변경 - 328,072.95㎡ → 318,331.55㎡ (감 9,741.40㎡) - KCTC부지 유통업무설비 시설해제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 및 건축물조서 폐지	- 시 정책과 부합하는 R&D용도 개발을 위해 KCTC부지 유통업무설비 시설해제 - 물류터미널로 개발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한 R&D용도로의 개발을 위해 세부 시설 및 건축 결정내용 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분	분류	용도 지역	계 획 내 용				세부개발계획	비고
특별 계획 구역	④	일반 상업 지역	R&D 용도 (전체)	연구 전용 공간주 ¹⁾	연구 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구분	분류	용도 지역	계 획 내 용			세부개발계획	비고
(KCTC)		연면적 40% 이상)			-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렴 연구 공간주 ²⁾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직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간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그 외 일반상업지역 허용 시설 ※ 판매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 연면적 15% 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 10%, 분양 5%)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주1) 연구전용공간 중 업무시설 입주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유기업 입주

주2) 공공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되, 주변시세의 80%로 공급(8년 이상)

다.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좌동
	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주1) / - - 250% / 400% / -	좌동

주1) 허용용도(R&D용도) 적용과 함께 저렴한연구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을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 2 만큼 의무확보
(5만㎡ 미만의 중·소규모 부지는 저렴한연구공간을 과반이상 확보)

라.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	65m 이하	좌동

마.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배치	대상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보행밀도가 높은 양재대로 12길 변에 저층배치구간(높이 40m 이하)을 설정하여 건물배치(종합결정도 참조) - 정계산 조망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층배치구간 건축물과 구간 외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이격하여 배치
건축한계선	양재대로 12길변 3m	좌동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세부개발계획
기타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부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 양곡도매시장 개발사업과 연계, 보행결절부에 공개공지 계획
		보도	● 소로 1~19와 면한 부분에 보도 조성	● 소로 1~19와 면한 부분에 보도 폭 2m 조성 (차량진출입 구간, 공개공지 조성지 제외)

2)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양재대로 12길변 지정	좌동

4. 공공기여계획
가. 기부채납 면적산정

구 분	계	건축물 기부채납			비고
		계	대지면적 (지분)	건축공사비 ^{주1)} 환산면적	
기부채납	연면적(㎡)	6,196.0	6,196.0	-	지하 포함 (지상 3,741.9㎡)
	면적(㎡)	1,966.7	1,966.7	936.2 ^{주2)}	-
	비율(%)	20.1	20.1	9.6	10.5
현황도로 기부채납	면적(㎡)	67.8	-	67.8	-
	비율(%)	100.0	-	100.0	-
상한용적률 적용	면적(㎡)	-	-	-	-

구 분	계	건축물 기부채납			비고
		계	대지면적 (지분)	건축공사비 ^{주1)} 환산면적	
기부채납	비율(%)	-	-	-	

주1) 건축공사비 : 제곱미터당 284.4만 원(평당 941만원)으로 계산(2020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 적용)

주2) 대지지분 : (지상부 기부채납 연면적 / 지상부 연면적) X 대지면적

$$= (3,741.9\text{㎡} / 39,099.63\text{㎡}) \times 9,782.6\text{㎡} = 936.2\text{㎡}$$

주3) 환산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x 건축공사비) / 토지가액주4)} X 대지면적

$$= (6,196.0\text{㎡} \times 284.4\text{만 원/㎡}) / 1,672.3\text{억 원} \times 9,782.6\text{㎡} / 10,000 = 1,030.5\text{㎡}$$

주4) 토지가액 : 대지면적 x 공시지가 x 2 = 9,782.6㎡ x 8,550,000원/㎡ x 2 = 1,672.3억원

※ 대지지분 및 환산면적은 개발계획에 따른 추정으로 추후 사업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 공간 활용계획(안) : 서울시(거점성장추진단) 및 서초구(지역경제과)가 6 : 4로 활용

- 서울시(3~5층) : AI허브센터 기업체 입주(입주기업조건 서초구와 추후 협의)

- 서초구(1~2층) : 인공지능영상분석센터 및 관련시설 입주,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 등

나.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 분	시설명	대지면적 (토지지분, ㎡)	위 치	규 모 (연면적 등)	채납행정청 (관리청)
1	공공 임대시설	576.2	양재동 224번지 내	3,813.6㎡ (3~5층, 지하포함)	서울특별시
2	공공 임대시설	360.0	양재동 224번지 내	2,382.4㎡ (1~2층, 지하포함)	서초구청

※ 대지지분 및 환산면적은 개발계획에 따른 추정으로 추후 사업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와 서초구가 60 : 40으로 활용

※ 서울시와 서초구간 체결한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합의서는 결정도서에 첨부함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총괄표)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좌동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R&D 용도 (전체 연면적 40% 이상)	연구 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구전 용 공간 ^{주1)}		
			저렴 연구 공간 ^{주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직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간접연구 지원공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그 외 일반상업지역 허용 시설 ※ 판매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 연면적 15% 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 10%, 분양 5%)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 이하			좌동
	기준 용적률	250% 이하			좌동
	허용 용적률	400% 이하 ※ 저점연구공간 + 직접연구지원공간 용적률 의무확보량 : (허용 용적률-기준용적률) ÷ 2			좌동
	최고높이	65m 이하			좌동
공공 기여	시설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의무)	전체토지가액^{주3)} 20%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약 6,196.0㎡ (토지지분 936.2㎡)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배치	대상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보행밀도가 높은 양재대로 12길 변에 저층 배치구간(높이 40m 이하)을 설정하여 건물 배치(중합결정도 참조) - 청계산 조망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층배치구간 건축물과 구간 외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이격하여 배치
	건축한계선	양재대로 12길변 3m			좌동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대지내 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 소로 1-19와 면한 부분에 보도 조성	- 양곡도매시장 개발사업과 연계, 보행결절부에 공개공지 계획 - 소로 1-19와 면한 부분에 보도 폭 2m 조성 (차량전출입 구간, 공개공지 조성지 제외)
차량출입 금지구간	양재대로 12길변 지정	좌동

주1) 연구전용공간 중 업무시설 입주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유기업 입주

주2) 공공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되, 주변시세의 80%로 공급(8년 이상)

주3)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에 따른 토지가액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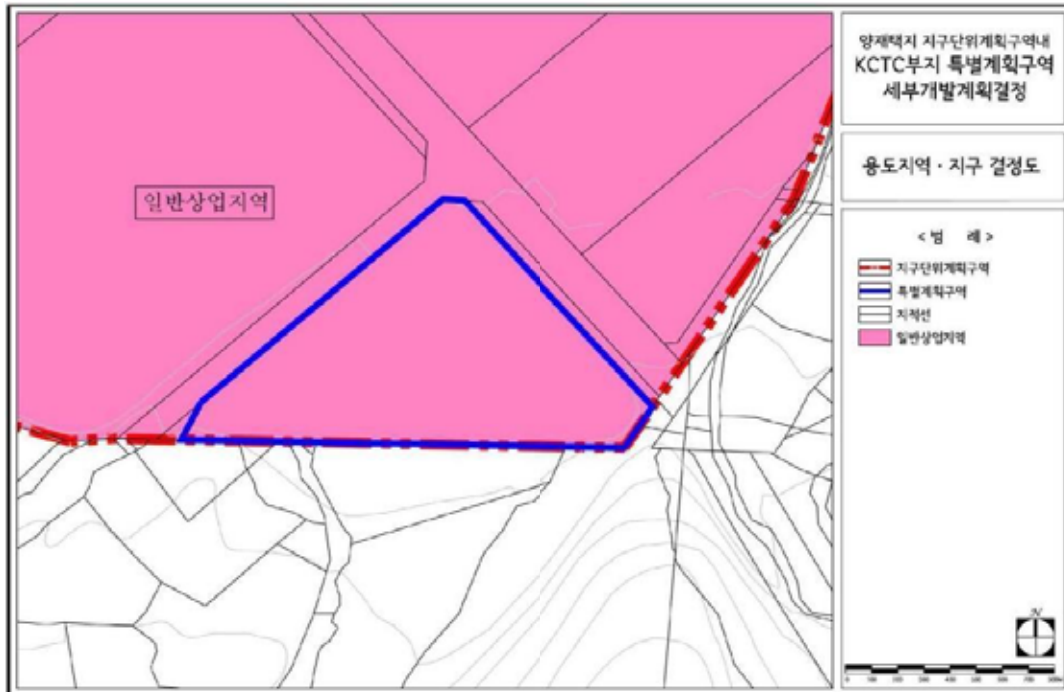
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02-2133-8407)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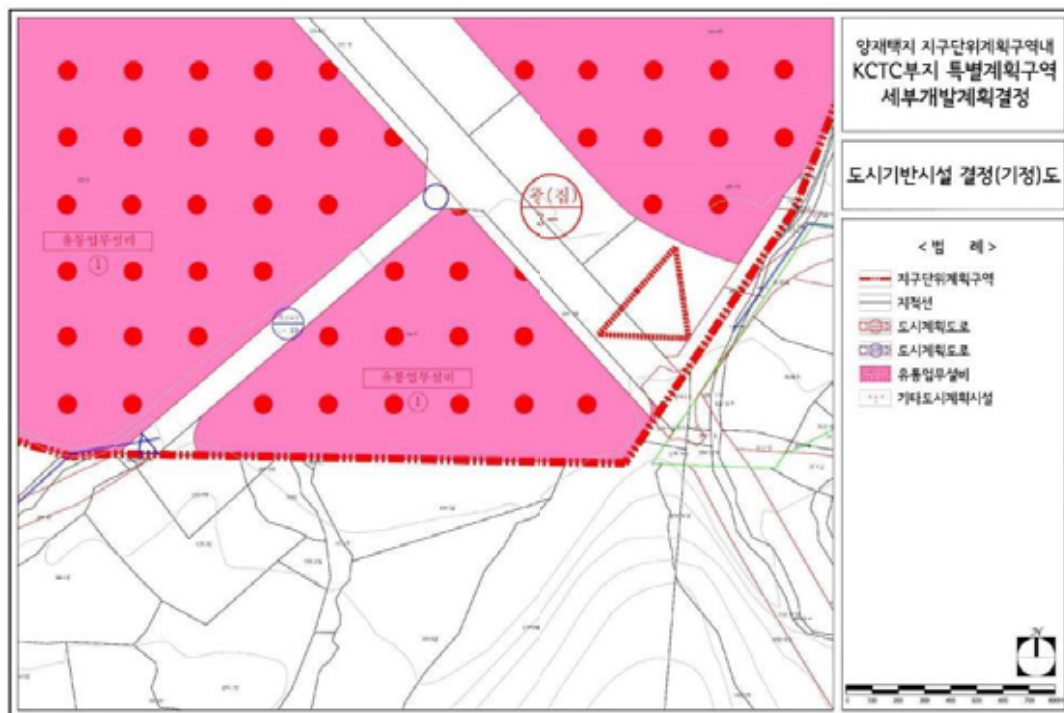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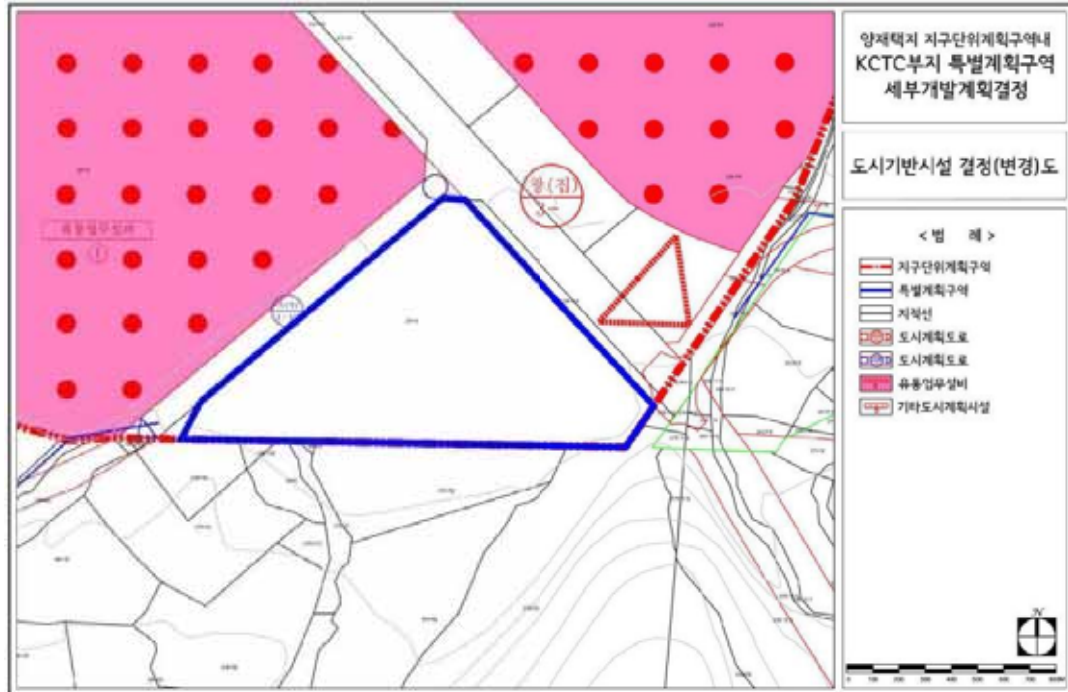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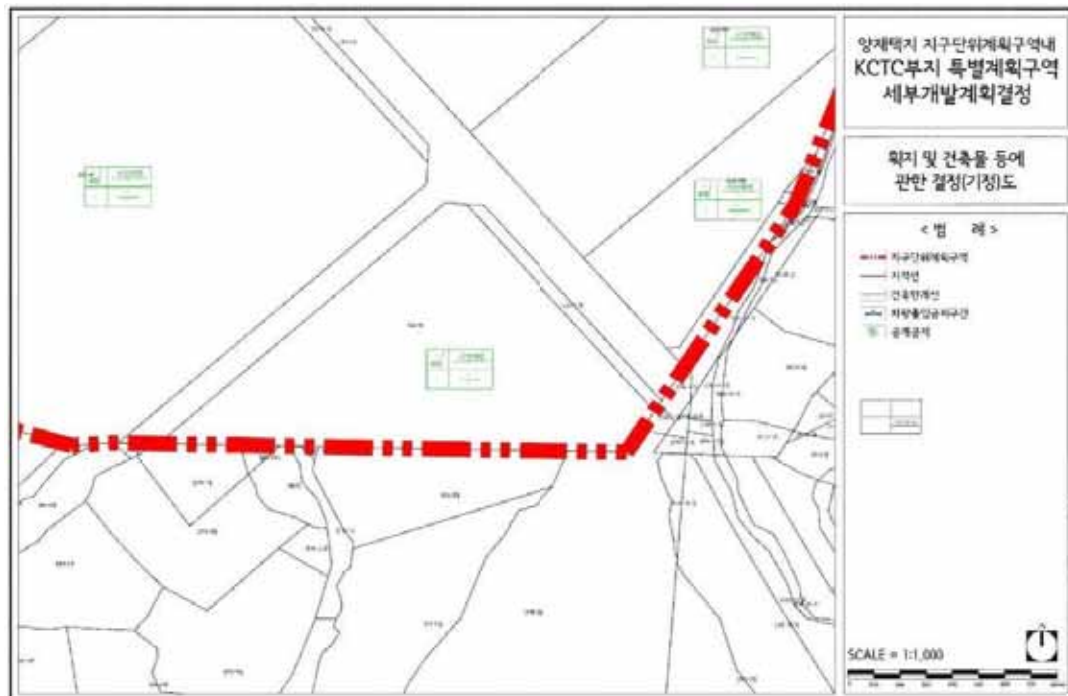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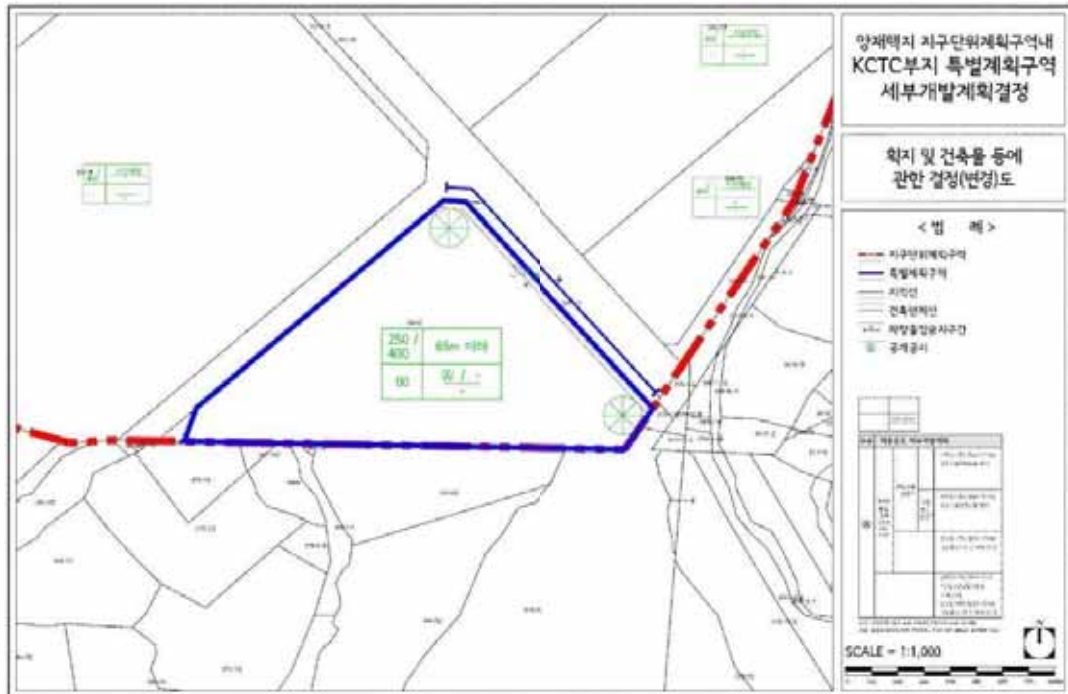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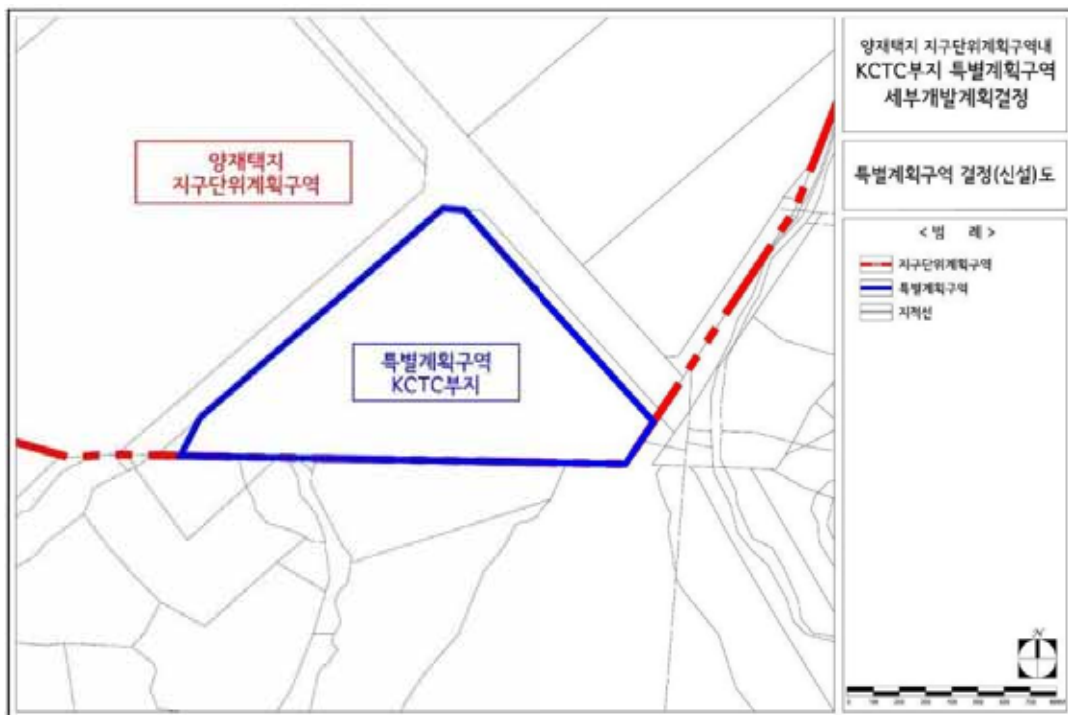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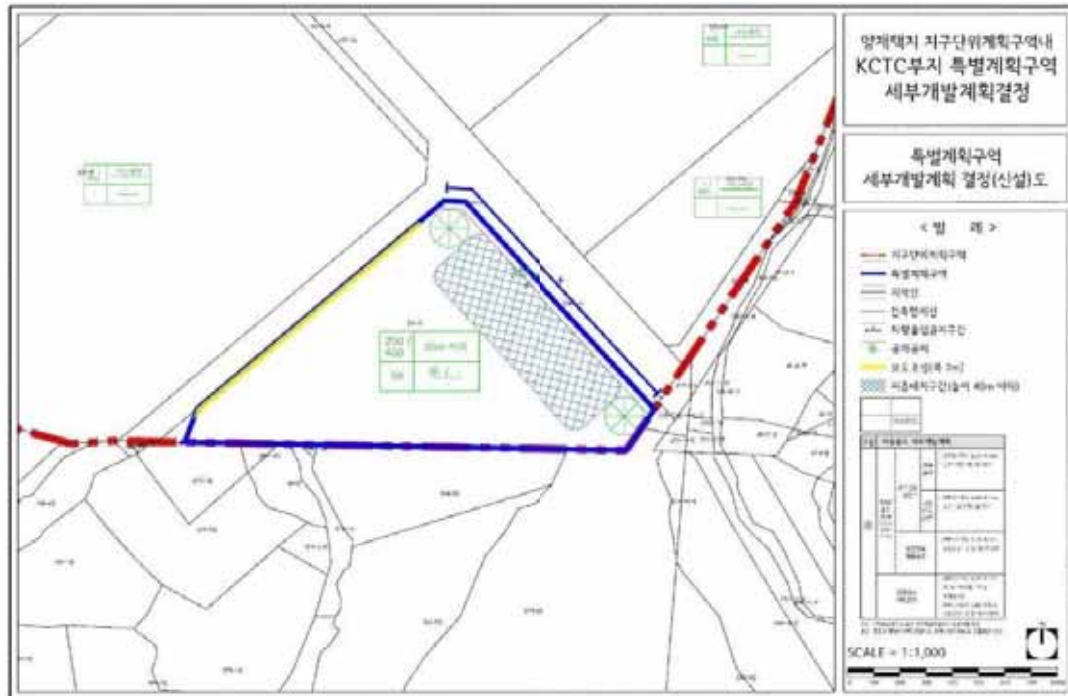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2021 - 351

()

건설부고시 제138호(1997. 7. 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4-359호(2004. 11. 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254호 (2020. 6. 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공원 경계, 면적 등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함

2.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산17번지 일대

3. 면적 : 208,063.3㎡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강 서 구 공원녹지과(☎ 02-2600-4187)

()

1. 총괄표 (위치 : 강서구 개화동 산17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 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86,500	18,887	1동	157	170	134	208,063.3	15,269	1	60.48	60.48	92	감) 3,618㎡
기 반 시 설	소 계	7,401	7,401	-	-	-	-	9,410	9,410					증) 2,009㎡
	도 로	7,401	7,401	-	-	-	-	9,410	9,410					
조 경 시 설		6,058	6,058				8	2,047	2,047				4	감) 4,011㎡
휴 양 시 설		1,783	1,783				58	2,557	2,557				68	증) 774㎡
운 동 시 설		1,961	1,961				62	448	448				18	감) 1,513㎡
교 양 시 설		1,491	1,491	1	157	170		198	198					감) 1,293㎡
편 익 시 설		210	210				6	609	609				2	증) 399㎡
녹지·기타		367,596	-	-	-	-	-	192,794.3	-					감) 174,801.7㎡
공원시설율(법정40%)		(18,887.0 / 386,500.0) x 100 = 4.89%						(15,269 / 208,063.3) x 100 = 7.34%						
공원건폐율(법정10%)		(157.0 / 386,500.0) x 100 = 0.04%						(60.48 / 208,063.3) x 100 = 0.03%						

2. 시설조서 (변경결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86,500	18,887		1동	157	170	134			208,063.3	15,269		1	60.48	60.48	95	감) 3,618㎡
기반 시설	소계			7,401	7,401								9,410	9,410						증) 2,009㎡
	도로		전지역	7,401	7,401							전지역	9,410	9,410						증) 2,009㎡
조경 시설	소계			6,058	6,058					8			2,047	2,047					4	감) 4,011㎡
	연못및습지	가	산34,산33-1,332-1,5	6,058	6,058						가	개화동 산34임	2,047	2,047						감) 4,011㎡ (구역 편입)
	그늘시령	①	8개소			목재				8	①	3개소							4	
		①-1	산34	(97)	(97)					(1)	①-1	개화동 산34임							1	
		①-2	산91-6,산142-3,산153-1	(126)	(126)					(4)										폐지 (구역 편입)
		①-3	산81-13	(22)	(22)					(1)	①-3	개화동 산81-13임							1	
		①-4	산152-1, 산153-1	(48)	(48)					(2)	①-4	방화동 463-15임							2	
휴양 시설	소계			1,783	1,783					58			2,557	2,557					68	증) 774㎡
	휴게소	나	7개소	1,783	1,783						나	7개소	2,557	2,557					18	증) 774㎡
		나-1	332-1	(120)	(120)															폐지 (구역 편입)
		나-2	선34	(350)	(350)					3	나-2	개화동 산34임	350	350					3	
		나-3	산142-3	(90)	(90)						나-3	방화동 산142-3임	90	90						
		나-4	산142-1	(60)	(60)					5	나-4	방화동 산142-8임	60	60					5	
		나-5	산142-1,3	(533)	(533)						나-5	방화동 산142-10임	533	533						
		나-6	산153-1	(410)	(410)															폐지 (구역 편입)
		나-7	산81-13	(220)	(220)						나-7	개화동 산81-13임	859	859						증) 639㎡
											나-8	개화동 산32-6임	627	627						신설 (봉화정휴게소)
									나-9	개화동 산34임	38	38					10	증) 38㎡ 시설변경 (약수터→휴게소) (나-9)		
장의자		전지역			목재				50		전지역			목재				50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계			1,961	1,961					62			448	448					18	감) 1,513㎡	
	체력 단련장	다	4개소	1,961	1,961						다	2개소	448	448					18	감) 1,513㎡	
		다-1	산142-1,3	(894)	(894)					18										폐지 (현황 반영)	
		다-2	산152-1	(326)	(326)					18	다-2	방화동 463-15임	300	300					18	감) 26㎡ (구역 편입)	
		다-3	산153-1,산91-6	(640)	(640)					12										폐지(구역 편입)	
		다-4	산153-1	(101)	(101)					14										폐지(구역 편입)	
											다-5	방화동 산142-8임	148	148							신설
교양 시설	소계			1,491	1,491								198	198						감) 1,293㎡	
	역사 생태관	1	산158-4	174	174	철재 목재	1등	157	170											폐지 (현황 반영)	
	야외환경 학습장	라	산158-4	1,214	1,214															폐지 (현황 반영)	
	6.25 위령탑	마	산81-13	103	103						마	개화동 산81-13임	198	198						증) 95㎡	
편익 시설	소계			210	210					6			609	609		1	60.48	60.48	2	증) 399㎡	
	약수터	바	2개소	210	210						바	방화동 463-17임	172	172							감) 38㎡ 부호변경 (바-2→바)
		바-1	산34	(38)	(38)																감) 38㎡ 시설변경 (약수터→휴게소) (나-9)
		바-2	산152-1, 산153-2	(172)	(172)																부호변경 (바-2→바)
	관찰용 다리	㉔	2개소			목재				2											
		㉔-1	산34,산33-1, 332-1,5	(424)	(424)					(1)											폐지(구역 편입)
		㉔-2	산158-1,5,4	(198)	(198)					(1)											폐지(현황 반영)
	데크	㉕	4개소			목재				4											
㉕-1		산34	(250)	(250)					(1)											폐지(현황 반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기)	바닥면적		
편익 시설	데크	㉓-2	산142-3,산322-1,산153-1,산158-1,5	(248)	(248)					(3)										폐지 (현황 반영)
	전망데크										아	4개소	376	376					2	
											아-1	개화동 산32-8임	79	79					1	신설
											아-2	개화동 산29-2임	79	79					1	신설
											아-3	개화동 산91-2임	45	45						신설
											아-4	개화동 산79-1임	173	173						신설
	화장실										2	방화동 산142-3임	61	61		1	60.48	60.48		신설
녹지	녹지 및 기타			367,595									192,794.3						감) 174,801.7㎡	

3. 도로조서 (변경결정)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4,243	7,401.0				
변경					3,766	9,410				
당초		계			580	2,610.0				
변경					587	3,296				
당초	소로	3류	1	4.5	580	2,610.0	차량진입로	산157-3	약사사 진입구	
변경		3류	1	6.0	587	3,296	차량진입로	방화동 산157-9입	약사사 진입구	
당초		계			3,663	4,791.0				
변경					3,179	6,114				
당초	산책로		1	1.5	645	967.5	산책로	산169	산152-1	
폐지										
당초			2	1.0	190	190.0	산책로	산81-7	산153-1	
변경			2	1.5	86	130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3	1.5	138	207.0	산책로	산158-1	산91-6	
폐지										
당초			4	1.5	810	1215.0	산책로	산91-6	산40-5	
폐지										
당초			5	1.5	138	207.0	산책로	산33-5	산36-7	
변경			5	4.0	122	483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6	
당초			6	1.0	482	482.0	산책로	산17	산36-4	
변경			6	4.0	116	396	산책로	산책로 31	도자구역	
당초			7	1.0	145	145.0	산책로	산25-2	산28-3	
변경			7	1.5	10	16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15	
당초			8	1.5	205	307.5	산책로	산84	산91-6	
폐지										
당초			9	1.0	205	307.5	산책로	산153-2	산36-4	
변경			9	3.0	241	723	산책로	소로 3-1	도자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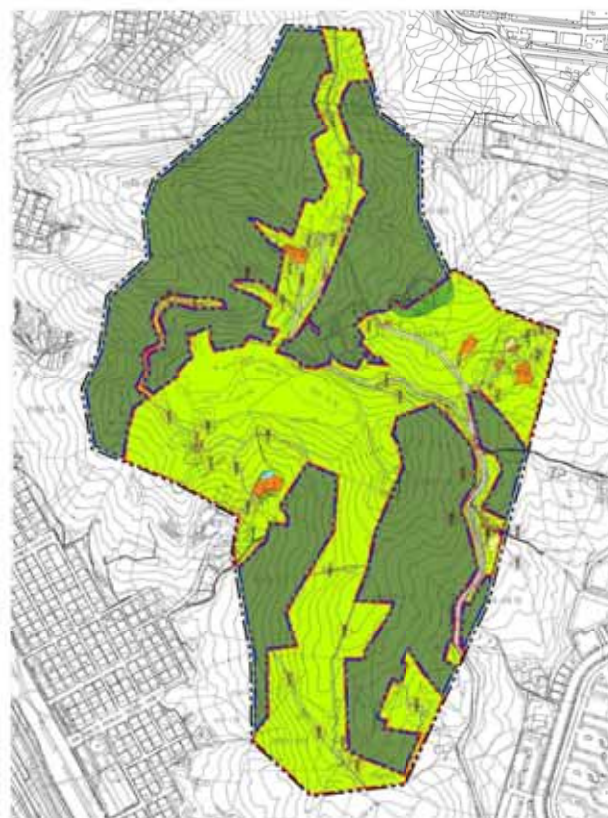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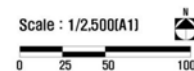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0	1.5	170	255.0	산책로	산32-9	약사사 진입구	
변경			10	2.0	29	57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5	
당초			11	1.0	85	85.0	산책로	산33-1	산332-5	폐지 (도자 구역)
폐지			11							
당초			12	1.5	150	225.0	산책로	산142-1	산34	
변경			12	2.0	165	332	산책로	방화동 산142-10임	소로 3-1	
당초			13	1.0	140	140.0	산책로	산152-1	산34	
변경			13	1.5	16	24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12	
당초			14	1.0	55	55.0	산책로	산152-1	산152-1	
변경			14	1.5	60	89	산책로	방화동 463-10임	소로 3-1	
신설			15	1.5	347	520	산책로	개화동 산28-1임	산책로 16	
신설			16	3.0	34	101	산책로	산책로 15	휴게소(나-8)	
신설			17	1.5	19	29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나-2)	
신설			18	1.5	15	22	산책로	방화동 산142-10임	산책로 12	
신설			19	1.5	93	140	산책로	산책로 12	휴게소(나-4)	
신설			20	1.5	73	110	산책로	산책로 9	도자구역	
신설			21	1.5	50	68	산책로	산책로 9	체력단련장(다-3)	
신설			22	1.5	252	378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6	
신설			23	1.5	21	31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6	
신설			24	1.5	11	16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2	
신설			25	1.5	132	233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신설			26	1.5	139	206	산책로	방화동 산169-4임	전망데크(아-3)	
신설			27	1.5	101	153	산책로	전망데크(아-3)	도자구역	
신설			28	1.5	197	296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37	
신설			29	1.5	93	139	산책로	산책로 30	산책로 2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신설			30	3.0	42	127	산책로	개화동 산81-13임	휴게소(나-7)	
신설			31	1.5	247	450	산책로	전망데크(아-4)	산책로 6	
신설			32	1.5	11	16	산책로	산책로 31	도자구역	
신설			33	1.5	96	139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31	
신설			34	1.5	32	48	산책로	소로 3-1	약수터(바)	
신설			35	1.5	10	15	산책로	산148-1임	약수터(바)	
신설			36	1.5	12	19	연결로	전망데크(아-4)	전망데크(아-4)	
신설			37	1.5	5	7	연결로	전망데크(아-4)	전망데크(아-4)	
신설			38	1.5	6	9	산책로	산책로 31	도자구역	
신설			39	2	165	331	산책로	산157-3	산책로 34	
신설			40	2	65	131	산책로	산책로 34	산책로 14	
신설			41	2	66	130	산책로	산책로 14	산153-3	

조성계획도[변경후]

개화산근린공원

Scale : 1/2,500(A1)



■ 地区別		人口	世帯数	世帯あたり人口	人口密度	人口増加率
北海道	道庁所在地	1,238,000	18,200	68	10	10
青森県	青森市	240,000	10,000	24	10	10
岩手県	盛岡市	240,000	10,000	24	10	10
宮城県	仙台市	1,000,000	20,000	50	10	10
秋田県	秋田市	240,000	10,000	24	10	10
山形県	山形市	240,000	10,000	24	10	10
福島県	福島市	240,000	10,000	24	10	10
茨城県	水戸市	1,000,000	20,000	50	10	10
栃木県	宇都宮市	1,000,000	20,000	50	10	10
群馬県	高崎市	1,000,000	20,000	50	10	10
埼玉県	さいたま市	1,000,000	20,000	50	10	10
千葉県	千葉市	1,000,000	20,000	50	10	10
東京都	東京都	1,000,000	20,000	50	10	10
神奈川県	横浜	1,000,000	20,000	50	10	10
新潟県	新潟市	1,000,000	20,000	50	10	10
富山県	富山市	1,000,000	20,000	50	10	10
石川県	金沢市	1,000,000	20,000	50	10	10
福井県	福井市	1,000,000	20,000	50	10	10
山梨県	山梨市	1,000,000	20,000	50	10	10
長野県	長野市	1,000,000	20,000	50	10	10
岐阜県	岐阜市	1,000,000	20,000	50	10	10
静岡県	静岡市	1,000,000	20,000	50	10	10
愛知県	名古屋市	1,000,000	20,000	50	10	10
三重県	津市	1,000,000	20,000	50	10	10
滋賀県	彦根市	1,000,000	20,000	50	10	10
京都府	京都市	1,000,000	20,000	50	10	10
大阪府	大阪市	1,000,000	20,000	50	10	10
兵庫県	神戸市	1,000,000	20,000	50	10	10
奈良県	奈良市	1,000,000	20,000	50	10	10
和歌山県	和歌山市	1,000,000	20,000	50	10	10
徳島県	徳島市	1,000,000	20,000	50	10	10
香川県	高松市	1,000,000	20,000	50	10	10
愛媛県	松山市	1,000,000	20,000	50	10	10
高知県	高知市	1,000,000	20,000	50	10	10
福岡県	福岡市	1,000,000	20,000	50	10	10
佐賀県	佐賀市	1,000,000	20,000	50	10	10
大分県	大分市	1,000,000	20,000	50	10	10
熊本県	熊本市	1,000,000	20,000	50	10	10
鹿児島県	鹿児島市	1,000,000	20,000	50	10	10
沖縄県	那覇市	1,000,000	20,000	50	10	10

2021 - 352

()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112호(1990.5.1)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강서구 고시 제1999-34호(1999.8.25)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254호(2020.6.29.)로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공원 경계, 면적 등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함

2.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산24-10번지 일대

3. 면 적 : 99,761.4m²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강 서 구 공원녹지과(☎ 02-2600-4186)

()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산24-10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구성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112,070	31,459	7	4,664	15,331	43	99,761.4	28,534	6	3,861.0	12,923.0	3	감) 2,925㎡
기 반 사 설	소 계	3,503	3,503				2	3,629	3,629				1	증) 126㎡
	도 로	2,644	2,644					3,335	3,335					증) 691㎡
	광 장	859	859				(2)	294	294				1	감) 565㎡
조 경 시 설		-	-				5							
휴 양 시 설		495	495	1	174	174	21	300	300	1	174	174		감) 195㎡
운 동 시 설		21,624	21,624	3	3,286	11,256		21,624	21,624	3	3,286	11,256		
교 양 시 설		2,932	2,932	2	1,168	3,865	1	715	715	1	365	1,457		감) 2,217㎡
편 익 시 설		2,905	2,905	1	36	36	2	2,266	2,266	1	36	36	2	감) 639㎡
관 리 시 설		-	-		-	-	12	-	-					
녹지, 기타		80,611						71,227.4						감) 9,383.6㎡
공원시설율(법정40%)		(31,459㎡ /112,070㎡) x 100% = 28.07%						(28,534㎡ /99,761.4㎡) x 100% =28.60%						
공원건폐율(법정10%)		(4,664㎡ /112,070㎡) x 100% = 4.16%						(3,861㎡ /99,761.4㎡) x 100% = 3.87%						

2.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112,070	31,459		7동	4,664	15,331	43			99,761.4	28,534		6동		3,861	12,923	3	감) 2,925㎡
기 반 시 설	소계			3,503	3,503					2			3,629	3,629						1	증) 126㎡
	도로			2,644	2,644								3,335	3,335							증) 691㎡
	광장			859	859					2		1개소	294	294							감) 565㎡
	(휴게광장)	가	산30-24	(565)	(565)					(1)											폐지 (현황반영)
	(진입광장)	나	산30-21	(294)	(294)					(1)	나	산30-21	294	294						1	
조 경 시 설	소계			-	-					5											
	파고라	①		(165)	(165)	목재				5											
		①-1	산24-01	(35)	(35)	목재				(2)											폐지 (현황반영)
		①-2	산30-24	(25)	(25)	목재				(2)											폐지 (현황반영)
		①-3	산30-24	(35)	(35)	목재				(1)											폐지 (현황반영)
		①-4	산30-21	(35)	(35)	목재				(4)											폐지 (현황반영)
		①-5	산32-01	(35)	(35)	목재				(1)											폐지 (현황반영)
	벤 치	②	전지역			목재				20											폐지 (현황반영)
휴 양 시 설	소계			495	495		1동	174	174	21			300	300		1동	174	174			감) 195㎡
	경로당	1	산32-1	300	300	조적	1동	174	174		1	산32-1	300	300	조적	1동	174	174			
	휴게소	다	산30-24	195	195					1											폐지 (도지구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시설	소계			21,624	21,624		3동	3,286	11,256				21,624	21,624		3동	3,286	11,256		
	정구장	라	산24-1	(1,600)	(1,600)						라	산24-1	(1,600)	(1,600)					골프연습장 중복면적	
	배드민턴장	마	산30-24	396	396						마	산30-24	396	396						
	골프연습장	2	산24-10	17,541	17,541	철골	1동	1,011	2,104		2	산24-10	17,541	17,541	철골	1동	1,011	2,104		
	부대시설	3		1,128	1,128		1동	937	1,796		3	2개소	1,128	1,128		1동	937	1,796		
		3-1	64-9	(480)	(480)	조적	(1동)	(338)	(865)		3-1	64-9	480	480	조적	1동	338	865		
		3-2	64-9	(648)	(648)	철골	(8개소)	(599)	(931)		3-2	64-9	648	648	철골	(8개소)	599	931		
	체력단련장	바	산24-01	300	300						바	산24-01	300	300						
스포츠센터	4	70	2,259	2,259	R. C	1동	1,338	7,356		4	70	2,259	2,259	R. C	1동	1,338	7,356			
교양시설	소 계			2,932	2,932		2동	1,168	3,865	1			715	715	R. C	1동	365	1,457	감) 2,217㎡	
	청소년회관 (구 독서실)	5	산32-01	715	715	R. C	1동	365	1,457		5	산32-01	715	715	R. C	1동	365	1,457		
	야외공연장	사	산30-24	642	642		1개소			1									폐지	
	문화회관	6	산30-24	1,575	1,575	R. C	1동	803	2,408										폐지	
편익시설	소 계			2,905	2,905		1동	36	36	2			2,266	2,266		1동	36	36	2 감) 639㎡	
	화장실	7	산24-13	(45)	(45)	조적	1동	36	36		7	2개소	28.0	28					증) 28㎡	
											7-1	산24-13	(45.0)	(45.0)	조적	1동	36	36	골프연습장 중복면적 7→7-1	
											7-2	산30-62	28.0	28.0					신설	
	음수대	③	산24-13	(4)	(4)		1개소			1	③	산24-13						1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건축면적	연면적								(기)			건축면적
편의 시설	주차장	아		2,905 (1,197)	2,905 (1,197)					1기 252대	아	5개소	2,238 (1,197)	2,238 (1,197)					1 230대	감) 667㎡
		아-1	산30-32	667	667					(22대)										폐지
		아-2	산32-01	1,334	1,334	철골	3층			1 (121대)	아-2	산32-01	1,334	1,334	철골	3층			1 (121대)	
		아-3	산24-12	(460)	(460)					(24대)	아-3	산24-12	(460)	(460)					(24대)	골프연습장 중복면적
		아-4	산24-13	789 (408)	789 (408)					(49대)	아-4	산24-13	789 (408)	789 (408)					(49대)	골프연습장 중복면적
		아-5	산24-13	115	115					(10대)	아-5	산24-13	115	115					(10대)	
		아-6	70-15	(329)	(329)					(26대)	아-6	70-15	(329)	(329)					(26대)	스포츠센터 중복면적
관리 시설	휴지통	④	전지역																폐지	
기타	녹지			80,611									71,227.4						감) 9,383.6㎡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40	2,683.8				골프장하부(156㎡)
변경					1,306	3,335				
당초	소 로	소 계			366	1,995				
변경					338	1,883				
당초		3	1	6	6	36	진입로	구역계	주차장-2	
당초		3	2	6	20	120	진입로	구역계	주차장-2	
당초		3	3	6	220	1,320	진입로	64-17	주차장-3	골프장하부(156㎡)
당초		3	4	6	28	168	진입로	소3-3	주차장-4	
당초		3	5	4	41	164	연결도로	주차장-2	골프연습장	
당초		3	6	4	28	112	진입로	30-25	문화회관	도자구역 편입
폐지										
당초		3	7	4	6	24	진입로	산32-1	청소년회관	
당초		3	8	3	17	51	진입로	산34	경로당	
당초	산 책 로	소 계			574	688.8				
변경					968	1,452				
당초		1	1.2	230	276	산책로	구역계	체력단련장	도자구역 편입	
변경			2	204	306	산책로	경로당	산30-64		
당초		2	1.2	126	151.2	산책로	휴게소	체력단련장	도자구역 편입	
변경			1.5	32	48		산30-21	산30-64		
당초		3	1.2	98	117.6	산책로	진입광장	휴게소		
변경			1.5	331	497		산책로 7	산책로 1		
당초		4	1.2	45	54	산책로	중심광장	휴게소	폐지	
폐지			-	-	-					
당초		5	1.2	75	90	산책로	산책로 1	문화회관		
변경			1.5	111	167		산30-66	산책로 1		
신설		6	1.5	115	172	산책로	산책로 3	233-6제		
신설		7	1.5	31	47	산책로	산30-73	산30-6	도자구역 편입	
신설		8	1.5	57	85	산책로	산책로 5	산30-24	도자구역 편입	
신설		9	1.5	87	130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2	도자구역 편입	

2021 - 353

()

건설부고시 제138호(1997.0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9호(1997.2.6.)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공원경계, 면적 등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함

2.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36-6번지 일대

3. 면 적 : 137,813.3㎡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강 서 구 공원녹지과(☎ 02-2600-4255)

()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일대)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 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				동 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		
합계		180,000.0	22,929.0	1	88.0	88.0	255	137,813.3	23,418.5	1	88.0	88.0	203	증) 489.5㎡
기반 시설	소 계	11,398.5	11,398.5	-	-	-	18	14,190.2	14,190.2				17	증) 2,791.7㎡
	도 로	9,982.0	9,982.0	-	-	-	-	12,829	12,829					증) 2,847㎡
	광 장	1,416.5	1,416.5	-	-	-	18	1,361.2	1,361.2				17	감) 55.3㎡
휴양시설		2,343.0	2,343.0	-	-	-	75	1,250.8	1,250.8				39	감) 1,092.2㎡
조경시설		2,338.4	2,338.4	-	-	-	16	1,230.2	1,230.2				24	감) 1,108.2㎡
유흥시설		353.1	353.1	-	-	-	11							감) 353.1㎡
운동시설		4,051.6	4,051.6	-	-	-	114	2,262.7	2,262.7				106	감) 1,788.9㎡
교양시설		1,937.4	1,937.4	-	-	-	15	3,218.6	3,218.6				11	증) 1,281.2㎡
편익 시설	소 계	507.0	507.0	1	88.0	88.0	6	522	522	1	88	88	6	증) 16.0㎡
	화장실	88.0	88.0	1	88.0	88.0	1	88	88	1	88	88	1	
	기 타	419.0	419.0	-	-	-	5	434	434				5	증) 15.0㎡
관리시설		-	-	-	-	-	-	744	744					증) 744.0㎡
녹지 및 기타		157,071.0	-	-	-	-	-	114,322.8						감) 42,748.2㎡
시설율(법정40%)		(22,929.0 / 180,000.0) x 100= 12.73%						(23,418.5 / 137,813.3) x 100 = 16.99%						
건폐율(법정10%)		(188.0 / 180,000.0) x 100= 0.10%						(88.0 / 137,813.3) x 100 = 0.06%						

2. 시설조서 (변경결정)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180,000.0	22,929.0	RC	1	88	88	256			137,813.3	23,418.5		1	88.0	88.0	203	증) 489.5㎡
기 본 시 설	소계			11,398.5	11,398.5					18			14,190.2	14,190.2					17	증) 2,791.7㎡
	도로			9,982.0	9,982.0						전지역	12,829	12,829							증) 2,847㎡
	진입광장	가		1,416.5	1,416.5					18	가	7개소	1,361.2	1,361.2					17	감) 55.3㎡
		가-1	방화동 산110임	726.8	726.8					4	가-1	방화동 산110공	726.8	726.8					4	
		가-2	방화동 산115임	48.4	48.4						가-2	방화동 산115-8임	48.4	48.4						
		가-3	방화동 132-80	28.6	28.6					6	가-3	방화동 132-39공	46	46					6	증) 17.4㎡
		가-4	방화동 132-80	22.7	22.7					1	가-4	방화동 132-39공	22.7	22.7					1	
		가-5	방화동 산123-5임	205.3	205.3						가-5	방화동 산123-5도	205.3	205.3						
		가-6	방화동 산136-1임	211.8	211.8					1										폐지
		가-7	방화동 산108임	74.0	74.0						가-7	방화동 산107-3도	74	74						
		가-8	방화동 산112-2	98.9	98.9					6	가-8	방화동 산110공	238	238					6	증) 139.1㎡
휴양	소계			2,343.0	2,343.0					75			1,250.8	1,250.8					39	감) 1,092.2㎡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시설	휴게소	나		2,343.0	2,343.0						나	16개소	1,250.8	1,250.8						39	감) 1,092.2㎡
		나-1	방화동 산108임	91.3	91.3					4	나-1	방화동 산102-1공	91.3	91.3						4	
		나-2	방화동 산98-1임	484.2	484.2					4											폐지
		나-3	방화동 산115-1임	202.5	202.5					14	나-3	방화동 산115-4임	202.5	202.5						14	
		나-4	방화동 산133임	200.1	200.1					8											폐지
		나-5	방화동 산137임	120.1	120.1					1	나-5	방화동 산137임	120.1	120.1						1	
		나-6	방화동 산129임	353.0	353.0					17											폐지
		나-7	방화동 산112-2임	55.3	55.3					3	나-7	방화동 산110공	55.3	55.3						3	
		나-8	방화동 산129임	53.5	53.5					4	나-8	방화동 128-9임	53.5	53.5						4	
		나-9	방화동 산126임	166.9	166.9					5											폐지
		나-10	방화동 산108임	25.1	25.1					1	나-10	방화동 127전	25.1	25.1						1	
		나-11	방화동 산102-1임	177.8	177.8					4	나-11	방화동 산102-1공	177.8	177.8						4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나-12	방화동 산102-1임	111.7	111.7					1	나-12	방화동 산102-1공	111.7	111.7					1	
		나-13	방화동 132-80임	44.6	44.6					5	나-13	방화동 132-39공	44.6	44.6					5	
		나-14	방화동 132-78임	13.2	13.2					1	나-14	방화동 132-39공	13.2	13.2					1	
휴양 시설	휴게소	나-15	방화동 132-78임	57.0	57.0					1	나-15	방화동 132-39공	57	57					1	
		나-16	방화동 132-80임	41.7	41.7						나-16	방화동 132-39공	41.7	41.7						
		나-17	방화동 산103-1임	145.0	145.0						나-17	방화동 산103-3임	145	145						
											나-18	방화동 산136-1임	61	61						신설 (현황반영)
											나-19	방화동 산110공	28	28						신설 (현황반영)
											나-20	방화동 산98-10임	23	23						신설 (현황반영)
조경 시설	소 계			2,338.4	2,338.4					16			1,230.2	1,230.2					24	감) 1,108.2㎡
	그늘시령	①	전지역	657.7	657.7						①	전지역	-	-					8	감) 657.7㎡
	다	9개소	1,680.7	1,680.7							다	5개소	1,230.2	1,230.2					16	감) 450.5㎡
	잔디광장	다-1	방화동 산136-1임	254.1	254.1															폐지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가로공원	다-2	방화동 산135-3임	331.7	331.7					2	다-2	방화동 산135-1임	331.7	331.7						2	
		다-3	방화동 산135-3임	188.5	188.5					8	다-3	방화동 산133-2임	188.5	188.5						8	
		다-4	방화동 산133임	282.4	282.4					2	다-4	방화동 산133임	282.4	282.4						2	
		다-5	방화동 산112임	350.3	350.3					4	다-5	방화동 산112임	203	203						4	감) 147.3㎡ (구역편입)
		다-6	방화동 산112임	224.6	224.6						다-6	방화동 산112임	224.6	224.6							
조경 시설	목계단	다-7	방화동 산110임	10.0	10.0																폐지
		다-8	방화동 132-80임	16.4	16.4																폐지
		다-9	방화동 산123-5임	22.7	22.7																폐지
유희 시설	소계			353.1	353.1				11												감) 353.1㎡
	어린이 놀이터	라		353.1	353.1																감) 353.1㎡
		라-1	방화동 산136-1임	307.1	307.1					(8)											폐지
		라-2	방화동 산136-1임	46.0	46.0					(3)											폐지
운동	소계			4,051.6	4,051.6					115			2,262.7	2,262.7					106	감) 1,788.9㎡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시설	게이트볼장	마		2,996.5	2,996.5																
		마-1	방화동 산110임	571.1	571.1					(3)	마	방화동 산110공	571.1	571.1						3	부호변경 (마-1→마)
	테니스장	마-2	방화동 산128-3임	887.4	887.4						라	방화동 산128-3임	887.4	887.4							부호변경 (마-2→라)
	다목적 운동장 (족구장, 농구장)	마-3	방화동 36-1답	770.2	770.2					(2)											폐지
		마-4	방화동 산128-5임	767.8	767.8					(2)											
운동 시설	체련 단련장	바		1,055.1	1,055.1					54	바	11개소	804.2	804.2						50	감) 250.9㎡
		바-1	방화동 산30-2임	23.7	23.7					2	바-1	방화동 128-9임	23.7	23.7						2	
		바-2	방화동 산123-5임	155.5	155.5					8	바-2	방화동 산110공	155.5	155.5						8	
		바-3	방화동 산136-1임	152.7	152.7					4											폐지
		바-4	방화동 산136-1임	396.2	396.2					7											폐지
		바-5	방화동 산112-2임	30.2	30.2					3	바-5	방화동 산110공	30.2	30.2						3	
		바-6	방화동 산110임	83.1	83.1					10	바-6	방화동 산110공	83.1	83.1						10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바-7	방화동 132-80임	51.3	51.3					4	바-7	방화동 132-39공	51.3	51.3						4	
		바-8	방화동 산102-1임	103.8	103.8					7	바-8	방화동 산102-1공	103.8	103.8						7	
		바-9	방화동 산108임	19.6	19.6					3	바-9	방화동 128-1	19.6	19.6						3	
		바-10	방화동 산108임	20.4	20.4					3	바-10	방화동 산102-1공	20.4	20.4						3	
		바-11	방화동 산108임	18.6	18.6					3	바-11	방화동 107-10임	18.6	18.6						3	
											바-12	방화동 산102-1공	18	18						2	신설 (현황반영)
											바-13	방화동 산133임	280	280						5	신설 (현황반영)
	생활체육 시설									53		전지역								53	
교양 시설	소계			1,937.4	1,937.4					15			3,218.6	3,218.6						11	증) 1,281.2㎡
	숲속 강의장	사-1	방화동 산136-1임	480.8	480.8					4											폐지
	민속놀이 마당	사-2	방화동 산136-4임	1,456.6	1,456.6					11	사	방화동 136-4공	1,456.6	1,456.6						11	부호변경 (사-2→사)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유아숲 체험원										차	방화동 산136-6임	1,762	1,762						신설 (현황반영)	
편익 시설	소개			507.0	507.0				6				522	522		1	88	88	6	증) 15.0㎡	
	약수터	아	방화동 산110임	83.8	83.8					아	방화동 산110공	83.8	83.8								
	화장실	자	방화동 산135-3임	88.0	88.0	R.C	1	88	88	1	1	방화동 135-3공	88	88	RC	1	88	88	1	부호변경 (자→1)	
	전망대	2	방화동 산116-9임	170.7	170.7					4	타	방화동 산116-9임	170.7	170.7					4	부호변경 (2→타)	
	음수전A					석조			1						석조				1		
	음수전B																			폐지 (오류보정)	
	주차장	카	2개소	164.5	164.5						카	2개소	164.5	164.5							
		카-1	방화동 산135-3임	40.9	40.9						카-1	방화동 135-3공	40.9	40.9							
		카-2	방화동 산133임	123.6	123.6						카-2	방화동 산133-2임	123.6	123.6							
	세족장										파	2개소	15	15							증) 15.0㎡
										파-1	방화동 산136-6임	6	6							신설 (현황반영)	
										파-2	방화동 산136-3임	9	9							신설 (현황반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관리 시설	소계												744	744						증) 744.0㎡
	창고									하	방화동 산129-3임	744	744						신설 (현황반영)	
녹지 및기 타	녹지			157,071.0									114,322.8						감) 42,748.2㎡	

3. 도로조서 (변경결정)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3,933	9,982				
변경					4,052	12,829				
당초	소로	계			497	2,982				
변경					922	7,435				
당초		3	1	6.0	243	1,458	주집입로	방화 산115임	서측진입구	
변경		3	1	6.0	246	1,436	주집입로	방화동 산115-6임	방화동 산136-4공	
당초		3	2	6.0	54	324	주집입로	동측진입구	방화 산103-1임	
변경		3	2	6.0	59	338	주집입로	방화동 산103-2도	방화동 산108-2도	
당초		3	3	6.0	62	372	주집입로	방화 산107임	방화 산108임	
변경		3	3	6.0	26	140	주집입로	방화동 산107-3도	방화동 산107-3도	
당초		3	4	6.0	129	774	주집입로	방화 52-3도	방화 53-1전	
변경		3	4	11.0	243	2,653	주집입로	방화동 산123-5도	방화동 52-8도	
당초		3	5	6.0	9	54	주집입로	서측진입구	방화 산138임	
폐지		3	5							
신설		3	6	7.0	64	502	주집입로	방화동 산110-7임	방화동 358-39도	
신설		3	7	5.0	140	771	주집입로	방화동 산111-1임	방화동 산98-8임	
신설		3	8	7.0	24	175	주집입로	방화동 산98-1임	소로 3-7	
신설		3	9	4.0	8	30	주집입로	방화동 산108-1도	방화동 산108-1도	
신설		3	10	12.0	112	1,390	주집입로	방화동 132-93임	소로 3-7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계			3,436	7,000				
변경					3,084	5,394				
당초	산책로	3	1	3.0	413	1,239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4	
변경		3	1	1.5	457	678	산책로	산책로 17	방화동 산138임	
당초		3	2	3.0	35	105	산책로	소로 1	산책로 1	
변경		3	2	3.0	40	121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	
당초		3	3	1.5	50	75	산책로	광장	산책로 4	
변경		3	3	1.5	46	69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 1	
당초		3	4	3.0	202	60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0	
폐 지		3	4	1.5	39	59	산책로	휴게소 (나-5)	산책로1	
당초		3	5	1.5	74	111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7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5	1.5	28	43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7	
당초		3	6	2.0	330	660	산책로	산책로4	다목적운동장1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6	2.0	265	464	산책로	휴게소 (나-9)	산책로 1	
당초		3	7	3.0	90	270	산책로	소공원4	방화 산116-6임	
변경		3	7	4.5	106	491	산책로	방화동 산123-7공	방화동 121-9임	
당초		3	8	1.5	232	248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 4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8	1.5	87	127	산책로	방화동 118-2도	산책로 10	
당초		3	9	1.2	96	144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34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9	1.5	75	113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34	
당초		3	10	3.0	370	1,110	산책로	소공원2	산책로 4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10	1.5	397	595	산책로	방화동 산99-5임	산책로 5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3	11	1.5	60	90	산책로	산책로 10	정자쉼터	
변경		3	11	1.5	60	85	산책로	체력단련장 (바-8)	산책로 10	
당초		3	12	1.0	149	149	산책로	소공원1	산책로10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12	1.5	234	351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5	
당초		3	13	1.5	46	69	산책로	산책로 27	산책로12	
변경		3	13	1.5	83	125	산책로	산책로 24	산책로 42	
당초		3	14	1.8	140	252	산책로	소공원3	소공원3	
변경		3	14	1.8	146	272	산책로	광장 (가-7)	광장 (가-7)	
당초		3	15	3.0	24	72	산책로	소공원3	소공원3	
폐지		3	15							
당초		3	16	3.0	6	18	산책로	소공원3	산책로 14	
변경		3	16	3.0	39	127	산책로	광장 (가-7)	산책로 14	
당초		3	17	1.5	86	129	산책로	산책로 4	나-10	
변경		3	17	1.5	103	155	산책로	산책로 1	전망대 (타)	
당초		3	18	1.5	124	186	산책로	서측진입구	산책로1	
폐지		3	18							
당초		3	19	2.0	30	60	산책로	서측진입구	방화 산138임	
폐지		3	19							
당초		3	20	2.0	8	16	산책로	방화 산1361임	방화 산136-1임	
폐지		3	20							
당초		3	21	1.5	102	153	산책로	산책로 1	방화 산 131-2임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21	1.5	11	16	산책로	산책로 1	도자구역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3	22	1.5	53	106	산책로	방화 산116-1임	다-4	
폐지		3	22							
당초		3	23	1.5	68	102	산책로	다-4	산책로3	
폐지		3	23							
당초		3	24	1.5	180	270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28	도자 구역편입
변경		3	24	1.5	89	124	산책로	산책로 29	산책로 3	
당초		3	25	1.0	38	38	산책로	산책로26	방화 산115임	
폐지		3	25							
당초		3	26	1.0	50	50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4	
폐지		3	26							
당초		3	27	1.0	61	61	산책로	산책로24	산책로29	
폐지		3	27							
당초		3	28	1.8	45	81	산책로	가-3	산책로 27	
변경		3	28	1.8	42	78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24	
당초		3	29	1.2	30	36	산책로	산책로 28	나-8	
변경		3	29	1.5	33	40	산책로	산책로 28	광장 (가-1)	
당초		3	30	1.8	40	72	산책로	가-5	나-18	
변경		3	30	1.8	44	79	산책로	휴게소 (나-15)	광장 (가-3)	
당초		3	31	1.8	15	27	산책로	가-5	가-4	
변경		3	31	1.8	16	24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3)	
당초		3	32	1.8	15	27	산책로	가-4	산책로 10	
변경		3	32	1.8	22	34	산책로	산책로 10	광장 (가-4)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3	33	1.5	26	39	산책로	정자쉼터	산책로11	
폐지		3	33							
당초		3	34	1.5	28	42	산책로	정자쉼터	산책로 11	
변경		3	34	1.5	29	43	산책로	휴게소 (나-12)	산책로 11	
당초		3	35	1.5	8	12	산책로	산책로 9	마을쉼터	
변경		3	35	1.5	8	12	산책로	산책로 9	휴게소 (나-11)	
당초		3	3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 14	
변경		3	36	1.5	15	23	산책로	휴게소 (나-10)	산책로 16	
당초		3	37	1.5	26	39	산책로	가-6	산책로 14	
변경		3	37	1.5	25	40	산책로	광장 (가-7)	산책로 14	
당초		3	38	2.0	6	12	산책로	동축진입구	소공원4	
변경		3	38	2.0	4	7	산책로	산책로 7	광장 (가-5)	
당초		3	39	2.0	19	38	산책로	방화 산110임	방화 산110임	
변경		3	39	1.5	27	40	산책로	휴게소 (나-12)	산책로 11	
당초		3	40	1.0	13	13	산책로	방화 산110임	방화 산110임	
폐지		3	40							
당초		3	41	1.5	34	52	산책로	방화 산132-2대	방화 산132-1대	
변경		3	41	1.5	39	58	산책로	산책로 9	휴게소 (나-17)	
신설		3	42	2.0	157	331	산책로	소로 3-6	소로 3-7	
신설		3	43	1.5	110	165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8	
신설		3	44	1.5	43	64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3	
신설		3	45	3.0	8	23	산책로	방화동 산135-3공	소로 3-1	
신설		3	46	2.0	47	95	산책로	산책로 14	도자구역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3	47	2.0	15	31	산책로	산책로 42	그늘시령 (①)	
신설		3	48	2.0	5	12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2	
신설		3	49	2.0	18	55	산책로	유아숲체험원 (차)	산책로 49	
신설		3	50	2.0	72	125	산책로	산책로 1	유아숲체험원 (차)	

조성계획도(변경전)

평고개근린공원

Scale : 1/2,000(A1)

0 25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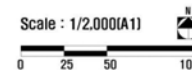
■ 범례

구분	구분명	구분 설명	범례
1	공원	공원	녹색
2	도로	도로	회색
3	건축물	건축물	회색
4	수역	수역	파란색
5	농지	농지	노란색
6	산림	산림	초록색
7	습지	습지	파란색
8	기타	기타	회색

조성계획도[변경후]

평고개근린공원

Scale : 1/2,000(A1)

[illegible]

2021 - 356

(:) (),
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33호(1977.5.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5	25~3 1.5	보조 간선 도로	660	본동 (광장25호)	본동 260-3	일반 도로	-	1977.05.03. (서고 133호)	• 도로폭 일부조정 - 부지면적의 5%미만의 경미한변경 • 시·종점변경없음
변경	대로	3	115	25~3 3.0	보조 간선 도로	660	본동 (광장25호)	본동 260-3	일반 도로	-	1977.05.03. (서고 133호)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류	대로3류	• 도로면적 증가(증 184㎡)	• 노들 고가차도 철거로 인한 일부 구간 도로폭 변경 (기정 : 25~31.5m → 25~33.0m)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본동 159 일대(현충로, 노들로)

3) 사업의 규모

- 노들남고가(폭8m, 연장522m), 노들북고가(폭7.5m, 연장461m) 철거
- 도로확장 폭 25~31.5m → 25~33.0m, 연장 6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토지 조서(별첨)

7) 위치도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지형도면 : 별첨

9)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다. 열람방법 및 장소

- 열람 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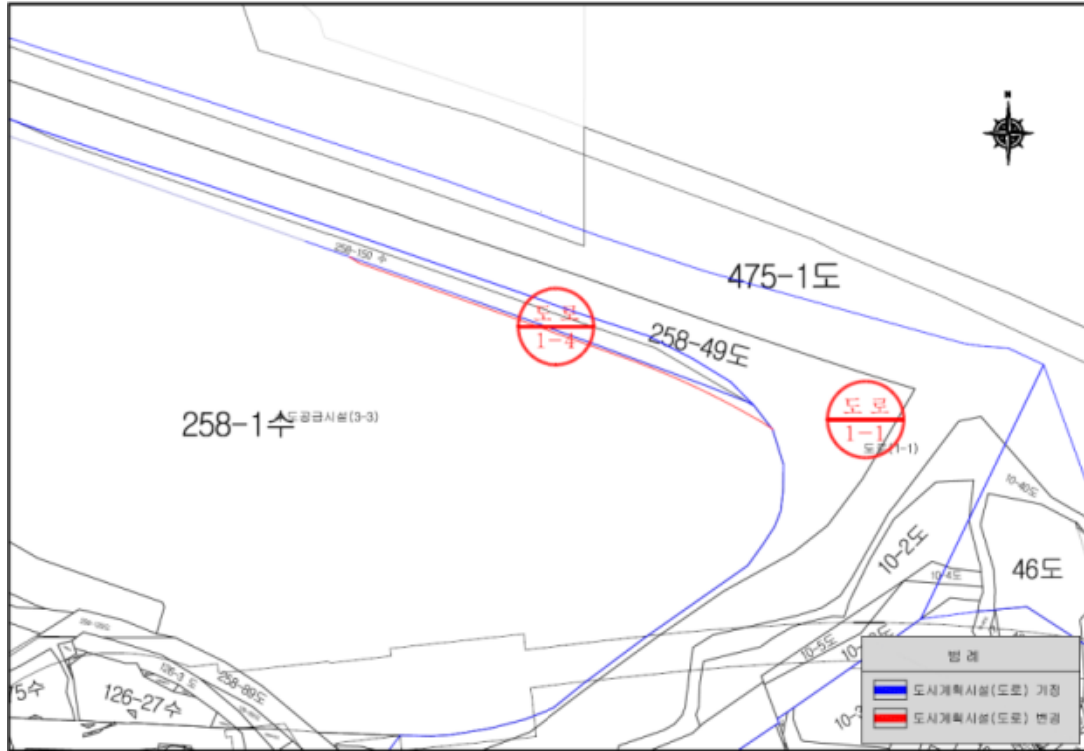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02-2133-8088)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2층 ☎ 02-3708-2589)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본동	477-1	도	30,346	852	국	국토교통부			
2	본동	475-1	도	28,236	4,344	국	국토교통부			
3	본동	10-4	도	2,061	876	공	서울특별시			
4	본동	46	도	1,191.6	995	공	서울특별시			
5	본동	5-13	도	7	7	국	기획재정부			
6	본동	9-6	도	352	307	공	서울특별시외1인		국세청	
7	본동	5-20	도	1,458	521	공	서울특별시			
8	본동	5-5	도	2,040	2,040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9	본동	5-14	수	56	56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0	본동	3-7	도	1,537	466	공	서울특별시			
11	본동	산3-7	도	883	149	공	서울특별시			
12	본동	산3-2	수	1,203	1,203	공	서울특별시			
13	본동	산2-6	수	291	166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4	본동	2-2	도	1,954	379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5	본동	산2-2	수	198	7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6	본동	258-62	도	263	2	공	서울특별시			
17	본동	258-49	도	6,849	5,445	공	서울특별시			
18	본동	258-150	수	1,373	1,236	공	서울특별시			
19	본동	258-1	수	37,425	184	공	서울특별시			
20	본동	10-2	도	1,385	353	국	국토교통부			
21	본동	9-45	도	195	63	공	서울특별시			
22	본동	5-7	도	3	3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3	본동	5-8	도	66	37	공	서울특별시			
24	본동	5-3	도	139	139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5	본동	5-9	도	66	6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6	본동	5-15	도	33	33	공	서울특별시			
27	본동	5-6	도	602	201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8	본동	5-16	도	73	73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9	본동	3-2	도	734	677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0	본동	3-9	도	221	41	공	서울특별시			
31	본동	산3-8	수	1,197	320	공	서울특별시			
32	본동	산2-5	수	63	63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3	본동	산2-9	수	588	64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4	본동	산2-4	수	2,380	683	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변경)



2021 - 357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5(2014.8.21.)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여,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4.28.)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명칭

- 기 정 :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 경 :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7.2.8.)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서대문구 창천동 *18-36, 30-8 일대	4,597.9	-	4,597.9	
변경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서대문구 창천동 18-42, 30-8 일대	4,597.9	-	4,597.9	

*창천동 18-36은 18-42로 합병 말소(2020.4.28.)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97.9	-	4,597.9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	-	-	-	-
획지	1-1지구	682.9	-	682.9	14.8	업 무
	1-2지구	1,406.7	-	1,406.7	30.8	판 매
	2-1지구	371.9	-	371.9	8.1	업 무
	2-2지구	1,556.9	-	1,556.9	33.9	관광숙박 → 공동주택
	2-3지구	579.5	-	579.5	12.6	업 무

※ 정비기반시설 계획 없음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597.9	-	4,597.9	100.0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의주로 2가 ~ 제2한강교	6,000	양측 15~20	서고438호 (80.12.31)	신촌로
폐지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연대 ~ 공덕동 ~ 삼각지	4,600	양측12	서고164호 (84.04.22)	연세로

※ 「국계법」 개정(2018.4.18)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로 지정 미관지구 일괄 폐지

(2) 방화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 지구	아현동~신촌로타리	67,440	건고727호 (63.12.13)	신촌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 설치계획

시설명	위 치		면 적 (㎡)			관리청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도서관	2-2지구 지상 5층	2-2지구 지상 3층	969.59	감) 49.15	920.44	서대문구	사업시행자가 시설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도서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나, 공공기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시하며,
면적은 건축심의 과정 등에서 건축계획 조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서관	· 위 치 - 2-2지구 지상5층 → 지상3층 · 연면적 - 969.59㎡ → 920.44㎡ (감 49.15㎡)	2-2지구 세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면적 조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지구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597.9	계	4,597.9		21	2	-	19	-	
			1-1	682.9	창천동 30-10일대	5	-	-	5	-	
			1-2	1,406.7	창천동 30-8일대	5	-	-	5	-	
			2-1	371.9	창천동 18-46일대	2	-	-	2	-	
			2-2	1,556.9	창천동 *18-42일대	7	-	-	7	-	
			2-3	579.5	창천동 18-49일대	2	2	-	-	-	

*2-2지구 대표지번 창천동 18-36은 18-42로 합병 말소(2020.4.28.)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		지구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환경정비 구역	4,597.9	1-1	682.9	창천동 30-10 일대	업 무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80 이하	
			1-2	1,406.7	창천동 30-8 일대	판 매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80 이하	
			2-1	371.9	창천동 18-46 일대	업 무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80 이하	
			2-2	1,556.9	창천동 18-36 일대	관광 숙박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상한 1,151이하	100 이하	

구분	구역		지구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2-3	579.5	창천동 18-49 일대	업 무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60 이하													
변경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597.9	1-1	682.9	창천동 30-10 일대	업 무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80 이하													
			1-2	1,406.7	창천동 30-8 일대	판 매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80 이하													
			2-1	371.9	창천동 18-46 일대	업 무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80 이하													
			2-2	1,556.9	창천동 18-42 일대	공동 주택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780이하 상한 872.24이하	100 이하													
			2-3	579.5	창천동 18-49 일대	업 무	60 이하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	60 이하													
신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2-2지구)	• 건설비율 (「도정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제1항, 제3항) - 재개발사업 주택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건설 • 총세대수 : 196세대 • 건립규모 <table><tr><td>건립규모</td><td>세대수 (세대)</td><td>비율 (%)</td><td>비 고</td></tr><tr><td>합 계</td><td>196</td><td>100.0</td><td>전용24~49㎡</td></tr><tr><td>60㎡ 이하</td><td>196</td><td>100.0</td><td>임대 40세대</td></tr></table>									건립규모	세대수 (세대)	비율 (%)	비 고	합 계	196	100.0	전용24~49㎡	60㎡ 이하	196	100.0	임대 40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세대)	비율 (%)	비 고																	
합 계	196	100.0	전용24~49㎡																			
60㎡ 이하	196	100.0	임대 4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연세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 건축지정선 : 신촌로터리변 5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 신촌로변, 연세로변																			

※ 향후 지구별 건축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시 정비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한용적률 결정(2-2지구는 금번 변경 결정)

※ 용도, 밀도, 최고높이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범위 안에서 결정

※ 본 건축시설 계획은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항임

(1) 2-2지구 심의 완화 사항

기정

응 적 른

① 기준용적률

② 허용용적률

• ① + ② + ③ + ④ = 1,151.39% → 1,151% 적용

• 600%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200%

인센티브 항목			산식	산정값
계획유도 인센티브	대지내공지	전면공지	$600 \times (98.4/1,556.9) \times 3 = 113.76$	113.76
	건축물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600 \times 0.1 = 60.00$	60.00
	보행개선	지하철 지하연결통로 설치	$600 \times 0.5 = 300.00$	300.00
친환경 인센티브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총 사용량 9%이상)	$600 \times 0.05 = 30.0$	30.00
		에너지소비총량제	$600 \times 0.05 = 30.0$	30.00
		옥상녹화	$600 \times (156.4/1,556.9) \times 0.1 = 6.02$	6.02
		자연지반	$600 \times (249.7/1,556.9) \times 0.2 = 19.24$	19.24
허용용적률			200% (≤559.02)	

③ 상한용적률

• 건축물 공공시설 제공 : 86.80%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3α = 800% X [1.3 X {119.95/(1,556.9-119.95)}] = 86.80%
- α :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후 대지면적(건축물 환산면적 제외)

구 분	면 적	비 고
환산부지면적	51.81㎡	• 건축물 제공면적 : 969.59㎡
대지지분	68.14㎡	
공공시설제공 합계	119.95㎡	

④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따른 특례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264.59%
= (특별법령용적률 -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비율 × 인센티브 계수
= (1,300 - 800) X 0.7259 X 0.729 =264.59%

관광숙박 시설비율	계수	인센티브 계수					
		입지여건		건축계획		교통처리	
		상대정화구역	대지면적	공개공지	객실비율	버스주차공간	이면도로진출입
72.59%	0.729	○	1,556.9㎡	법정10%이하	80% 이상	×	○
		0.9	1	0.9	1.0	0.9	1.0

변경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180%(기준+허용=780%)

인센티브 항목			산식	산정값	
의무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100%	
계획 유도	도시경제활성화	지역별 활성화 유도용도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정률 0.2		
	주거환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량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특정층(최상층) 개방, 실내공개공지	정률 0.1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	정량 30%	최대 50%	50%
		무장애도시조성	정량 30%		
			공공보행통로 등(지하통로 포함)	정률 2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 30%	30%		
허용용적률			180% (≤ 200%)		

상한용적률

• 건축물 등 공공시설 제공 상한용적률 : 92.24%(기준+허용+상한=872.24%)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 + 1.3α)

= 780% × (1 + 1.3×0.09097) = 872.24

- α =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후 대지면적(환산면적 포함, 토지지분 제외)

= 141.63 ÷ 1,556.9 = 0.09097

구 분	면 적	비 고
환산부지면적	59.28㎡	• (계획면적×표준건축비) ÷ (공시지가×부지가액가중치(2배)) = (920.44㎡×2,729,000원/㎡) ÷ (21,183,020원/㎡×2) = 59.28㎡ - 표준건축비 : 2,729,000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도서관(1,500㎡) 적용) - 대상지 평균공시지가 : 21,183,020원/㎡
대지지분	82.35㎡	• 대지면적 x (면적 ÷ 전체면적) =1,556.9㎡ x (920.44㎡ ÷ 17,400.64㎡) = 82.35㎡
공공시설 제공합계	141.63㎡	• 환산부지면적 + 대지지분

신설

주거 비율 및 용적률 완화

- 주거비율 및 주거용적률 완화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부문](변경)」(‘19.10.17.)」
 -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 90% 완화, 비주거 10% 이상 의무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전용85㎡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전용40㎡이하 확보
- 용도별 면적 및 용적률 계획

구 분		용도별 면적			용도별 용적률	
		연면적	비 율	비 고		비 율
주 거	공동주택	13,178.05㎡	75.7%	비주거비율 10% 이상	744.87%	85.6%
	분 양	11,085.27㎡	63.7%		610.45%	70.1%
	임 대	2,092.78㎡	12.0%		134.42%	15.5%
비주거	판매시설	3,302.15㎡	19.0%		74.31%	14.4%
	공공도서관	920.44㎡	5.3%		51.47%	
합 계		17,400.64㎡	100.0%		870.65%	100.0%
- 공공임대주택 계획

위 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계획 연면적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1,556.9	1	40 - 주거비율완화 40세대 - 의무임대 없음	전용 29㎡ 16세대 전용 38㎡ 24세대	2,092.78㎡

 - ※ 임대주택은 계획건축물 안에 분양세대와 혼합하여 배치
 - ※ 임대주택 규모 및 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확보기준

구 분	기 준	산 정 식
주거 완화 적용	용적률 용적률 133.84% 이상	$\frac{\{(\text{허용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text{비주거비율}(\text{비주거 용적률/계획용적률}) + 400\%)\}}{2}$ $= \{780 - (780 \times 14.4\% + 400)\} \div 2$
	연면적 연면적 2,083.75㎡ 이상	$\text{확보 기준 용적률} \times \text{획지면적}$ $= 133.84\% \times 1,556.9\text{㎡}$
	세대수 세대수 39.8세대 이상	$\text{확보 기준 연면적} \div \text{임대주택 공급면적}$ $= 2,083.75\text{㎡} \div 52.32\text{㎡}$
상업지역 의무임대	해당없음	$\text{전체세대수 } 5\% \text{ 이상, } 200\text{세대 미만 제외}$ ※ 주거완화적용 임대주택에 포함 가능

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8년 이내	「도정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	-	196세대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반영

3.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1)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2	서대문구 창천동 *18-36, 30-6호 일원	4,597.9	-
변경	특별계획구역 2	서대문구 창천동 18-42, 30-6호 일원	4,597.9	-

*창천동 18-36은 18-42로 합병 말소(2020.4.28.)

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기 정>

구분	계획지침		비 고
토지이용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 수립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방화지구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판매, 업무, 관광숙박,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세부개발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전층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일반상업지역 600% / 800%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최고높이	10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획지계획 등)

<변 경>

구분		계획지침	비 고
토지이용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 수립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방화지구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판매, 업무, 관광숙박,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공동주택	세부개발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전층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일반상업지역 600% / 800%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최고높이		10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획지계획 등)

※ 금회 추가된 권장용도 ‘공동주택’은 특별계획구역2[신촌지역(서대문) 재개발 정비구역] 내 2-2지구에 한함

4. 2021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21.4.28.) 심의결과 조건사항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 1-1. ‘무장애도시’ 항목의 인센티브(30%)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상 우수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 부여할 것
 - 1-2. 장애인 보행동선계획 관련 인근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대상지로의 무장애 접근동선을 계획하고, 대상지 내 장애인 주차장에서 신설계획한 도서관(지상3층)의 주출입구까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
2. 교통처리계획 관련
 - 2-1. 주차장계획 관련 조업차량용 주정차공간(최소 1대)을 확보할 것
 - 2-2. 대상지 동측 도로의 ‘폭원’ 및 ‘횡단구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차량진출입구의 폭원은 축소 검토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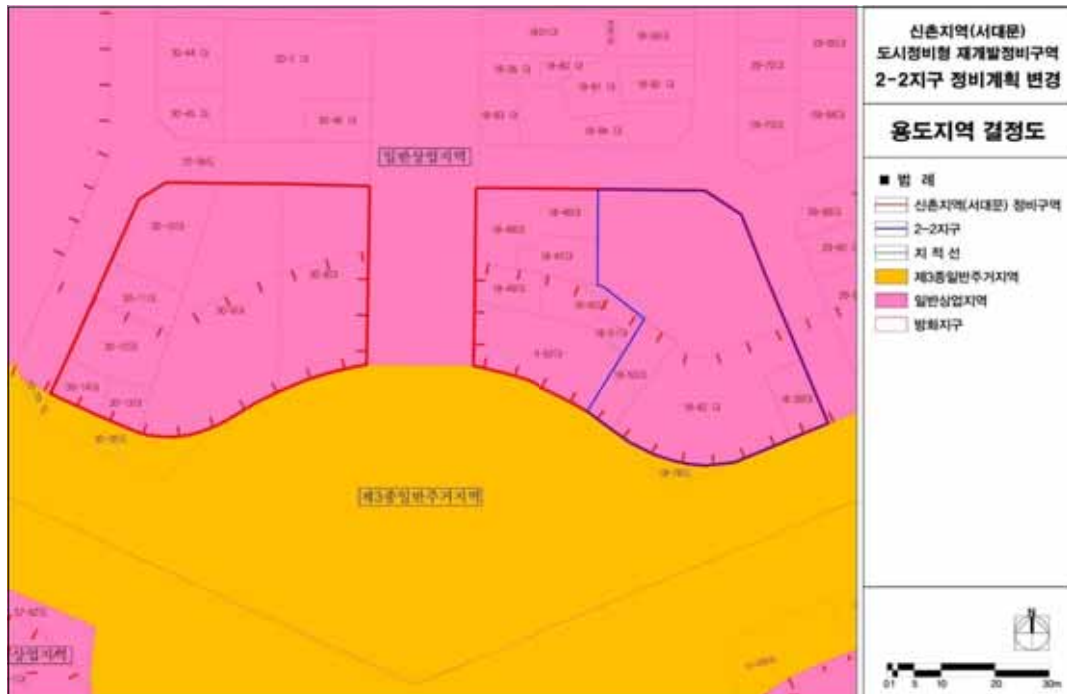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2133-4638) 및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330-161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2021 - 358

()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 3. 12.)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서울시 고시 제2003-226호(2003. 8. 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청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공원 경계,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공원주제, 특색 변화없이 일부 증·감된 공원시설 현황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산1-5번지 일대
3. 면 적 : 449,161㎡ (성북구 329,290㎡)
4.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총괄 및 시설조서, 도로조서) : 별첨
5.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 별첨
 -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0)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02-2241-3665)
 동대문구청 푸른도시과(☎ 02-2127-4775)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1. 총괄표(위치:성북구 석관동 산 1-5 일대) - 동대문구+성북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
계		1,009,660	56,524.11		9,737.38	28,117.3	130	449,161.0	33,288			76	감) 23,236.11㎡
기 반 시 설	소계	33,943.85	33,943.85					24,612	24,612				감) 9,331.85 ㎡
	도로	29,311	29,311					23,838	23,838				감) 5,473㎡
	광장	4,632.85	4,632.85					774	774				감) 3,858.85㎡
조경시설		7,114	7,054				13	5,568	5,568			5	감) 1,486㎡
휴양시설		853	108.16				46	109	109				증) 0.84㎡
유흥시설								470	470				증 470㎡
운동시설								339	339				증 339㎡
교양시설		14,071.03	12,642.1	3	9,539.38	27,919.3		2,190	2,190				감) 10,452.1㎡
편익시설		2,776	2,776	3	198	198	9					9	감) 2,776㎡
관리시설							62					62	
녹지 및 기타		950,902.12						415,873					감) 535,029.12㎡
공원시설율(법정40%)		(56,524.11/1,009,660) × 100 =5.60%					(33,288 / 449,161.0) × 100 = 7.41%						
공원건폐율(법정10%)		(9,737.38/1,009,660) × 100 =0.96%					-						

※ 총괄표(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계	1,009,660	56,524.11		9,737.38	28,117.3	130	449,161.0	33,288				76	
동대문구							119,871.0	3,070					
성북구							329,290.0	30,218				76	

2. 시설조서 (총괄) - 동대문구+성북구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1,009,660	56,524.11		6	9,737.38	28,117.3	130			449,161.0	33,288					76	감) 23,236.11㎡	
기반 시설	소계				33,943.85	33,943.85							24,612	24,612						감) 9,331.85 ㎡	
	도 로				29,311	29,311							23,838	23,838						감) 5,473㎡	
	광장	광장	가		4,632.85	4,632.85						가	2개소	774	774						감) 3,858.85㎡
		입구소 광장	가-1	상월곡 산7-4	(254)	(254)						가-1	상월곡 산7-4	254	254						
		진입광장	가-2	상월곡 산7-4	(520)	(520)						가-2	상월곡 산7-4	520	520						
		휴식광장	가-3	하월곡 산5-57	(962)	(962)														폐지 (도자구역)	
		부진입 광장	가-4	석관동 산1-5	(2,896.85)	(2,896.85)														폐지 (도자구역)	
	조경 시설	소계				7,114	7,054				13			5,568	5,568					5	감) 1,486㎡
잔디광장		나	상월곡 산7-14	1,133	1,133														폐지		
입구연못		다	상월곡 산7-4	470	470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파고라	①	-								①	2개소								2		
		①-1	-	(108.16)	(108.16)																폐지	
		①-2	하월곡 산5-57	(123)	(123)						①-2	하월곡 산5-57									1	
		①-3	하월곡 산5-57	(81)	(81)						①-3	하월곡 산5-57									1	
	조경수원	라	하월곡 산5-57	5,391	5,391						라	하월곡 산5-57	5,391	5,391								
	원형화단	마	하월곡 산5-57	(177)	(177)						마	하월곡 산5-57	177	177								
	목교	②	상월곡 산7-4	(40)	(40)																	폐지
조경 시설	정자										②	3개소								3		
											②-1	상월곡동 산8-10									1	오류정정 (변경전 누락시설 반영)
											②-2	상월곡동 산8-10									1	
											②-3	석관동 산 1-77									1	
	boardwalk	③	하월곡 산5-57	(216)	(216)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망데크	④	-	120	60															폐지
휴양 시설	소계			853	108.16					46			109	109						증) 0.84 ㎡
	휴게소	바		853	108.16						바	1개소	109	109						증) 0.84 ㎡
		바-1	하월곡 산5-57	(134)	(27.04)															폐지
		바-2	하월곡 산5-57	(107)	(27.04)															폐지
		바-3	청량리산1-1	(317)	(27.04)															폐지
		바-4	하월곡 산5-57	(295)	(27.04)															폐지
												바	상월곡동 산8-10	109	109					
	야외테이블	5	-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장의자	6	-																	폐지
		6-1	-																	폐지
유희 시설	소계												470	470						증) 470 ㎡
	어린이놀이터									다	석관동 산 1-77	470	470						신설 (현황 반영) 증) 470㎡	
운동 시설	소계											339	339						증) 339 ㎡	
	체력단련시설									자	2개소	339	339						증) 339 ㎡	
										자-1	상월곡동 산8-10	151	151						신설 (현황 반영) 증) 151㎡	
										자-2	상월곡동 산8-10	188	188						신설 (현황 반영) 증) 188㎡	
교양 시설	소계			14,071.03	12,642.1		3	9,539.38	27,919.3				2,190	2,190					감) 10,452.1 ㎡	
	산림종합 전시관	1	상월곡 산7-14	2,502	1,073.07	CON	1동	982.87	1,657. 57										폐지	
	야외학습장	사	상월곡 산7-14	773	773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도서관	㉠-1	석관동 산1-5	5,901.22	5,901.22	CON	1동	3,812.28	18,086.9											폐지 (도자구역)
	공연장	㉠-2	석관동 산1-5	4,894.81	4,894.81	CON	1동	4,744.23	8,174.83											폐지 (도자구역)
	유아숲체험원										차	상월곡동 산7-4	2,190	2,190						신설 (현황 반영) 증) 2,190㎡
편익 시설	소계			2,776	2,776		3	198	198	9			-	-					9	감) 2,776㎡
	주차장	아	상월곡 산7-4	1,627	1,627															폐지
		아-1	석관동 산1-5	921	921															폐지 (도자구역)
	화장실	2		228	228		3	198	198											폐지
	공중전화실	7								7	㉤								7	부호변경 (7→㉤)
	음수대	8								2	㉦								2	부호변경 (8→㉦)
관리 시설	소계									62									62	
	출입문	㉨								1	㉨	상월곡동 산7-4							1	
	울타리	㉩	상월곡 산7-4								㉩	상월곡동 산7-4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안내판	⑩	-		(3,210m)					7	⑩	상월곡동 산7-4								7	
	종합안내판	⑩-1	상월곡 산7-4							(1)	⑩-1	상월곡동 산7-4								1	
	공원안내판	⑩-2								(6)	⑩-2									6	
	쓰레기통	⑪	-							20	⑪	전지역								20	
	가로등	⑫	-							34	⑫	전지역								34	
녹지 및 기타	소계			950,902.12									415,873								감) 535,029.12㎡
	녹지			950,902.12									415,873								감) 535,029.12㎡

3.도 로 조 서 (합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319	29,311				
변경					6,560	23,838				
당초	중로	계			526	7,340				
변경										
당초		3	1	14	436	6,040	진입로	부진입광장경계부	부지동측 경계부	폐지 (도자구역)
변경		3	1	14						
당초		3	2	14	93	1,300	연결로	부지동측 경계부	중3-1 도로	폐지 (도자구역)
변경		3	2	14						
당초		계			4,299	19,730				
변경					3,417	16,809				
당초	소로	3	1	6	27	162	주진입로	공원정문	입구연못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2	6	60	360	주진입로	주진입로	진입광장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3	4	210	840	진입로	진입광장	전시관 입구	오류보정
변경		3	3	5	297	1,487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차	소로3-12	
당초		3	4	4	88	352	건물 전면 도로	전시 관입구	주관찰로시점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5	4	280	1,120	주관찰로	잔디광장 남측	관찰로 연결점	오류보정
변경		3	5	4	280	1,120	연결로	소로3-12	소로3-6	
당초	소로	3	6	4	442	1,768	주관찰로	관찰 연결점	부지남측 경계부	오류보정
변경		3	6	5	570	2,772	연결로	소로3-5	공원내 녹지	
당초		3	7	4	458	1,832	주관찰로	부지남측 경계부	전망데크 하부	오류보정
변경		3	7	7	86	635	연결로	부지동측 경계부	소로4-4	
당초		3	8	4	448	1,792	주관찰로	전망데크 하부	전시관	오류보정

구 분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3	8	5	413	1,878	연결로	소로3-7	소로3-3	오류보정
당초		3	9	4	190	760	연결로	전망데크 하부	부지동측 경계	
변경		3	9	4	190	760	연결로	소로3-8	부지동측 경계	
당초		3	10	4	40	160	연결로	주차장	진입광장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11	6	1,014	6,084	관리도로	진입광장	조경수원	오류보정
변경		3	11	6	1,014	6,171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차	소로4-23	
당초		3	12	4	60	240	연결로	관리도로	소3-5 기점	오류보정
변경		3	12	4	60	240	연결로	소로3-11	소로3-3	
당초		3	13	4	30	120	연결로	관리도로	소3-6 시점	오류보정
변경		3	13	4	30	120	연결로	소로3-11	소로3-6	
당초		3	14	4	80	320	연결로	관리도로	소3-6도로	오류보정
변경		3	14	4	80	320	연결로	소로3-11	소로3-6	
당초	소로	3	15	4	115	460	주산책로	소3-7 기점	조경수원 입구	오류보정
변경		3	15	4	115	460	연결로	소로3-6	소로3-11	
당초		3	16	3	113	339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부	조경수원 입구	오류보정
변경		3	16	3	113	339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부	소로4-23	
당초		3	17	3	169	507	진입로	산림청진 입로	산림청 내부도로	
변경		3	17	3	169	507	진입로	공원내 녹지	부지남측 경계	
당초		3	18	4	240	1,011	진입로	부지서측경계부	부진입광장경계부	폐지 (도자구역)
폐지										
당초		3	19	6	46	307	진입로	부진입광장경계부	주차장	폐지 (도자구역)
폐지										
당초		3	20	6	189	1,196	주 진입로	주차장	부지동측 경계부	폐지 (도자구역)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당초		계			1,494	2,241				
변경					3,143	7,029				
당초	산책로	4	1	1.5	264	396	관찰로	휴게/ 안내소1	관찰로교차점	오류보정
변경		4	1	3.5	223	825	연결로	소로3-5	산책로 4-3	
당초		4	2	1.5	167	250.5	관찰로	관찰로교차점	휴게/ 안내소2	오류보정
변경		4	2	3.0	167	500	연결로	산책로 4-4	소로3-6	
당초	산책로	4	3	1.5	86	129	연결 관찰로	소3-6 기점	관찰로 교차점	오류보정
변경		4	3	3.5	86	307	연결로	소로3-6	산책로 4-4	
당초		4	4	1.5	143	214.5	연결 관찰로	관찰로 교차점	휴게/ 안내소4	오류보정
변경		4	4	3.0	168	564	연결로	산책로 4-3	소로3-7	
당초		4	5	1.5	248	372	관찰로	휴게/ 안내소3	소3-7분기점	오류보정
변경		4	5	1.5	248	372	연결로	산책로 4-12	부지동측 경계	
당초		4	6	1.5	36	54	주도로	조경수원 입구	조형물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4	7	1.5	310	465	주도로	휴식광장	휴식광장	오류보정
변경		4	7	1.5	310	465	연결 관찰로	진입광장 가-2	산책로 4-7	
당초		4	8	1.5	63	94.5	주도로	조형물	순환도로	오류보정
변경		4	8	1.5	63	94.5	연결로	산책로 4-10	산책로 4-7	
당초		4	9	1.5	44	66	주도로	조형물	순환도로	오류보정
변경		4	9	1.5	44	66	연결로	산책로 4-10	산책로 4-7	
당초		4	10	1.5	32	48	주도로	순환로	소4-8분기점	오류보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4	10	1.5	32	48	연결로	산책로 4-7	산책로 4-7	
당초		4	11	1.5	33	49.5	연결로	휴게/ 안내소4	전망데크	오류보정
변경		4	11	1.5	33	49.5	연결로	소로3-6	산책로 4-5	
당초		4	12	1.5	68	102	연결 관찰로	소3-6 도로	휴게/ 안내소3	오류보정
변경		4	12	5.5	148	839	연결로	소3-6 도로	부지동측 경계	
신설	산책로	4	13	1	324	324	연결로	산책로 4-18	공원내 녹지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4	1~5	144	284	연결로	산책로 4-18	휴게소 바-5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5	1.5	9	13	연결로	산책로 4-14	체력단련시설 자-2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6	1	10	10	연결로	공원내 녹지	산책로 4-14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7	1.2	163	196	연결로	휴게소 바-5	돌뒀어린이 공원 다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8	1.8	89	161	진입로	부지동측 경계	체력단련시설 자-2	
신설		4	19	1	117	117	연결로	산책로 4-21	산책로 4-17	
신설		4	20	1.2	119	143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 4-19	
신설		4	21	1.2	393	472	연결로	산책로 4-13	도자구역	
신설		4	22	1.2	13	16	연결로	산책로 4-21	도자구역	
신설		4	23	4.8	240	1,163	연결로	공원내 녹지	소로3-6	오류보정 (조서누락)

()

1. 총괄표(동대문구)

구 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	연면적(㎡)		
계		119,871.0	3,070					
기반시설	소계	3,070	3,070					
	도로	3,070	3,070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116,801						
공원시설율(법정40%)		(3,070 / 119,871.0) × 100 = 2.56%						
공원건폐율(법정10%)		-						

2. 시설조서 (동대문구)

구 분	시설명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119,871.0	3,070						
기반 시설	소계			3,070	3,070						
	도 로			3,070	3,070						
	광장										
녹지 및 기타	소계			116,801							
	녹지			116,801							

3.도 로 조 서 (동대문구)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706	3,070				
당초	소로	계			342	1,169				
당초		3	6	5	45	226	연결로	소로3-5	공원내 녹지	
당초		3	11	6	15	97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차	소로4-23	
당초		3	16	3	113	339	진입로	부지남측경계부	소로4-23	
당초		3	17	3	169	507	진입로	공원내 녹지	부지남측 경계	
당초	산책로	계			364	1,901				
당초		4	5	3.4	30	102	연결로	산책로 4-12	부지동측 경계	
당초		4	12	5.8	137	793	연결로	소3-6 도로	부지동측 경계	
당초		4	23	5.1	197	1,006	연결로	공원내 녹지	소로3-6	

()

1. 총괄표(성북구)

구 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	연면적(㎡)		
계		329,290.0	30,218				76	
기반시설	소계	21,542	21,542					
	도로	20,768	20,768					
	광장	774	774					
조경시설		5,568	5,568				5	
휴양시설		109	109					
유희시설		470	470					
운동시설		339	339					
교양시설		2,190	2,190					
편익시설							9	
관리시설							62	
녹지 및 기타		299,072						
공원시설율(법정40%)		(30,218 / 329,290.0) × 100 = 9.18%						
공원건폐율(법정10%)		-						

2. 시설조서 (성북구)

구 분	시설명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329,290.0	30,218					76	
기반 시설	소계				21,542	21,542						
	도 로				20,768	20,768						
	광장	광장	가	1개소	774	774						
		입구소 광장	가-1	상월곡 산7-4	254	254						
		진입광장	가-2	상월곡 산7-4	520	520						
조경 시설	소계				5,568	5,568					5	
	파고라	①	2개소								2	
		①-2	하월곡 산5-57								1	
		①-3	하월곡 산5-57								1	
	정자	②	3개소								3	
		②-1	상월곡동 산8-10								1	
		②-2	상월곡동 산8-10								1	
		②-3	석관동 산 1-77								1	
	원형화단		마	하월곡 산5-57	177	177						

구 분	시설명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수원	라	하월곡 산5-57	5,391	5,391						
휴양 시설	소계			109	109						
	휴게소	바	상월곡동 산8-10	109	109						
유희 시설	소계			470	470						
	어린이놀이터	다	석관동 산 1-77	470	470						
운동 시설	소계			339	339						
	체력단련시설	자	2개소	339	339						
		자-1	상월곡동 산8-10	151	151						
		자-2	상월곡동 산8-10	188	188						
교양 시설	소계			2,190	2,190						
	유아숲체험원	차	상월곡동 산7-4	2,190	2,190						
편익 시설	소계									9	
	공중전화실	⑤								7	
	음수대	⑥								2	
관리 시설	소계									62	
	출입문	⑧	상월곡 산7-4							1	

구 분	시설명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안내판	⑩	상월곡 산7-4							7	
	종합안내판	⑩-1	상월곡 산7-4							1	
	공원안내판	⑩-2								6	
	쓰레기통	⑪	전지역							20	
	가로등	⑫	전지역							34	
녹지 및 기타	소계			299,072							
	녹지			299,072							

3.도 로 조 서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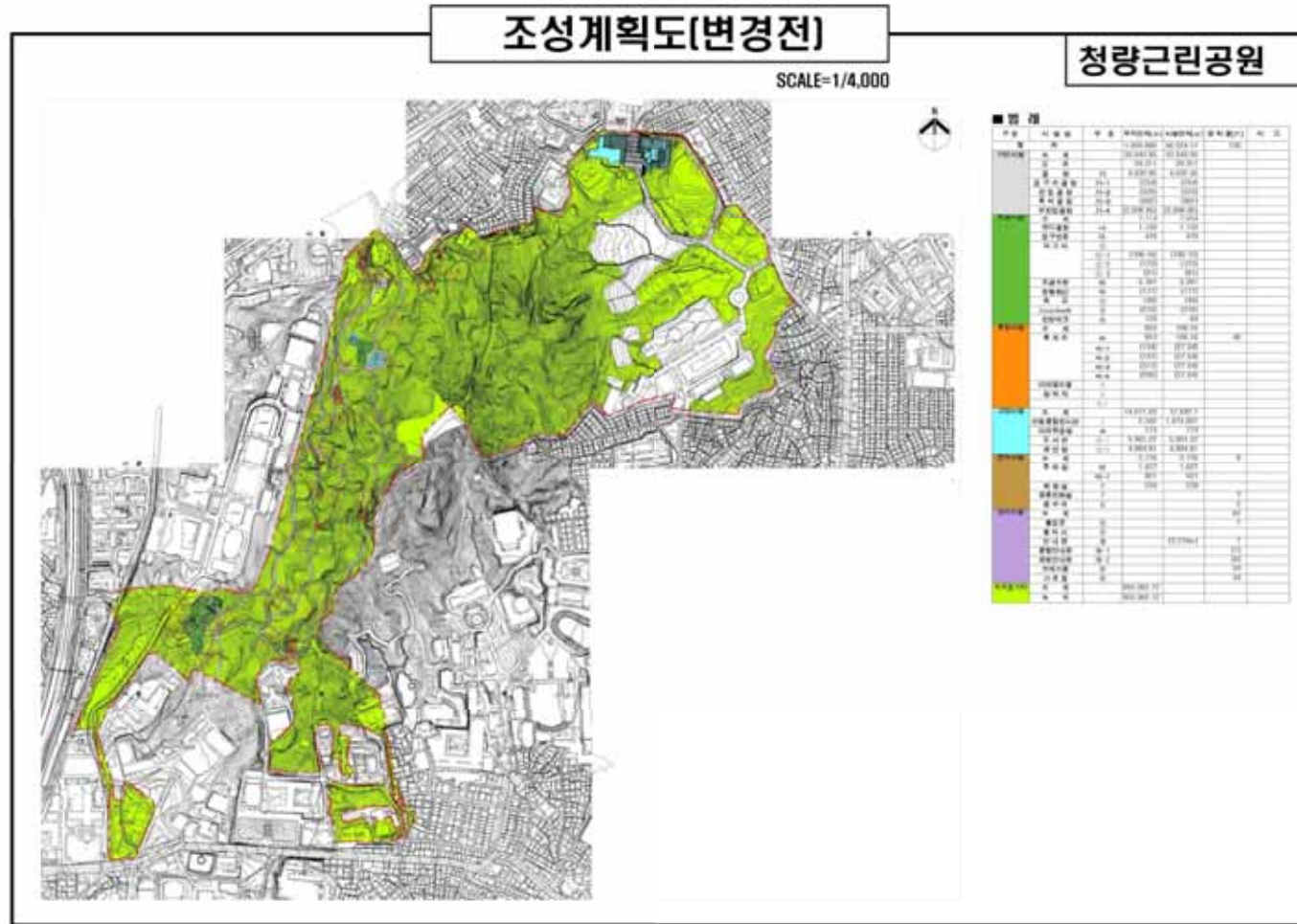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319	29,311				
변경					5,854	20,768				
당초	중로	계			526	7,340				
변경										
당초		3	1	14	436	6,040	진입로	부지입광 장경계부	부지동측 경계부	폐지 (도자구역)
변경		3	1	14						
당초		3	2	14	93	1,300	연결로	부지동측 경계부	중3-1 도로	폐지 (도자구역)
변경		3	2	14						
당초		계			4,299	19,730				
변경					3,075	15,640				
당초	소로	3	1	6	27	162	주진입로	공원정문	입구연못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2	6	60	360	주진입로	주진입로	진입광장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3	4	210	840	진입로	진입광장	전시관 입구	오류보정
변경		3	3	5	297	1,487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차	소로3-12	
당초		3	4	4	88	352	건물 전면 도로	전시 관입구	주관찰로시점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5	4	280	1,120	주관찰로	잔디광장 남측	관찰로 연결점	오류보정
변경		3	5	4	280	1,120	연결로	소로3-12	소로3-6	
당초	소로	3	6	4	442	1,768	주관찰로	관찰 연결점	부지남측 경계부	오류보정
변경		3	6	5	525	2,546	연결로	소로3-5	공원내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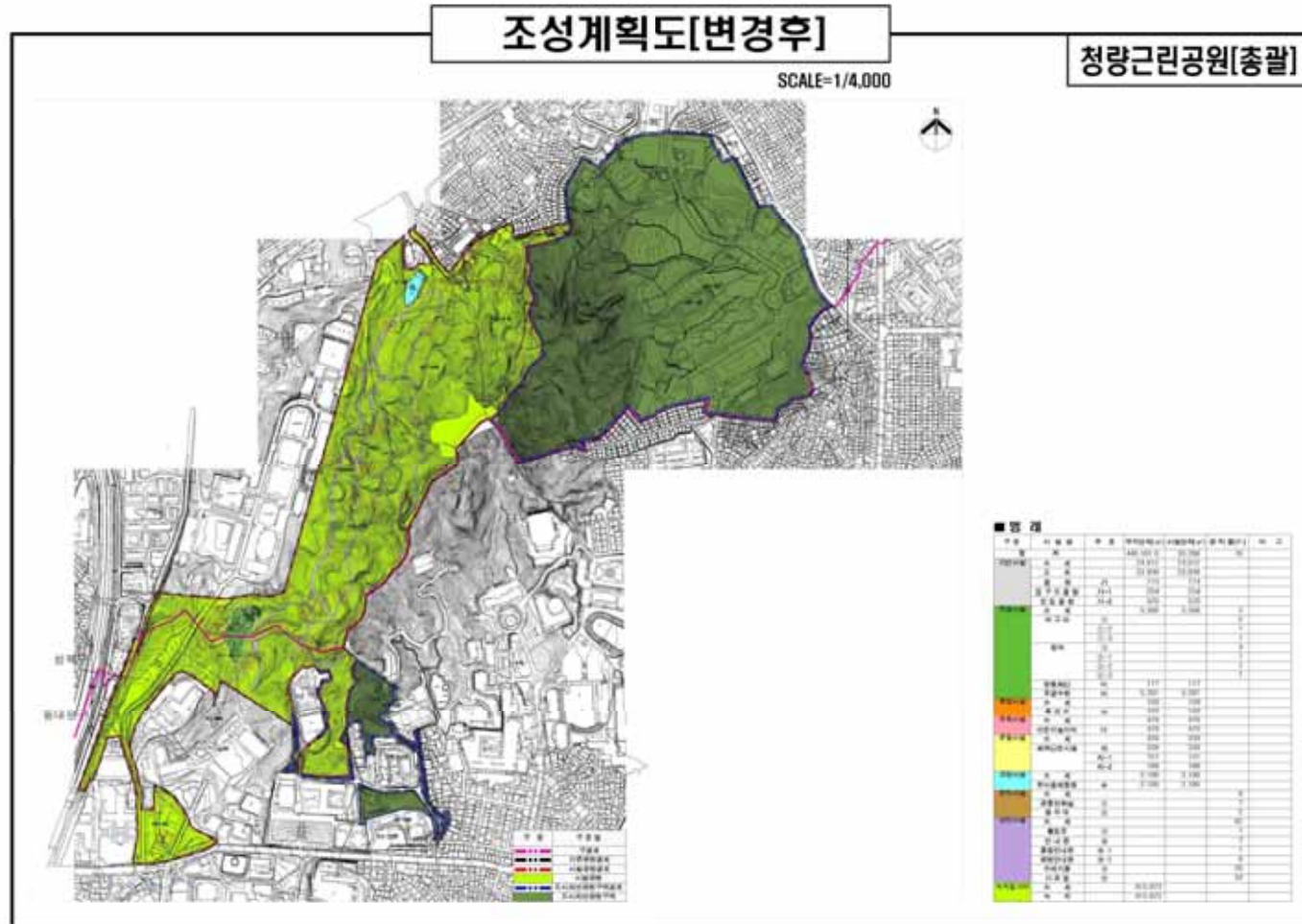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7	4	458	1,832	주관차로	부지남측 경계부	전망데크 하부	오류보정
변경		3	7	7	86	635	연결로	부지동측 경계부	소로4-4	
당초		3	8	4	448	1,792	주관차로	전망데크 하부	전시관	오류보정
변경		3	8	5	413	1,878	연결로	소로3-7	소로3-3	
당초		3	9	4	190	760	연결로	전망데크 하부	부지동측 경계	오류보정
변경		3	9	4	190	760	연결로	소로3-8	부지동측 경계	
당초		3	10	4	40	160	연결로	주차장	진입광장	오류보정
폐지										
당초		3	11	6	1,014	6,084	관리도로	진입광장	조경수원	오류보정
변경		3	11	697	999	6,074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차	소로4-23	
당초		3	12	4	60	240	연결로	관리도로	소3-5 기점	오류보정
변경		3	12	4	60	240	연결로	소로3-11	소로3-3	
당초		3	13	4	30	120	연결로	관리도로	소3-6 시점	오류보정
변경		3	13	4	30	120	연결로	소로3-11	소로3-6	
당초		3	14	4	80	320	연결로	관리도로	소3-6도로	오류보정
변경		3	14	4	80	320	연결로	소로3-11	소로3-6	
당초	소로	3	15	4	115	460	주산책로	소3-7 기점	조경수원 입구	오류보정
변경		3	15	4	115	460	연결로	소로3-6	소로3-11	
당초		3	18	4	240	1,011	진입로	부지서측 경계부	부진입광장경계부	폐지 (도자구역)
폐지										
당초		3	19	6	46	307	진입로	부진입광장경계부	주차장	폐지 (도자구역)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폐지 (도자구역)
당초		3	20	6	189	1,196	주진입로	주차장	부지동측 경계부	
폐지										
당초	산책로	계			1,494	2,241				
변경					2,779	5,128				
당초		4	1	1.5	264	396	관찰로	휴게/ 안내소1	관찰로 교차점	오류보정
변경		4	1	3.5	223	825	연결로	소로3-5	산책로 4-3	
당초		4	2	1.5	167	250.5	관찰로	관찰로 교차점	휴게/ 안내소2	오류보정
변경		4	2	3.0	167	500	연결로	산책로 4-4	소로3-6	
당초		4	3	1.5	86	129	연결 관찰로	소3-6 기점	관찰로 교차점	오류보정
변경		4	3	3.5	86	307	연결로	소로3-6	산책로 4-4	
당초		4	4	1.5	143	214.5	연결 관찰로	관찰로 교차점	휴게/ 안내소4	오류보정
변경		4	4	3.0	168	564	연결로	산책로 4-3	소로3-7	
당초		4	5	1.5	248	372	관찰로	휴게/ 안내소3	소3-7분기점	오류보정
변경		4	5	1.2	218	270	연결로	산책로 4-12	부지동측 경계	
당초	산책로	4	6	1.5	36	54	주도로	조경수원 입구	조형물	폐지 (오류보정)
폐지										
당초		4	7	1.5	310	465	주도로	휴식광장	휴식광장	오류보정
변경		4	7	1.5	310	465	연결 관찰로	진입광장 가-2	산책로 4-7	
당초		4	8	1.5	63	94.5	주도로	조형물	순환도로	오류보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4	8	1.5	63	94.5	연결로	산책로 4-10	산책로 4-7	
당초		4	9	1.5	44	66	주도로	조형물	순환도로	오류보정
변경		4	9	1.5	44	66	연결로	산책로 4-10	산책로 4-7	
당초		4	10	1.5	32	48	주도로	순환로	소4-8분기점	오류보정
변경		4	10	1.5	32	48	연결로	산책로 4-7	산책로 4-7	
당초		4	11	1.5	33	49.5	연결로	휴게/ 안내소4	전망데크	오류보정
변경		4	11	1.5	33	49.5	연결로	소로3-6	산책로 4-5	
당초		4	12	1.5	68	102	연결 관찰로	소3-6 도로	휴게/ 안내소3	오류보정
변경		4	12	4.2	11	46	연결로	소3-6 도로	부지동측 경계	
신설		4	13	1	324	324	연결로	산책로 4-18	공원내 녹지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4	1~5	144	284	연결로	산책로 4-18	휴게소 바-5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5	1.5	9	13	연결로	산책로 4-14	체력단련시설 자-2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6	1	10	10	연결로	공원내 녹지	산책로 4-14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4	17	1.2	163	196	연결로	휴게소 바-5	돌뒀어린이 공원 다	오류보정 (조서누락)
신설	산책로	4	18	1.8	89	161	진입로	부지동측 경계	체력단련시설 자-2	
신설		4	19	1	117	117	연결로	산책로 4-21	산책로 4-17	
신설		4	20	1.2	119	143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 4-19	
신설		4	21	1.2	393	472	연결로	산책로 4-13	도자구역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4	22	1.2	13	16	연결로	산책로 4-21	도자구역	
신설		4	23	3.7	43	157	연결로	공원내 녹지	소로3-6	오류보정 (조서누락)





2021 - 364

() () · ()

건설부고시 제124호(1970.03.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1호(2020.11.12.)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내 건축물 신축 및 계획 취소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 교	대 학 (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3,895,659	-	3,895,659	건고 제124호 (1970.3.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129,725	외부활동구역	②	53,884
	③	236,586		④	145,853
	⑤	257,508		⑤	61,523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⑧	77,618	상징경관구역	⑦	71,871
	⑨	80,790	소 계		333,131
	⑩	152,510	녹지보존구역	⑥	47,410
	⑪	147,616		⑭	2,313,069
	⑬	119,696	소 계		2,360,479
소계		1,202,049	합 계		3,895,659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76,122	60.00	20.01	19.92	21.79	○ 밀도 산정시 제외 면적 - 비오름1등급지 : 2,195,754㎡
자연녹지지역	1,623,783	20.00				
계	1,699,905	21.79				

※ 학교용지 면적(3,895,659㎡) 대비 법정건폐율 20.47%, 사용건폐율 8.69%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①	125.00	86.55	86.55	-	125.0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②	103.00	7.65	7.65	- 83.00	20.00	●지표로부터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정문,대운동장 등)
③	100.00	90.25	90.25	-	100.0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④	100.00	-	-	- 100.00	-	-	외부활동구역 (국수봉)
⑤	101.00	114.95	114.95	+ 49.00	150.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	-
⑥	100.00	-	-	-	-	-	녹지보존구역
⑦	100.00	92.68	92.68	-	100.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상징경관구역 (본관, 중앙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규장각)
⑧	100.00	108.09	108.09	+ 50.00	150.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⑨	100.00	129.35	129.35	+ 50.00	150.0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⑩	100.00	119.33	119.33	+ 50.00	150.00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⑪	100.00	74.88	74.88	-	100.00	●지표로부터 40m 이하 ●녹지연접지 16~30m 이하	-
⑫	100.00	1.29	1.29	- 98.00	2.00	●오픈스페이스 구역에 부합되는 높이 관리 : 표고 +16m이하	외부활동구역 (버들골)
⑬	100.00	95.62	90.63	-	100.00	●지표로부터 16~40m 이하	-
⑭	100.00	0.063	0.063	캠퍼스지역 비오톱2등급지 일부 이전	0.063	●기존 건축물 개축 허용	녹지보존구역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 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 구역	해동첨단 공학관	-	-	-	2,519	-	-	-	10,312	-	-	-	9,850	-	7	금회 신축
	학,산연구동	-	-	4,000	-	-	-	19,830	-	-	-	15,830	-	-	7(2)	계획 취소
소계		-	-	4,000	2,519	-	-	19,830	10,312	-	-	15,830	9,850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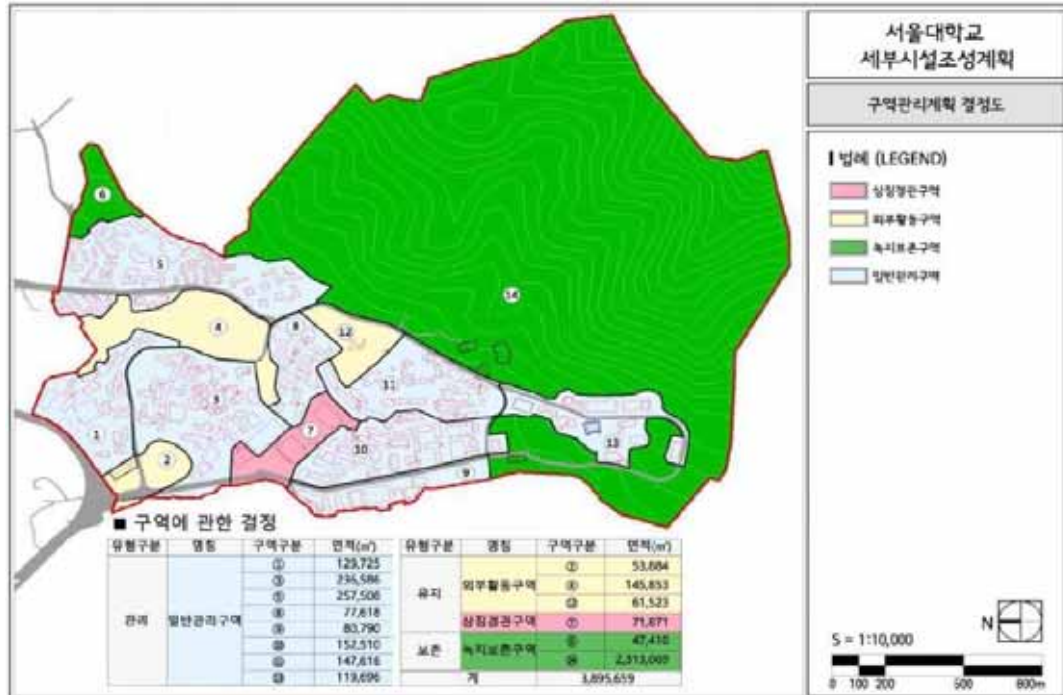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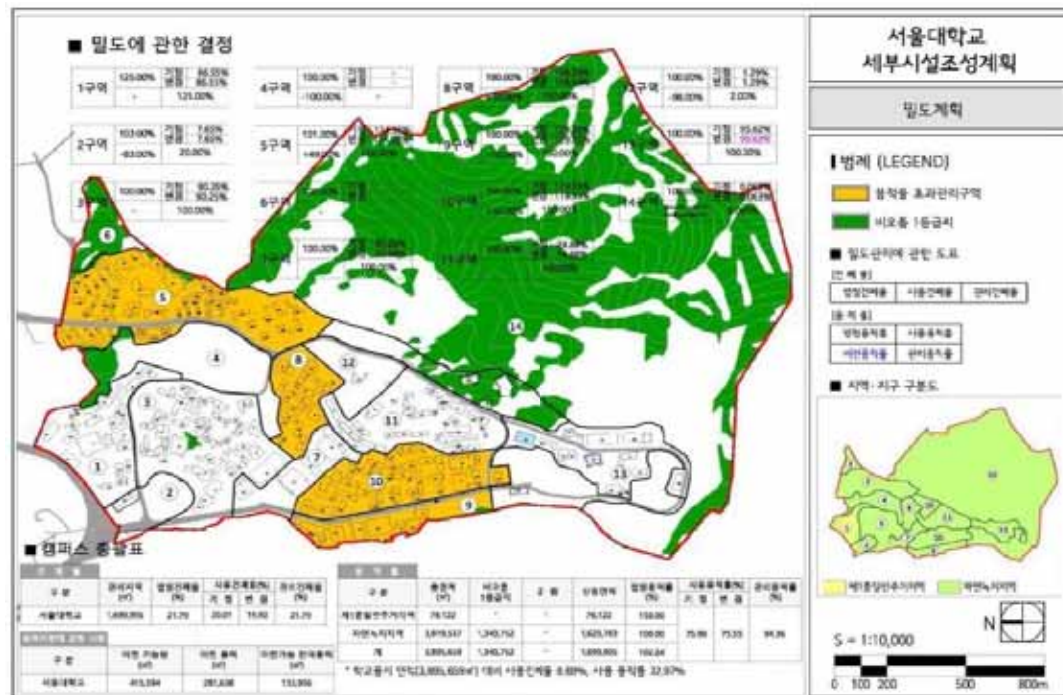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1)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71)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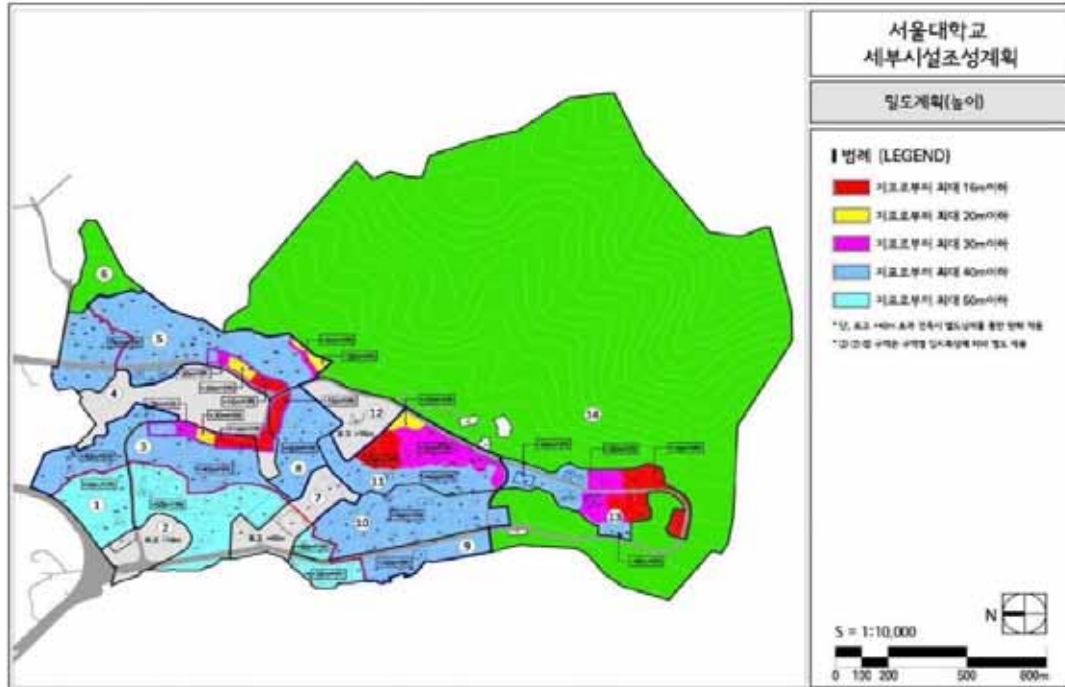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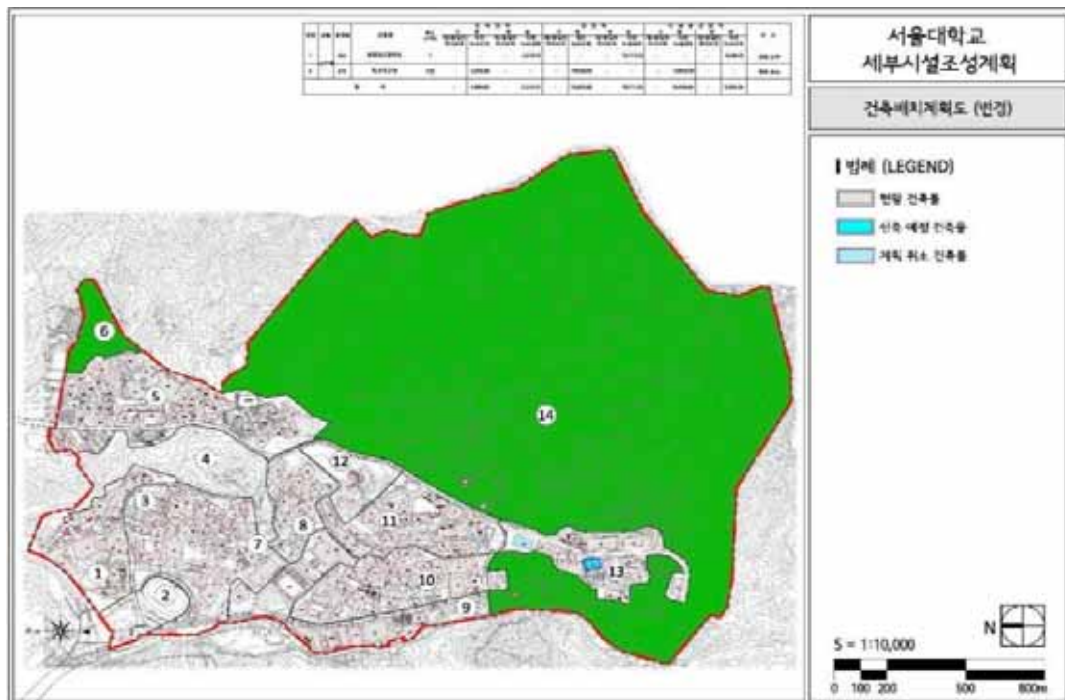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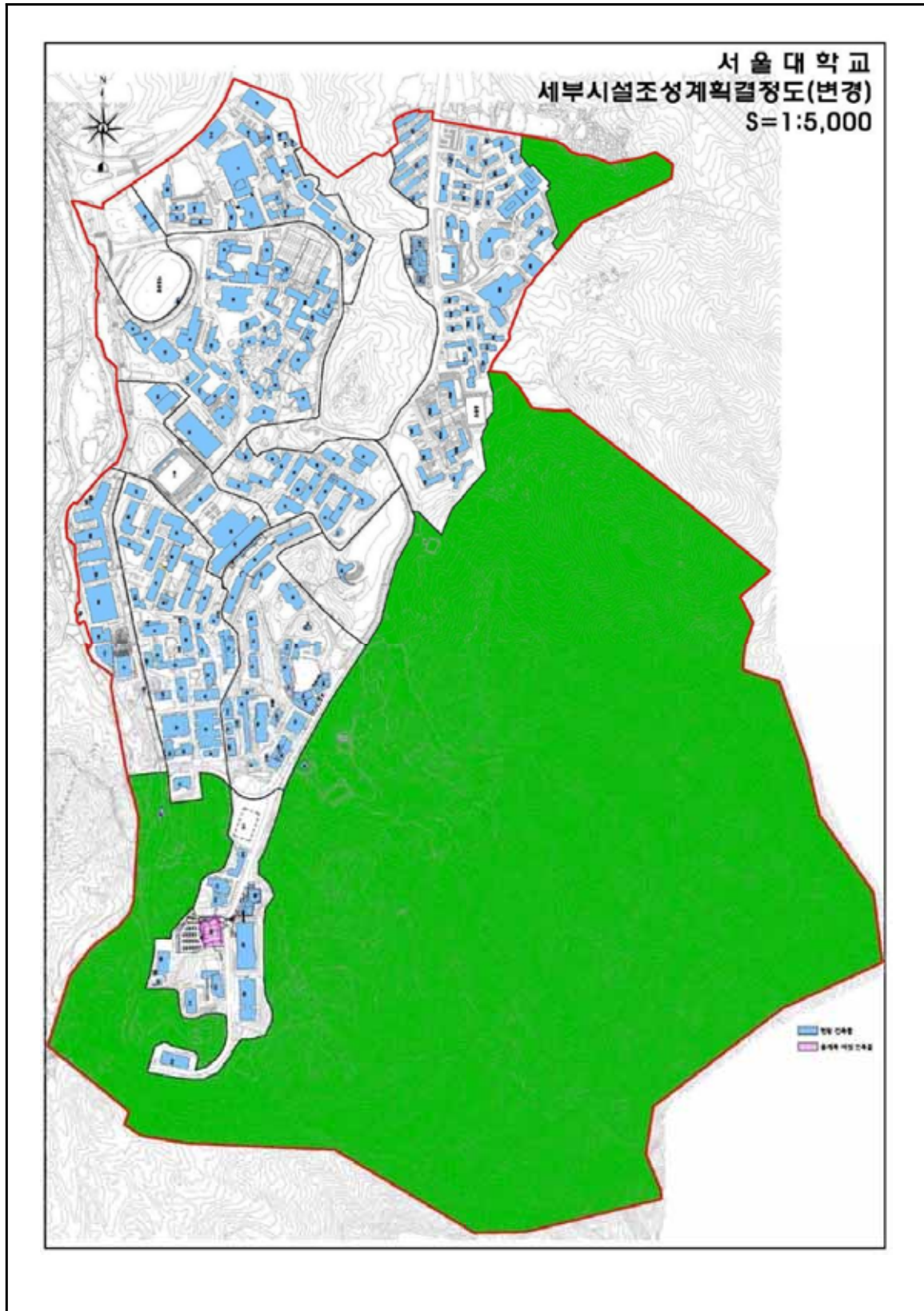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2021 - 365

173 - 2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마포구 동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1호로 결정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마포구 동교동 17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3-2번지
- 면 적 : 1,131.2㎡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7월 15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동교아이하우스
- 대표자 성명 : 이광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9, 103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7398335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3-2	대	1,131.2	1,131.2	[위탁자] 주식회사 동교아이하우스 [수탁자] 대신자산신탁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9, 1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대신파이낸스센터)	1/1	-	-	-	
합 계				1,131.2	1,131.2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마포구 동교동	173-2	대	근생, 업무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1976.12.29	1,385.43	1	3	[위탁자] 주식회사 동교아이하우스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	-	
합 계							1,13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31.2	-	1,131.2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31.2	감) 1,131.2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131.2	1,131.2	100.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교동 173-2번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131.2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270,547.6	-	270,547.6 (1,131.2)	

주) ()는 사업대상지(동교동 173-2번지) 면적임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02-2133-6294) 및 마포구청 건축과(☎02-3153-9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마포구 동교동 17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3-2번지
- 면 적 : 1,131.2㎡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동교동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동교아이하우스
- 대표자 성명 : 이광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9, 103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7398335

3. 사업시행기간 및 채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3년
- 채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131.2	100.0	임대주택
합 계	1,131.2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465인

2) 주택건설계획 : 285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18 type	45	15.8	45	9.7	청년(일반형)
	23 type	7	2.5	7	1.5	청년(일반형)
	36 type	20	7.0	53	11.4	신혼부부
	35 type	9	3.2	24	5.2	신혼부부
	39 type	9	3.2	24	5.2	신혼부부
	소 계	90	31.6	153	32.9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8 type	109	38.2	109	23.4	청년(일반형)
	23 type	15	5.3	15	3.2	청년(일반형)
	36 type	46	16.1	122	26.2	신혼부부
	35 type	13	4.6	34	7.3	신혼부부
	39 type	12	4.2	32	6.9	신혼부부
	소 계	195	68.4	312	67.1	-
합 계		285	100.0	465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획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 옥상녹화, 우수 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 등을 실시하여 생태환경 향상 도모
- 대상지는 노후·불량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상업 및 업무시설지로서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임에 따라 조경녹지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마련 및 녹지체계 구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 충분한 녹지 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시설계 시 에너지 효율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하고,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31.2	-	1,131.2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31.2	감) 1,131.2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131.2	1,131.2	100.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교동 173-2번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131.2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270,547.6	-	270,547.6 (1,131.2)	

주) ()는 사업대상지(동교동 173-2번지) 면적임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와 동일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 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계획내용	비고
기정	SR-10	4,430.3	동교동173-2	1,131.2	1,131.2	획지계획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기정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기정	지정	-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사행성게임물 취급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권장	• 전충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 1층 전면부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변경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변경	지정	• 공동주택(주거복합), 근린생활시설	
	불허	• 지정용도 외 불허	

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	• 지정용도, 불허용도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용도 등의 도입을 막기 위해 불허용도로 변경 결정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건폐율	60%이하	60%이하	※ 동교동 173-2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이하 허용용적률 : 350%이하	기본용적률 : 68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높 이	60m이하	90m이하(건축물 최고높이)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본 680% 이하, 상한 법정용적률 이하 - 높 이 : 최고높이 90m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용하여 밀도계획 수립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적용 기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용	•부지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226.25㎡ (20.00%)	• 동교동 173-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완화용적률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784.79㎡ (157.78%), 부속토지 : 170.33㎡ (15.06%)	
		-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계 : 226.25+170.33 = 323.08㎡ (35.06%)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설치의무)	•주거 : 비주거 = 92.36 : 7.64	
	주거비율	•80%이상 90%이하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23㎡, 28㎡, 41㎡, 44㎡, 45㎡ •민간임대주택 : 23㎡, 28㎡, 41㎡, 44㎡, 45㎡ ※ 전용+서비스면적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친환경건축물(우수등급), 에너지효율건축물(1등급) 이행 목표 적용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 150㎡이상	•커뮤니티시설 248.47㎡계획 (워크스테이션, 코인세탁실, 라운지, 도서관, 멀티룸)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신설 건축한계선	- 양재대로 경계로부터 3m 후퇴 - 양재대로117길 경계로부터 2m 후퇴	지침도 참조
차량출입불허구간	대상지 동측 양재대로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 및 보행 통행여건 개선 등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

라) 공공기여계획

구 분	용 적 륜	공공기여율	비 고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680%	기본 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20% 이상주(226.24㎡ 이상)	동교동 173-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도지는 기부채납 함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공공기여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 적용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마)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게재 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 하천 및 내수 재해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고려한 우수관로 용량 결정
- 토사 및 사면 재해 : 임시침사지 1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 지반 및 지진 재해 : 현장요건 고려한 최적의 기초형식 선정 및 계층계획 수립,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 기준 적용

4) 바람재해 : 내풍설계 대상 구조물 기준 적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3-2	대	1,131.2	1,131.2	[위탁자] 주식회사 동교아이하우스 [수탁자]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9, 1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대신파이낸스센터)	1/1	-	-	-	
합 계				1,131.2	1,131.2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마포구 동교동	173-2	대	근생, 업무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1976.12.29	1,385.43	1	3	[위탁자] 주식회사 동교아이하우스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	-	
합 계							1,131.2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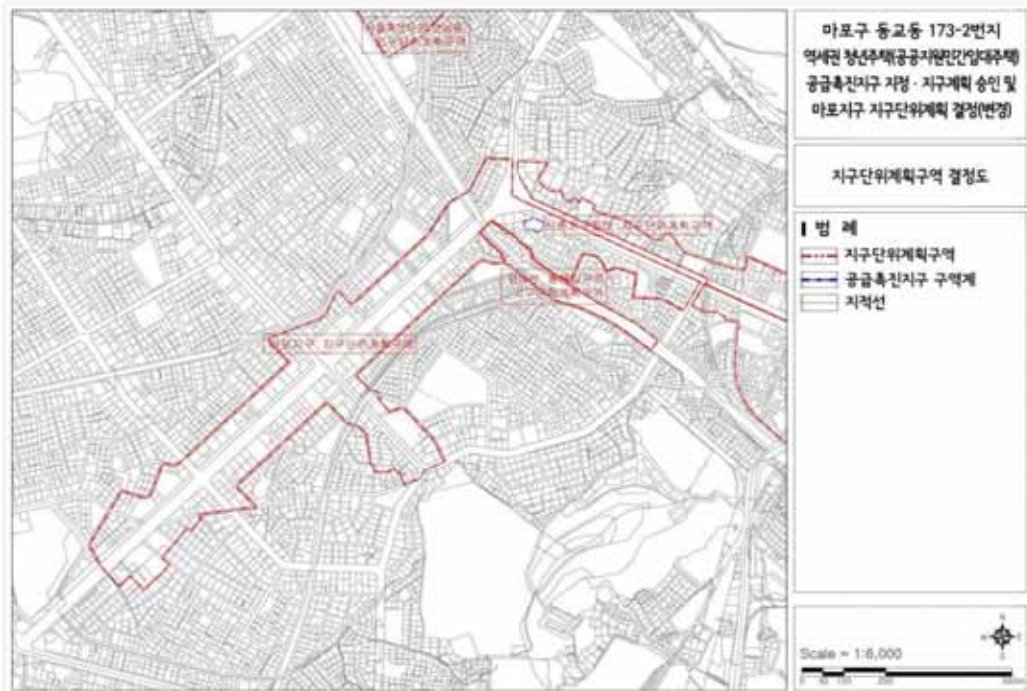
구 분	공급토지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1,131.2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합 계	1,131.2	100.0	-	-	-

관계도면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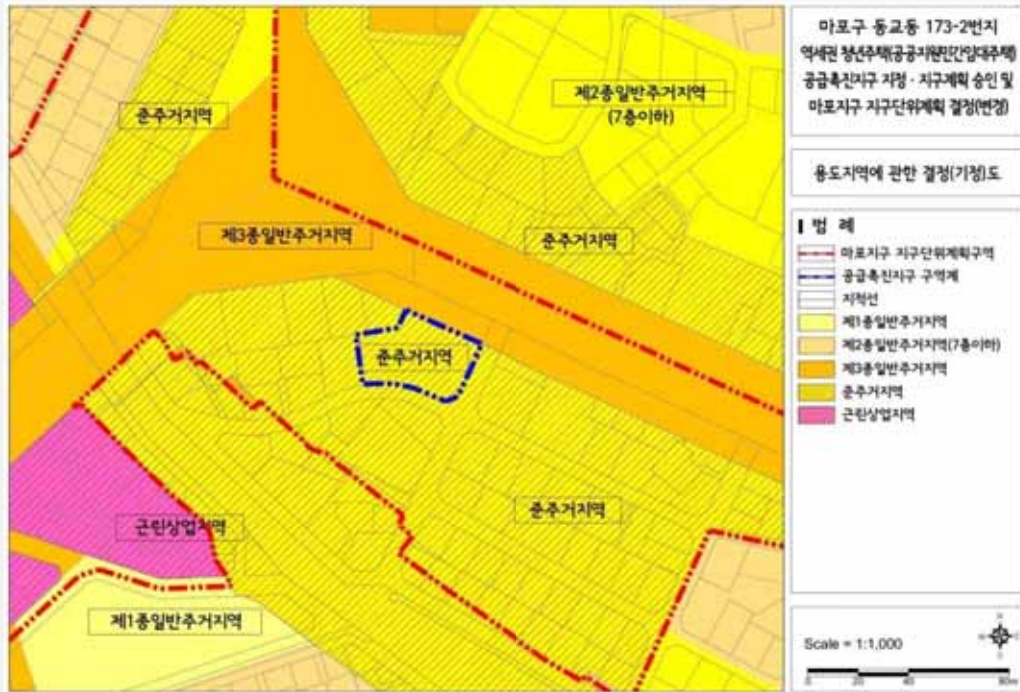
■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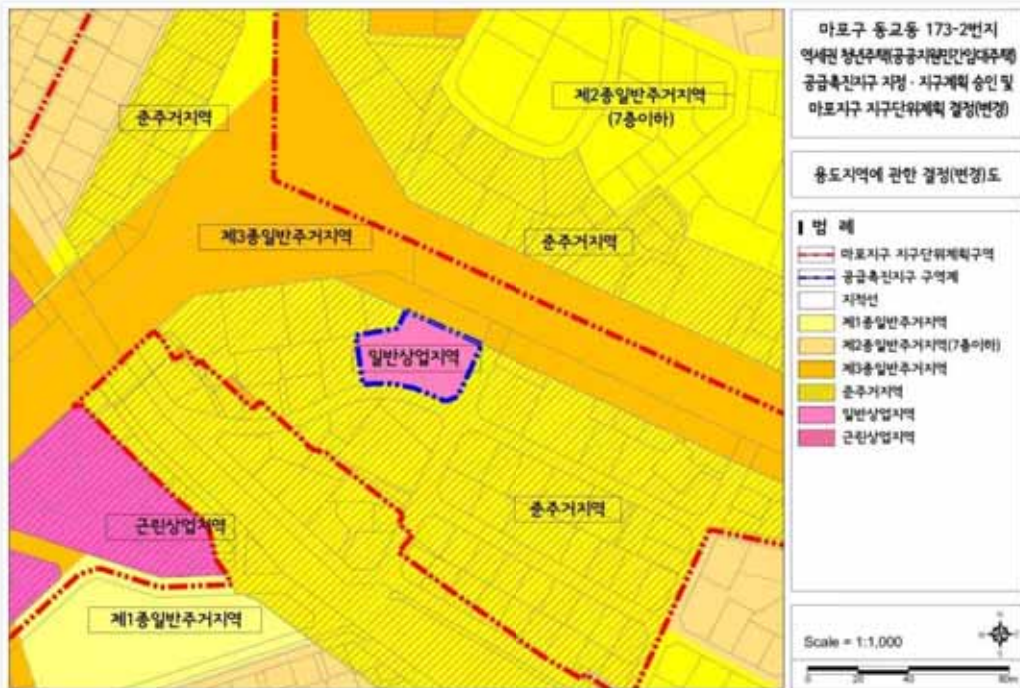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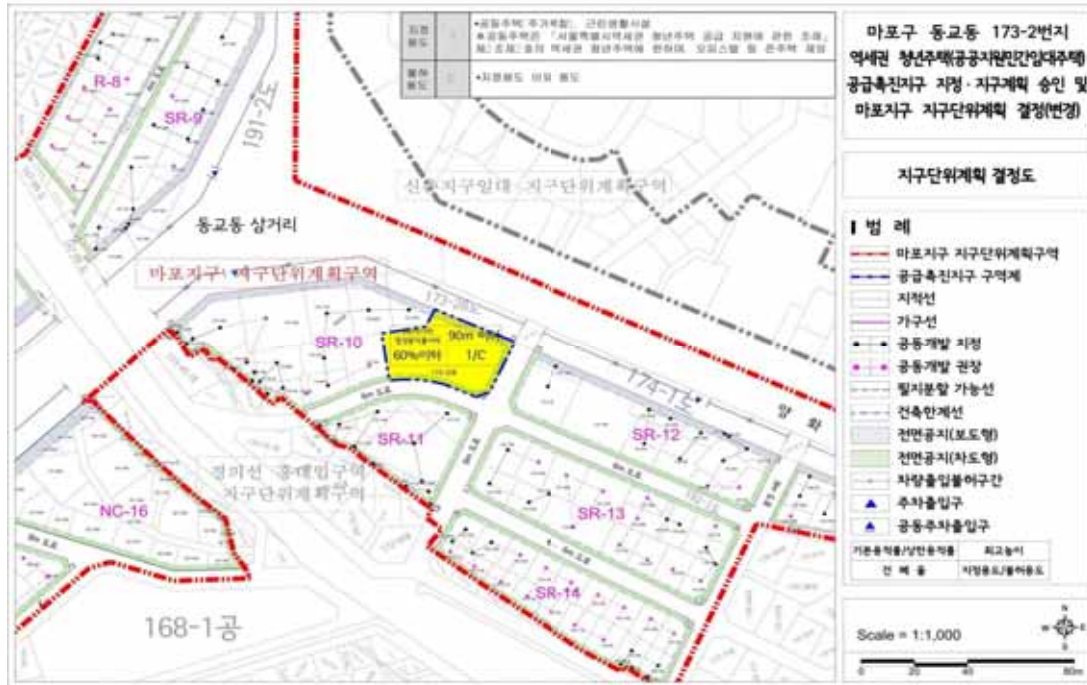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2021-366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87호(2004.9.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제2005-171호(2005.6.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제2007-227호(2007.7.12.) 및 제2015-425호(2015.12.31.)로 세부개발계획 수립된 독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Ⅲ,Ⅳ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 독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Ⅲ,Ⅳ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관련 계획 변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간 지정용도 변경 및 차량 출입금지구간 일부 허용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독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83,503	-	83,503	2002.06.19 (서울특별시고시제2002-216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③ 획지에 관한 계획

1. 획지규모계획(변경없음)

④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 ① 건축물 용도(불허용도)(변경없음)

②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지정용도)

■ 기정

구 분		권장용도	지정용도
특별계획구역 I	권용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실비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 제외)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특별계획구역 II	권용2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각각 연면적 300㎡ 이상)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특별계획구역 III	권용3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3,000㎡ 이상) -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연면적의 30% 이상
특별계획구역 IV	권용4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2,000㎡ 이상)과 산업전시장 (3,000㎡ 이상) -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30% 이상

주1) 면적산정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2) 권장용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면적의 10% 이상 권장용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주3) 저층부의 지정용도는 각각 지정된 면적 이상을 확보하되 III 구역은 IV의 지정용도를, IV는 III의 지정용도를 추가적으로 확보시에도 지정용도의 인센티브 부여

주4) 특별계획구역 I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의 연면적비율 만큼 오피스텔을 허용하되 오피스텔의 최대비율은 20% 이하

주5) 특별계획구역 I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의 연면적비율의 5배 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최대 비율은 50% 이하

주6) 특별계획구역 III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의 연면적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비율은 50% 이하

주7) 특별계획구역 IV은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의 연면적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비율은 50% 이하

■ 변경

구 분		권장용도	지정용도
특별계획구역 I	권용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실비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 제외)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특별계획구역 II	권용2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각각 연면적 300㎡ 이상)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특별계획구역 III	권용3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3,000㎡ 이상) -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연면적의 30% 이상

구 분		권장용도	지정용도
특별계획구역 IV	권용4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000㎡ 이상) -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30% 이상

주1) 면적산정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2) 권장용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면적의 10% 이상 권장용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주3) 저층부의 지정용도는 각각 지정된 면적 이상을 확보하되 III구역은 IV의 지정용도를, IV는 III의 지정용도를 추가적으로 확보시에도 지정용도의 인센티브 부여

주4) 특별계획구역 I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의 연면적비율 만큼 오피스텔을 허용하되 오피스텔의 최대비율은 20% 이하

주5) 특별계획구역 I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의 연면적비율의 5배 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최대 비율은 50% 이하

주6) 특별계획구역 III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의 연면적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비율은 50% 이하

주7) 특별계획구역 IV은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의 연면적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비율은 50% 이하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특별계획구역 III, IV 지정용도 변경	여건 변화에 따라 성동구 문화관광산업의 기반 마련 및 독섬 일대 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III, IV의 지정용도를 변경 및 재배치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변경없음)

3. 건축물의 높이 계획(변경없음)

4.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 및 완화 내용(변경없음)

5. 건축물의 배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건축한계선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 공개공지를 전면부에 유도 - 이면도로의 확폭	간선도로변	5m
		이면부	2m, 3m, 5m, 20m
벽면한계선	- 원활한 보행흐름의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공공보행통로	적용높이 3층 이하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이상
고층부 벽면한계선	- 간선도로변 경관향상 - 인접 주거지역 경관보호	특별계획구역 III, IV (독섬길변)	적용높이 6층 이상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 변경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건축한계선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 공개공지를 전면부에 유도 - 이면도로의 확폭	간선도로변	5m
		이면부	2m, 3m, 5m, 20m
벽면한계선	- 원활한 보행흐름의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공공보행통로 (기존 경마로구간에 한함)	적용높이 3층 이하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이상
고층부 벽면한계선	- 간선도로변 경관향상 - 인접 주거지역 경관보호	특별계획구역 III, IV (독성길변)	적용높이 6층 이상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개방형 화장실	- 광장3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특별계획구역 IV구역	광장3 이용자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개방형 화장실 설치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벽면한계선 적용대상	•공공보행통로 추가 지정에 따라 벽면한계선을 기존 경마로구간의 공공보행통로변으로 한정
개방형 화장실	•서울숲 관문인 광장3 이용자들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 제공을 위한 설치

6.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외관 및 의장	1층부 형태	-시각적 개방감 확보 -건축물 외벽의 일체감 및 등질감을 살려 구역내 이미지 및 가로경관 제고	-도로변에 접한 대지	-도로에 접한 1층 외벽과 셔터는 가급적 투시벽 권장 -1층 개구부 높이는 주변 건물과 일치
	외벽 처리		-도로변에 접한 대지	-주전면은 개구부로 처리
전면부 처리	1층 바닥 높이	-보행활동의 연속성과 안전성 도모 및 가로경관 제고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접한 도로 및 공지와외의 높이차를 15cm 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나 건물의 외벽이 기둥의 중심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정
	건축선 후퇴 부분 처리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의 설치 금지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시설	옥외 광고물	-광고물 난립 방지 및 가로경관 향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광고물 조명 권장
	조명	-주요 간선변 경관수준 향상 및 시야확보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장소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명유도 -야간조명설치
	담장/문	-가로변 경관수준 향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원칙적으로 차폐용 담장·문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
	환기시설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도로변에 접한 대지	-건축물내 환기시설 등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는 시설은 보도와 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보도에서 4m 이상 높이에 설치
건축물 형태	고층부 탐상형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미관증진	-도로변에 접한 대지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 변경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외관 및 의장	1층부 형태	-시각적 개방감 확보 -건축물 외벽의 일체감 및 등질감을 살려 구역내 이미지 및 가로경관 제고	-도로변에 접한 대지	-도로에 접한 1층 외벽과 셔터는 가급적 투시벽 권장 -1층 개구부 높이는 주변 건물과 일치
	외벽 처리		-도로변에 접한 대지	-주전면은 개구부로 처리
			-특별계획구역Ⅳ	-광장3에 면한 저층부 판매등은 시각적 부담감이 없도록 입면계획
전면부 처리	1층 바닥 높이	-보행활동의 연속성과 안전성 도모 및 가로경관 제고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접한 도로 및 공지와외의 높이차를 15cm 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나 건물의 외벽 이 기둥의 중심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정
	건축선 후퇴 부분처리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의 설치 금지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시설	옥외 광고물	-광고물 난립 방지 및 가로경관 향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광고물 조명 권장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조명	-주요 간선변 경관수준 향상 및 시야확보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장소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명유도 -야간조명설치
	담장 /문	-가로변 경관수준 향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원칙적으로 차폐용 담장·문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
	환기 시설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도로변에 접한 대지	-건축물내 환기시설 등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는 시설은 보도와 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보도에서 4m 이상 높이에 설치
건축물 형태	고층부 타입형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미관증진	-도로변에 접한 대지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건축물 외관 및 외장(외벽처리) (특별계획구역Ⅳ)	●광장3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고층건축물의 시각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저층부 계획

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보행활동의 연속성 부여	-간선도로변	-교통영향평가사항 반영

■ 변경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보행활동의 연속성 부여	-간선도로변	-교통영향평가사항 반영 -간선가로변(일부구간 출입 허용)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차량출입금지구간	●특별계획구역(Ⅳ)의 대규모 복합시설(주거, 판매, 숙박등)과 공연장 도입에 따라 증가되는 차량 혼잡도 및 차량 진출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선로 차량출입금지구간 중 일부구간에 차량출입 허용

⑥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공공보행통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공공보행통로	-원활한 보행동선 체계 수립으로 보행환경 개선 -내부순환형 보행동선체계 구축	-특별계획구역 III, IV구역 -공원의 보행 흐름과 광장·보행 가로공원을 연계하는 건축물 내부보행동선 -상업건물 내부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선형 및 위치에 대한 변경 결정 가능
	-내부와 외부의 보행연결동선 확보	-특별계획구역 I 구역 -주변주거지역의 보행동선(이면 도로)과 공 원을 연계하는 보행 동선체계 적용	-내부 주거지 : 폭원 8m 이상	

■ 변경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공공보행통로	-원활한 보행동선 체계 수립으로 보행환경 개선 -내부순환형 보행동선체계구축	-특별계획구역 III, IV구역 -공원의 보행 흐름과 광장·보행 가로공원을 연계하는 건축물 내부보행동선 -상업건물 내부	-기존 경마로구간 : 폭원 12m 이상 -광장4와 기존 경마로 사 이 공공보행통로 연계 구 간 : 폭원 3m 이상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선형 및 위치에 대한 변경 결정 가 능
	-내부와 외부의 보행연결동선 확보	-특별계획구역 I 구역 -주변주거지역의 보행동선(이면 도로)과 공 원을 연계하는 보행 동선체계 적용	-내부 주거지 : 폭원 8m 이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공공보행통로	• 광장4와 기존 경마로구간 공공보행통로의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확보

3. 보행동선(보행연결통로)에 관한 계획(신설)

■ 변경(신설)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보행연결통로	- 광장2에서 공공보행통로로의 보행동선 확보	특별계획구역 III구역	- 광장2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연결구간 (폭원 5m이상)
	- 광장4에서 공공보행통로로의 보행동선 확보	특별계획구역 IV구역	- 광장4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연결구간 (폭원 10m이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보행연결통로	•특별계획구역 III, IV구역에 접한 광장2, 4에서 공공보행통로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통로 폭원 확보

III. 특별계획구역III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①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독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III)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18,315.0	-	18,315.0	

②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불허용도	<1층전면부>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전 층> •2호 전층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9호 의료시설 : 장례식장 •17호 아파트형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전면부>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전 층> •2호 전층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9호 의료시설 : 장례식장 •17호 아파트형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지정용도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3,000㎡이상) •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연면적의 30%이상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3,000㎡이상) •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연면적의 30%이상	

주1)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2006. 5. 8 개정)

주2) 지정용도 면적산정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3) 권장용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면적의 10%이상 권장용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주4) 저층부의 지정용도는 각각 지정된 면적이상을 확보하되, 특별계획구역IV의 지정용도를 추가적으로 확보시에도 지정용도의 인센티브 부여

주5)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의 연면적비율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비율은 50%이하

■ 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불허용도	<1층전면부>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전 층> •2호 전층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9호 의료시설 : 장례식장 •17호 아파트형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식물관련시설	<1층전면부>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전 층> •2호 전층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9호 의료시설 : 장례식장 •17호 아파트형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지정용도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3,000㎡이상) •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연면적의 30%이상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3,000㎡이상) •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연면적의 30%이상	지정용도 변경

-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2021.5.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적용
 주2) 지정용도 면적산정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3) 권장용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면적의 10%이상 권장용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주4) 저층부의 지정용도는 각각 지정된 면적이상을 확보하되, 특별계획구역Ⅳ의 지정용도를 추가적으로 확보시에도 지정용도의 인센티브 부여
 주5)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의 연면적비율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비율은 50%이하
 주6)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기업홍보 전용으로 사용 불가하며, 매년 1월 연간 전시운영계획 제출
 - 광장3주변 야외 전시 등 연계 프로그램을 연1회 이상 포함하되, 매년 시기 및 프로그램 내용은 광장3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 (ex, 야외전시, 버스킹 등)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지정용도 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정용도 변경에 따른 세부개발계획 변경 •전문전시장으로 조성하여 지역내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공연장을 전시장으로 변경

③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왕십리길(25m)변 : 5m •중로1-2(20m)변 : 3m •중로1-1(23m)변, 광장3 : 5m	
공개공지	•간선 도로변 및 보행축상의 주요결절부 필지에 설치	•보행축상 주요결절부에 공공보행통로 및 광장2와 연계 설치	
침상형공지	•역세권특별계획구역	•역세권주변 침상형공지 위치지정	

※ 허가권자와 협의시 대지면적 및 조성면적이 변경될 경우 조정이 가능함

■ 변경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왕십리길(25m)변 : 5m •중로1-2(20m)변 : 3m •중로1-1(23m)변, 광장3 : 5m	
공개공지	•간선 도로변 및 보행축상의 주요결절부 필지에 설치	•보행축상 주요결절부에 공공보행통로 및 광장2와 연계 설치 - 공개공지 위치 지정	
침상형공지	•역세권특별계획구역	•역세권주변 침상형공지 위치지정	

※ 허가권자와 협의시 대지면적 및 조성면적이 변경될 경우 조정이 가능함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개공지 위치지정	•보행축상 주요결절부에 위치한 광장2와 공공보행통로 연결구간내 보행 및 휴게기능 강화를 위해 공개공지 위치 지정하고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성지침 제시

2. 보행 및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가로변	•간선가로변	
차량진출입구	-	•중1-2변 출입구 1개소, 진출입구 1개소 지정 •중1-1변 진입구 1개소 지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준수
공공보행통로	•기존경마로구간 : 폭원 12m이상	•기존경마로구간 : 폭원 12m	

■ 변경

구 분	계획지점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가로변	•간선가로변	
차량진출입구	-	•중1~2번 출입구 1개소, 진출입구 1개소 지정 •중1~1번 진입구 1개소 지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준수
공공보행통로	•기존경마로구간 : 폭원 12m이상	•기존경마로구간 : 폭원 12m	
보행연결통로	• 광장2에서 공공보행통로 연결구간(폭원 5m 이상)	• 광장2에서 공공보행통로 연결구간(폭원 5m 이상) - 단, 공개공지에 속한 구간은 공개공지 지침 준수	공개공지내 보행공간 포함하여 폭원 확보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보행연결통로	• 특별계획구역Ⅲ에 접한 광장2에서 공공보행통로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통로 폭원 확보

IV.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① 결정취지(변경없음)

②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특별계획구역(Ⅳ)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19,002	-	19,002	

③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사항(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용도 지역	일반상업지역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19,002	-	19,002	-

④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변경없음)

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사항(변경없음)

구 분	획지구모설정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특별계획구역(Ⅳ)	19,002㎡	-	19,002㎡	성수동1가 685-701번지

[6]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불허용도	전층	2호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9호 의료시설 : 장례식장 17호 아파트형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식물관련시설	2호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8호 장례식장	불용 3
	1층 전면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권장용도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 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권용 4
지정용도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회의장 (2,000㎡ 이상), 산업전시장(3,000㎡ 이상)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30% 이상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2,500㎡ 이상), 산업전시장(3,000㎡ 이상)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48.75% 이상	

주1) 면적산정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2) 권장용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면적의 10%이상 권장용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주3) 저층부의 지정용도는 각각 지정된 면적이상을 확보하되 III구역은 IV의 지정용도를, IV는 III의 지정용도를 추가적으로 확보 시에도 지정용도 인센티브 부여

주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2014.11.28.)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적용

주5) 특별계획구역(IV)는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의 연면적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 비율은 50% 이하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불허용도	전층	2호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9호 의료시설 : 장례식장 17호 아파트형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식물관련시설	2호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8호 장례식장	불용 3
	1층 전면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권장용도		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권용 4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지정용도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000㎡이상)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30%이상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6,500㎡이상)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48.75%이상	

주1) 면적산정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2) 권장용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면적의 10%이상 권장용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주3) 저층부의 지정용도는 각각 지정된 면적이상을 확보하되 III구역은 IV의 지정용도를, IV는 III의 지정용도를 추가적으로 확보 시에도 지정용도 인센티브 부여

주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2021.5.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적용

주5) 특별계획구역(IV)는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의 연면적만큼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공동주택 비율은 50% 이하

주6) 공연장의 경우 광장3주변 공연이벤트 등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1회이상 광장3 관리청과 협의

■ 변경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지정용도 변경	- 지구단위계획 지정용도 변경에 따른 세부개발계획 변경 - 산업전시장 및 회의장의 경우 컨벤션(산업전시장)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 및 독점 일대 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규모 이상의 다목적 공연장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정용도를 산업전시장 및 회의장에서 공연장으로 변경

2. 건축물 개발 밀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3. 높이 결정 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①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기 정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 5m	• 왕십리로변, 독섬로변 : 5m
	이면부	• 2m, 3m, 5m, 20m	• 중1~2로(20m)변 : 3m • 광장3변 : 5m
벽면 한계선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		•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 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 5m	• 왕십리로변, 독섬로변 : 5m	
	이면부	• 2m, 3m, 5m, 20m	• 중1~2로(20m)변 : 3m • 광장3변 : 5m	
벽면 한계선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기존 경마로구간의 공공보행통로에 한함
고층부 벽면한계선		•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개방형 화장실		• 광장3 이용자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개방 형 화장실 설치	• 광장3에 면하여 대상지내 개방형 화장실 설치 -건축주 부담으로 공간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개방 -위 치 : 광장3에 면한 공간 -세 부 시 설 : 개방화장실(장애인 포함) -운 영 시 간 : 10:00 ~ 22:00 -관 리 운 영 : 호텔 -개방형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 을 부착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주) 개방형 화장실 세부시설의 위치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벽면한계선 적용대상	• 공공보행통로 추가 지정에 따라 벽면한계선을 기존 경마로구간의 공공보행통로변으로 한정
개방형 화장실	• 서울숲 관문인 광장3 이용자들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 설치 및 운영

②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기정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외관 및 의장	외벽처리	• 주전면은 개구부로 처리	-	

■ 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외관 및 의장	외벽처리	• 주전면은 개구부로 처리	-	
		• 광장3에 면한 저층부 판매동은 시각적 부담감이 없도 록 입면 계획	• 광장3에 면한 저층부 판매동은 시각적 부담감이 없도 록 입면 계획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건축물의 외관 및 의장 (외벽처리)	• 광장3 이용객들에게 시각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저층부 계획

7]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규제)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왕십리로(25m)변, 독섬로변, 광장3변 : 5m • 중로1~2로(20m)변 : 3m	보행로 연계
공개공지 (규제)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간선도로변 및 보행축상의 주요결절부 필지에 설치	• 공공보행통로 및 서울숲역(왕십리로)변 침상형 공지와 연계하여 계획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부분	• 건축물 옥상부분에 녹화시설 설치	
침상형 공지 (규제)	• 역세권특별계획구역	• 서울숲역 부근에 침상형공지 계획	

※ 공개공지, 옥상녹화, 침상형공지는 건축계획 인·허가 시 위치 및 형태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규제)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왕십리로(25m)변, 독섬로변, 광장3변 : 5m • 중로1~2로(20m)변 : 3m	보행로 연계
공개공지 (규제)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간선도로변 및 보행축상의 주요결절부 필지에 설치	• 공공보행통로 및 서울숲역(왕십리로)변 침상형 공지와 연계하여 계획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부분	• 건축물 옥상부분에 녹화시설 설치	
침상형 공지 (규제)	• 역세권특별계획구역	• 지하1층 판매시설과 접하도록 침상형공지계획 • 공공보행통로 및 서울숲으로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지하철 연결통 로(지하2층)~침상형 공지(지하1층)를 통한 보행 진출입 계획	

※ 공개공지, 옥상녹화, 침상형공지는 건축계획 인·허가 시 위치 및 형태 변경 가능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침상형 공지	• 지하철과 연계한 침상형 공지 위치 변경과 지하철 이용자들의 지하철연결통로(지하2층)→침상형공지(지하1층)→공공보행통로 및 서울숲으로의 보행 접근성 강화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1	•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선형 변경
공공보행통로-2	• 광장4와 기존 경마로 구간 공공보행통로 연계구간 - 폭원 3m이상	• 공공보행통로-1에서 광장4와의 연계를 위한 구간 - 폭원 3m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공공보행통로-1 선형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도입 및 인접한 특별계획구역Ⅲ의 공공보행통로의 형태를 감안, 보행 연결성 강화 및 기존경마로 구간 선형의 흔적 남기기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공공보행통로-2 신설	• 공공보행통로-1에서 광장4로의 보행 접근을 위한 공공보행통로-2 추가계획(폭3m) •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도로변	• 간선도로변 : 왕십리로, 독섬로	교통영향평가 사항 반영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도로변 (일부구간 출입 허용)	• 간선도로변 : 왕십리로, 독섬로 (일부구간 출입 허용)	도면참조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차량출입금지구간	• 특별계획구역(IV)의 대규모 복합시설(주거, 판매, 숙박등)과 공연장 도입에 따라 증가되는 차량 혼잡도 및 차량 진출입 환경 개선을 위하여 • 독섬로 차량출입금지구간 중 일부구간에 차량출입 허용

4. 보행동선(보행연결통로)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 변경(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보행연결통로	• 광장4에서 공공보행통로-1 연결구간 - 폭원 : 10m이상	• 광장4에서 공공보행통로-1로의 건축물 하부(지상1층)연결통로 폭원 10m이상 확보	공개공지내 보행공간 포함하여 폭원확보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보행연결통로	• 광장4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연결통로 폭원 확보

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VI.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VII.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0)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특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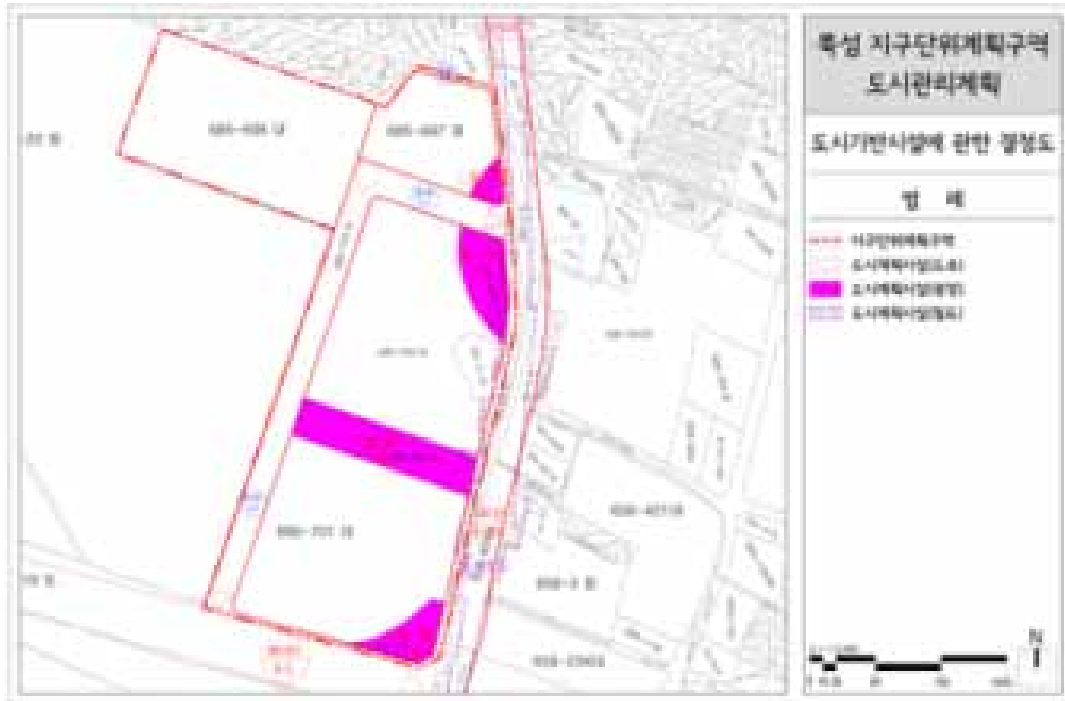
■ 특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특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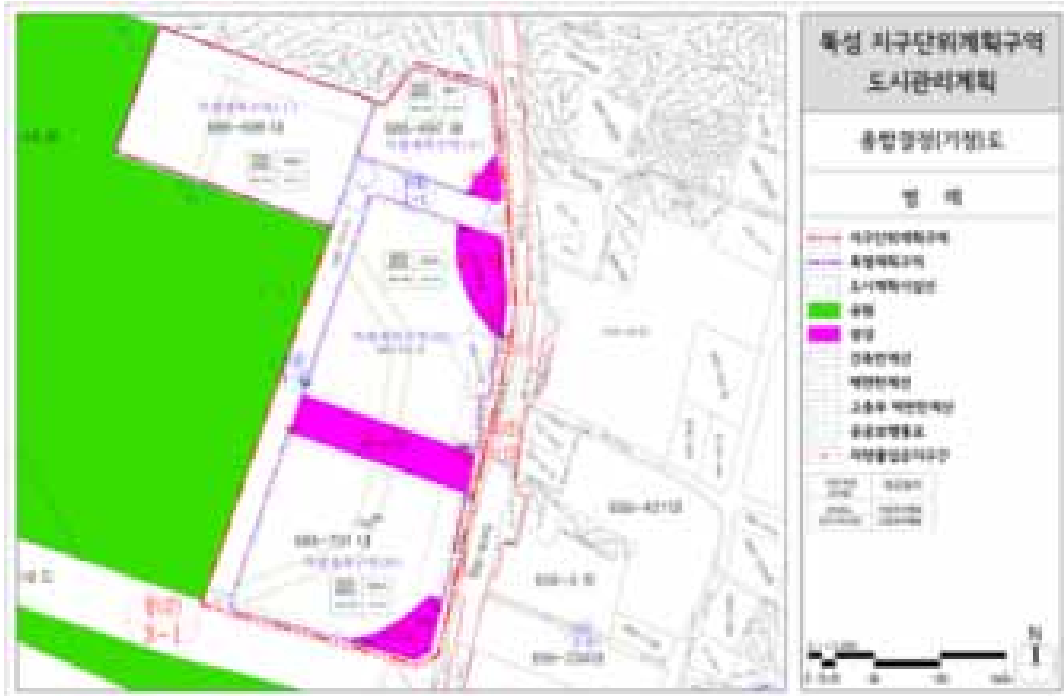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이하여백)

■ 뚝섬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기정)도



■ 뚝섬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변경)도



■ **뚝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지침(기정)도**



■ **특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지침(변경)도**



■ 뚝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지침(기정)도



■ 뚝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지침(변경)도



2021 - 372

() ()

1.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9.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80호(2016.3.31.)로 실시계획 고시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 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54호(2021.6.4.)로 열람공고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8-32 ~ 구로동 69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왕복4,5차로→6차로), L=1.11km
 - 광복교 확장(L=67.249m, B=27.85~36.7m)
 - 안양교 철거 및 신설(L=275m, B=27.85~36.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서울특별시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예정일 : (당초) 2019년 9월 30일 → (변경) 2021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조서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등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133-8084)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3708-866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 토지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변경없음〉											
당초	구로동	683-15	전	46	46	한 국	경기시흥군서면 광명6리 27-27				
변경	구로동	683-15	전	46	46	한 국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890-33(교로리)				

2021 - 1878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채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서진원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301번길 54 101동 503호 (춘의동, 보령홈타운)	위반일시 : 2021-04-20 15:40 위반장소 : 양화대교 복단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축값 11.35t 초과값 1.35t, 인천06아52**)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5-24 납기일 : 2021-07-31
최재봉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 103동 301호 (일산동, 일산푸르지오)	위반일시 : 2021-04-24 10:14 위반장소 : 한강대교 노들직녀카페 앞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축값 2.78m 초과값 0.28m, 경기86자41**)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5-24 납기일 : 2021-07-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1. 0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27, 팩스번호: 02-300-8337

2021 - 1884

2019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불능된 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금반환금 체납분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1. 7. 9. ~ 7. 23.(14일)
4. 대상
 - 송달 대상자 :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KSAM) 대표 박**
(단체번호 : 415-802-0520)
 - 서류의 송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40가길 28
 - 서류의 명칭 :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금반환금 체납분 독촉고지 및 압류 예고 알림
 - 서류의 내용
 -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금반환금 체납분 독촉고지
 - 미납 시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반환금 부과년월일 : 2021. 3. 10.
 - 독촉고지서 납입기한 : 2021. 6. 15.
 - 주요세목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부과금액 : 40,047,040원
5. 공시송달 변경 납입기한 : 2021. 8. 6.까지

6. 납부방법

납부방법	번 호	비고
은행전용계좌	(우리은행) 103-858905-65-211	
	(신한은행) 562-051-93834521	
	(KEB하나은행) 122-843217-68137	
	(국민은행) 4130-92-1868434-9	
	(기업은행) 601-218680-97-466	
	(우 체 국) 911153-80-334857	
	(씨티은행) 434-91667-92-1-15	
	(농협은행) 790-0762-5819-256	
	(수협은행) 085-40-119155279	
	(카카오뱅크) 9102-07-6979410	
	(케이뱅크) 700-0207-697-9315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	(전자납부번호) 11000-2-20-21-7034912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동물보호과 김수진(☎ 02-2133 -76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888

2491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9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I. 열람기간: 2021. 7. 15. ~ 2021. 7. 29.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02-2133-6294)

III. 열람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IV.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중구 황학동 249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황학동 2491	-	증) 494	494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비 고
신 설	중구 황학동 249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494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합 계	494	-	494	100.0	
	일반상업지역	494	-	494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	-	중구 황학동 2491	486.6	단독개발 지정	

※ 획지면적은 구역면적(494㎡)에서 도로면적(7.4㎡)을 제외한 면적임(486.6㎡)

나.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	- 단독개발 지정 - 중구 황학동 249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1)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중구 황학동 249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안마사술소 • 숙박시설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중구 황학동 249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1,0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 74m 이하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1,0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 74m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코자 함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원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 - 486.6㎡ X 14% = 68.12㎡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70.55㎡ - 부지면적의 14.50%	기본 용적률 1,000% 이하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7.92% : 12.08%용적률 기준) - 연면적 기준 87.55% : 12.45%		
	주거비율	• 80%이상 90%이하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전용면적 18㎡ ~ 60㎡ 내외 - 1인세대(세여형 포함) : 전용 18㎡ 이상 - 2인이상 : 전용 36㎡ 이상	• 1인 세대 : 전용 18.57㎡ 95세대 • 2인 세대 : 전용 37.24㎡ 19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 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100호 미만 : 100㎡ 이상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 300호 이상 ~ 364호 미만 : 200㎡ 이상 • 364호 이상 : (전체건립호-299호)X2.5X1.25	• 지상23층 211.73㎡ 계획 - 114세대(150㎡이상)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주2)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3층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비 고
-	이면도로변	1m	보도형 전면공지(1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가.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일반 상업지역	1,000% 이하	-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주1)} - 486.6㎡ x 14% = 68.12㎡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70.55㎡(14.50%)	중구 황학동 249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부지면적은 구역면적(494㎡)에서 도로면적(7.4㎡)을 제외한 면적임(486.6㎡)

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021-1899

「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에 ‘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 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1. 취지 및 목적

도로횡단 보호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호(안전지대), 제160조(과태료 부과) 제3항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가. 주·정차 위반 차 : 24시간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내 주·정차 위반차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

－ 평일 08:00 ~ 20:00

(단,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내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 전용차로 위반 차 : 운영시간에 한함

－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각각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4. 신고방법

가.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5. 신고대상

가.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다.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라.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마. 전용차로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에서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바.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사.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의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임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

6.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시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 시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8. 시행 일자 : 2021. 8. 5.

9.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전화:02-2133-4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90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 지정 예정종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지정 예정명칭: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
【玉水洞 彌陀寺 極樂殿과 獨聖殿】
- 문화재 지정대상
 - 건물 2동, 토지 1필지 129㎡

소재지	지번	명칭	수량	지적면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성동구 옥수동	395-1	극락전	건물1동	2,571	114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독성전	건물1동	2,571	15	
총 계	1필지		건물2동	2,571	129	

- 별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없음

○ 공고 사유

-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미타사는 한양도성 남쪽 외곽의 한강변, 매봉산과 달맞이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능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보면 사찰은 응봉 남동쪽에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변을 마주한 속칭 두모개 승방이라고 불리던 두모리에 자리하고 있다. 완만한 경사지에 매봉산을 마주하는 서향의 극락전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대방 형식의 관음전을 두고 좌측에는 1칸 규모의 독성전이, 우측에는 5칸 규모의 노전(爐殿)이 자리하고 있다. 대방(관음전) 양측에서 시작된 담장이 극락전과 독성전, 노전을 에워싸서 극락전을 중심으로 별원(別院)을 구성한 모습은 조선 후기 사찰배치의 특성으로 이곳 미타사에 잘 남아 있다. 또한 종남산 미타사 약지, 상량목서 등 영건활동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어 대상 건축물의 창건과 중창 시점은 물론 관련 인물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극락전의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를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이익공을 다포처럼 배치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극락전 지붕의 합각면에는 전돌을 이용하여 문양을 장식하였는데 이는

궁궐의 전당건축과 유사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공포는 팔각주두에 이익공으로 되어 있으며 주상포의 사이에 2개의 익공과 운공을 두어 다포처럼 구성하였고, 보머리의 봉두와 파련문양을 한 몸으로 조각하는 등 매우 특이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내부의 천장은 주심에서 중도리까지 빗반자로 구성하였고 중도리 사이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 극락전의 편액은 순조의 어필로 추정되며 사룡을 고정하던 두석 첩편의 흔적이 보이는 등 매우 귀중한 유물로서 왕실과 관련된 미타사의 사격(寺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 왕실 후원으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구조 방식이나 건축 양식적으로 볼 때 궁궐건축과 불전건축의 수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18세기 이후 화성행궁과 경복궁 등 관영건축에 주로 적용되었던 운공의 사용법과 사찰건축 특유의 장엄성과 의장성이 결합된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1827년 초창 이후 현재까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불전으로 서울 근교 소재 불전건축 가운데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화계사 대웅전, 흥천사 극락보전과 명부전, 봉은사 판전, 봉원사 칠성각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 지정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에 맞배지붕인 미타사 독성전은 익공의 양식과 운공의 배치, 조각수법 등이 극락전과 동일하여 1887년 극락전 중수 당시 같이 중창 또는 중수한 건물로 추정된다. 공포는 전면에만 초익공을 올리고 측면과 후면은 도리집으로 구성한 독특한 모습이다. 작은 규모의 전각임에도 익공을 올리고, 기둥사이 주심도리 밑에 운공을 배치한 모습은 같은 규모의 여느 건축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높은 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면의 의장성에 비해 측면과 후면은 도리집으로 처리한 모습에서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축물의 의장성을 어떻게 유지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독성전은 사찰 내에서 부속 전각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주불전인 극락전과 같이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불전과 부속 전각의 위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불교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익공과 운공의 의장을 극락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작은 규모의 전각치고는 보기 드문 장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타사 독성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이에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한다.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예정 도면 : <첨부자료> 참조

2.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제21조(허가기준)·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제24조(신고사항) 및 제26조(행정명령), 제54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 제55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수리)·제20조(허가신청)·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동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 적용 대상이 됨

3. 의견제출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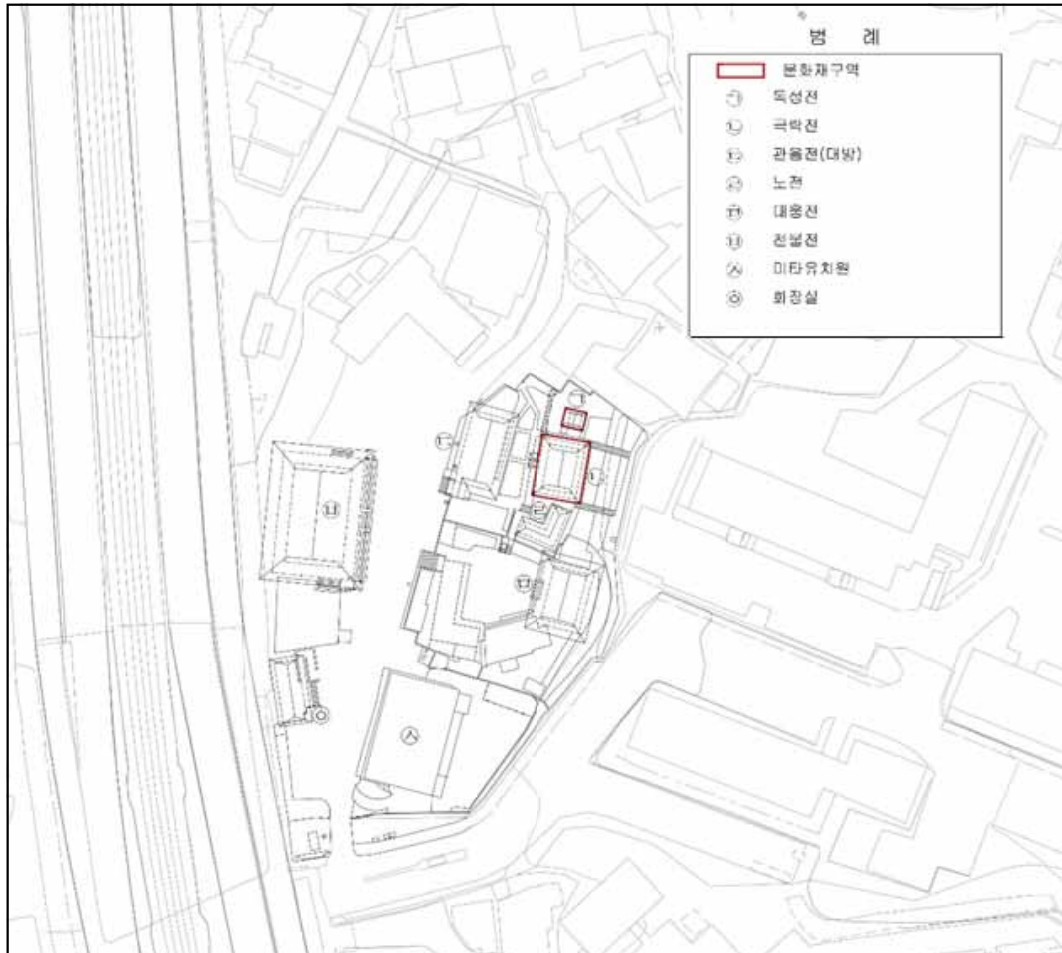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0
 -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성동구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 2286-5202
 - ② 팩스 : (02) 2286-5905
 - ③ 우편 :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기타 의견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



○ 문화재 지정대상

- 건물 2동, 토지 1필지 129㎡

소재지	지번	명칭	수량	지적면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성동구 옥수동	395-1	극락전	건물1동	2,571	114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독성전	건물1동	2,571	15	
총계	1필지		건물2동	2,571	129	

- 별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없음

2021 - 1903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료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공고하여 특정 구입분야(주제)의 자료를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구입 대상 자료

구입분야(주제)	세부내역
전승(현대)공예: 초경공예	○ 전승공예 중 초경공예에 속하는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의 대표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수출공예품전람회, 공예시범소, 국내·외 박람회 등 1920~1970년대 초경공예 진흥 관련 자료 ○ 초경공예 장인과 현대공예 작가가 협업한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2. 참가 자격: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작가 등

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 매도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료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다. 최종선정 후 계약 시 계약자명과 매도신청자명, 통장명의를 일치해야 합니다.

3. 매도신청 접수 기간: 2021년 8월 2일(월) ~ 8월 6일(금)까지

4.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중 택일

가.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① 주소: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 자료공개구입 담당자 앞

② 방문 접수시간: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토, 일, 공휴일 제외)

③ 우편접수 시 '매도신청서 재증' 명기, 우편물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사용하십시오.

나. 이메일 접수: greenstupa@seoul.go.kr

다. 매도신청 접수 기간 내에만 접수합니다.(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2개 서식(①, ②)을 작성한 후 자료사진(③)과 함께 제출

① 자료매도신청서 1부

－ 신청서에는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 시에는 스캔·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송부합니다.

－ 매도신청자료 목록을 간단히 작성합니다. ②번 서식에 별도로 상세히 작성합니다.

② 매도신청자료 명세서 1부

－ 매도신청자료 목록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자료의 명칭, 시대, 크기, 출처, 내용, 수량, 신청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내용’ 란에는 형태상의 특징(보존상태, 특기사항 등)과 제작자 및 작품이력, 각종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③ 자료사진(이미지 파일)

－ 파일명을 매도신청자료 명세서의 연번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 파일형식: JPG(1점당 1매 이상, 1매 용량 5MB 이하)

－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합니다.

6. 실물 접수: 사전 서류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한해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함

가. 실물 접수 시 제출 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 또는 단체: 자료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접수 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나. 실물 접수는 자료공개구입의 절차 중 하나로 자료평가와 구입심의를 위한 단계이며, 구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매도신청자에게 반환을 통보하게 되며, 매도신청자는 반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직접 되찾아가야 합니다. 반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7. 자료 구입 가격: 자료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 결정

가. 자료평가위원회 및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평가, 심의하여 구입 대상을 선정합니다.

나. 구입선정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불법취득 자료(도난문화재) 여부를 검증합니다.

다. 최종 선정된 자료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9. 매도신청 후 구입 관련 절차

가.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서류 심의(결과 개별 안내) → 실물 접수 →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심의 →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심의 →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인터넷 공개) → 자료구입 계약

나. 신청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종 구입결정까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다. 심의 결과 및 추후 일정은 개별 안내합니다.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소유권 이전 및 저작권 사용 관련

가.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서울공예박물관으로 귀속되며, 서울공예박물관은 모든 자료를 촬영하여 인쇄물 및 기타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도자료가 작가 본인의 작품인 경우 ‘공예(작)품 저작권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나. 매도신청 시 제출한 자료의 정보가 사실에 위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서울공예박물관 매도계약이 불가합니다.

다. 자료의 실제 외형(형태, 색상, 크기 등)이 매도신청 시 제출한 사진과 다를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라. 자료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세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02-6450-7054)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①]

자 료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E-mail)	

매도신청자료 목록

연번	명칭	수량(점)	매도신청액(원)	비고
계				

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매도를 신청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서식 ②]

매 도 신 청 자 료 명 세 서										
연번		구입분야	명칭	시대	크기(c m)	출처(소장경 위)	내용	수량(점)	매도신청액(원)	비고
계										

※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연번마다 1장 이상 별도 송부

2021 - 1911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5호(2003.10.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8호(2003.12.26)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58호(2005.05.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6호(2006.01.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9호(2007.03.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12호(2007.11.0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1호(2008.11.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1호(2009.06.25.)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7호(2009.12.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11호(2010.11.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5호(2011.01.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9호(2011.02.10)호로 택지개발사업(1공구)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3호(2011.12.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9호(2013.12.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78호(2014.10.16)호로 택지개발사업(2공구) 완료된 서울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3공구가공사완료 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황 상 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 648,032㎡ (1공구 : 632,018㎡, 2공구 : 3,913㎡, 3공구 : 12,101㎡)
 - ※ 금회 준공지역 : 3공구 (12,101㎡)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648,032	632,018	3,913	12,101	100.0	※ 공구분할(1,2,3공구)
주택건설용지	247,202	235,101	-	12,101	38.2	
공동주택	241,646	229,545	-	12,101	37.3	아파트 및 부속시설 - 1공구 : 1~12블럭 - 3공구 : 13블럭
근린생활시설	5,556	5,556	-	-	0.9	
공공시설용지	400,830	396,917	3,913	-	61.8	
도○○○○로	102,202	102,202	-	-	15.8	도시철도시설(14㎡) 점용
공○○○○원	81,319	81,319	-	-	12.5	근린공원2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녹○○○○지	52,869	52,869	-	-	8.2	완충녹지4개소, 경관녹지5개소, 저류지2개소(3,914㎡) 포함 도시철도시설(49㎡) 점용
하○○○○천	13,045	13,045	-	-	2.0	장지천, 고속도로시설부지 중복결정(A=77㎡)
교육시설	51,040	51,040	-	-	7.9	유2개소, 초1개소, 중1개소, 고1개소, 특수2개소
공공청사	2,714	2,714	-	-	0.4	소방파출소1개소, 파출소1개소,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	6,554	2,641	3,913	-	1.0	2개소(1공구 : 1개소, 2공구 : 1개소)
문화시설	657	657	-	-	0.1	1개소
종교시설	1,257	1,257	-	-	0.2	2개소
주차장	3,986	3,986	-	-	0.6	노외주차장2개소
차고지	37,719	37,719	-	-	5.8	버스차고지1개소 택시차고지1개소
교육연구시설	46,537	46,537	-	-	7.2	1개소
영유아보육시설	678	678	-	-	0.1	1개소
가스가압장	24	24	-	-	-	2개소
자족시설	229	229	-	-	-	
(저류지)	(3,914)	(3,914)	-	-	-	2개소(완충녹지와 중복결정)

5. 준공일자 : 2015년 12월 31일 (3공구)

※ 사업기간 : 1공구 2003. 09. 27. ~ 2010. 12. 31.

2공구 2003. 09. 27. ~ 2014. 08. 31.

3공구 2003. 09. 27. ~ 2015. 12. 31.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적(㎡)	소유자	관리처분사항
계	12,101		-
주택건설용지	12,101	SH공사	-
공동주택 13단지	12,101	SH공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공급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7.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
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1 - 1914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1. 7. 15.~2021. 7. 29.(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납세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시간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납부자 주소	우편번호	반송사유	납부기한
1	20211623	000047339214 201202103250 01076	26허4590	K5	구로디지털단지 역	2021-02- 07	17:48	2021-02- 07	23:22	005:34	8,700	8,700	0	정영식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11-30-57 205호	08392	폐문부재	2021-07- 12

2021 - 1918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기간 : 2021. 7. 18.~2021. 8. 1.(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삼육종합건설 (정성진)	건축공사업 01-42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90, 1415호 (구로동, 에스티엑스더블유타워)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증가능금액) 미보완	법 제10조	등록말소 (2021. 8. 2.)	법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2021 - 1920

()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2020.6.25.)로 결정·고시된 구로구 구로2동 625-31 일대 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1층 시설계획과(☎2133-8406),
구로구청 신관3층 도시계획과(☎860-332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2동 625-31 일대	10,360.0	-	10,36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20호 (2020.6.25.)

※ 해당지번 말소로 단순 변경 (구로2동 625-31 → 구로2동 625-103)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게재노구생략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2021 - 1921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폐기사유 : 2021.7.19字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 폐기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비고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1.7.19.	
	공공재생과 본임물품출납원의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공재생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공재생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1 - 1930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사유 : 2021.7.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함
2. 직인 폐기일자 : 2021. 7. 19.
3. 폐기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비고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1.7.19	
	서남권사업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1 - 1934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 최초 사용일자 : 2021년 7월 19일
- 공인등록 내용

공인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장의인	2.4cm × 2.4cm		

2021 - 1935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1조(공고)에 의거하여, 공인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폐지
- 공인폐기 일자 : 2021년 7월 19일
- 공인폐기 내용

공인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도시재생실장의 인	2.4cm×2.4cm		

2021 - 27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성중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전혜원 (배우자)	현대차	50	매각	12,025	2021. 6.24.	NH투자증권
전혜원 (배우자)	현대차	50	매각	12,075	2021. 6.24.	NH투자증권
전혜원 (배우자)	현대차	100	매각	24,000	2021. 6.24.	NH투자증권
전혜원 (배우자)	현대차	105	매각	25,305	2021. 6.24.	NH투자증권
전혜원 (배우자)	현대차	72	매각	17,424	2021. 6.25.	NH투자증권

2021 - 7

2021 1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2021.7.2.)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합 계		10,849,193,686	9,741,993,876	1,107,199,810	11.4%
이전수입	소계	10,395,395,659	9,363,171,630	1,032,224,029	11.0%
	중앙정부이전수입	5,972,924,280	5,748,654,785	224,269,495	3.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406,214,802	3,605,550,292	800,664,510	22.2%
	기타이전수입	16,256,577	8,966,553	7,290,024	81.3%
자체수입	소계	127,488,960	98,218,246	29,270,714	29.8%
	교수-학습활동수입	1,411,398	2,140,684	△729,286	△34.1%
	행정활동수입	4,900,646	4,900,646	0	0.0%
	자산수입	11,891,892	11,891,892	0	0.0%
	이자수입	7,693,431	7,693,431	0	0.0%
	금융자산회수	19,190,620	19,190,620	0	0.0%
	기타수입	82,400,973	52,400,973	30,000,000	57.3%
차입	소계	0	0	0	0
	지방교육채	0	0	0	0
기타	소계	326,309,067	280,604,000	45,705,067	16.3%
	전년도이월금	326,309,067	280,604,000	45,705,067	16.3%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0,849,193,686	9,741,993,876	1,107,199,810	11.4%
1.유아및초중등교육	10,169,134,255	9,433,593,128	735,541,127	7.8%

구분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가.인적자원운용	5,101,251,977	5,059,174,446	42,077,531	0.8%
나.교수-학습활동지원	602,363,744	441,004,093	161,359,651	36.6%
다.교육복지지원	1,423,800,864	1,221,456,353	202,344,511	16.6%
라.보건/급식/체육활동	137,902,666	87,871,865	50,030,801	56.9%
마.학교재정지원관리	2,165,689,528	2,169,899,510	△4,209,982	△0.2%
바.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38,125,476	454,186,861	283,938,615	62.5%
2.평생·직업교육	32,108,015	31,018,031	1,089,984	3.5%
가.평생교육	31,188,477	30,098,493	1,089,984	3.6%
나.직업교육	919,538	919,538	0	0.0%
3.교육일반	542,739,427	267,317,587	275,421,840	103.0%
가.교육행정일반	118,804,128	113,723,357	5,080,771	4.5%
나.기관운영관리	56,298,978	36,063,521	20,235,457	56.1%
다.지방채상환및리스크	367,636,321	117,530,709	250,105,612	212.8%
4.예비비	105,211,989	10,065,130	95,146,859	945.3%
가.예비비및기타	105,211,989	10,065,130	95,146,859	945.3%

2021 - 113

(:) ()

1. 건설부고시 제198호(1971.04.07.)로 결정된 용비교~성수동1가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서울 시고시 제125호(1979.03.23.)로 변경 결정된 왕십리광장~도산로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일부 구간이 지형고시 도면과 상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37	20	-	1,000	용비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제198호 (1971.04.07.)	
정정	중로	1	137	20	-	1,000	용비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제198호 (1971.04.07.)	지형도면 일부정정
기정	대로	2	50	19.4~40.8	-	4,350	왕십리 광장	도산로	-	-	건설부고시제198호 (1971.04.07.)	
정정	대로	2	50	19.4~40.8	-	4,350	왕십리 광장	도산로	-	-	건설부고시제198호 (1971.04.07.)	지형도면 일부정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37	중로 1-137	• 중복 입력된 도시계획선 정정	• 고시도면 및 도시계획 현황도의 도시계획선과 일치하도록 정정
대로 2-50	대로 2-50	• 중복 입력된 도시계획선 정정	• 고시도면과 일치하도록 정정

2) 결정도 및 지형도: 별첨(지형도면은 결정도로 같음)

※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 범 레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21 - 12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50호(2004.1.5.)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로 결정되고 동대문구 고시 제2004-6(2004.2.5.)호로 지형도면 승인 및 동대문구 고시 제2020-26호(2020.03.2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동대문구 715번지 일대 용두희망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입안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의 신설 등 주변 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공원의 면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과 연계하여 보다 쾌적한 녹지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간 및 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쾌적한 휴식·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15번지 일대

3. 면 적 : 1,291㎡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02-2127-4776)

()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15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440.0	853.6	-	-	-	70	1,291.0	772.0	-	-	-	45	감) 81.6㎡
기 반 시 설	소 계	520.0	520.0	-	-	-	-	429.0	429.0	-	-	-	-	감) 91.0㎡
	도 로	240.0	240.0	-	-	-	-	105.0	105.0	-	-	-	-	감) 135.0㎡
	광 장	280.0	280.0	-	-	-	-	324.0	324.0	-	-	-	-	증) 44.0㎡
조경시설		-	-	-	-	-	13	-	-	-	-	-	11	-
휴양시설		-	-	-	-	-	32	64.0	64.0	-	-	-	16	증) 64.0㎡
유흥시설		221.6	221.6	-	-	-	2	231.0	231.0	-	-	-	4	증) 9.4㎡
운동시설		62.0	62.0	-	-	-	3	48.0	48.0	-	-	-	4	감) 14.0㎡
교양시설		-	-	-	-	-	2	-	-	-	-	-	2	-
관리시설		-	-	-	-	-	17	-	-	-	-	-	8	-
수경시설		50.0	50.0	-	-	-	1	-	-	-	-	-	0	감) 50.0㎡
녹지 및 기타		586.4	586.4	-	-	-	-	519.0	-	-	-	-	-	감) 67.4㎡
시설율 (법정 20%)		(853.6 / 1,440.0) × 100 = 59.30 %						(772.0 / 1,291.0) × 100 = 59.80 %						
건폐율 (법정 5%)		(0 / 1,440.0) × 100 = 0 %						(0 / 1,291.0) × 100 = 0 %						

2.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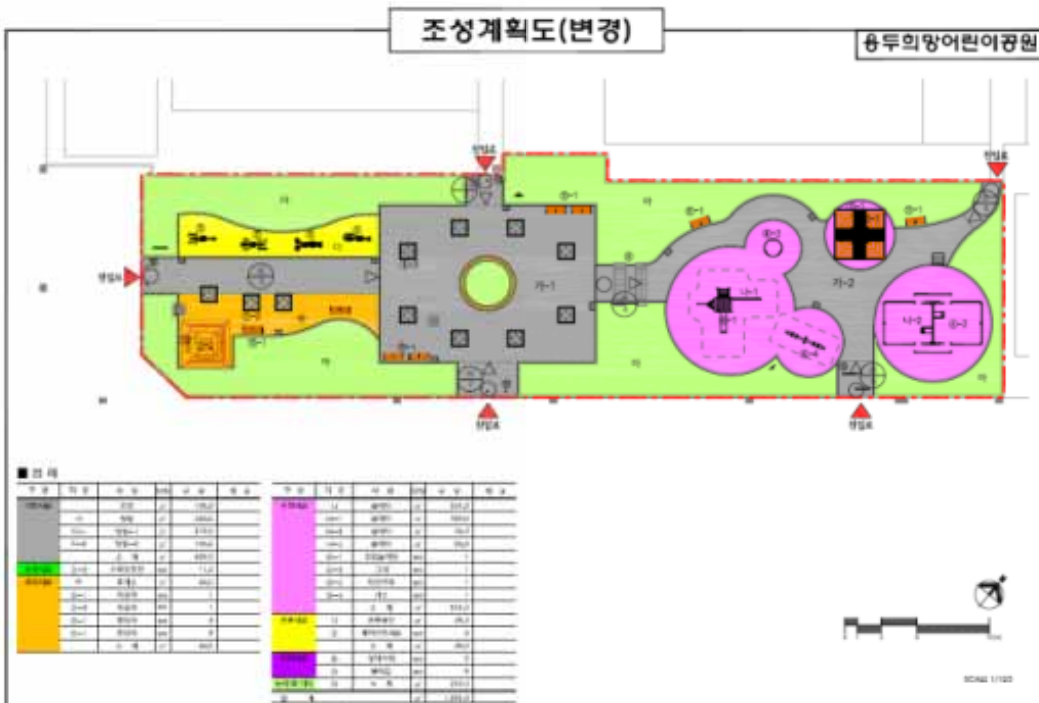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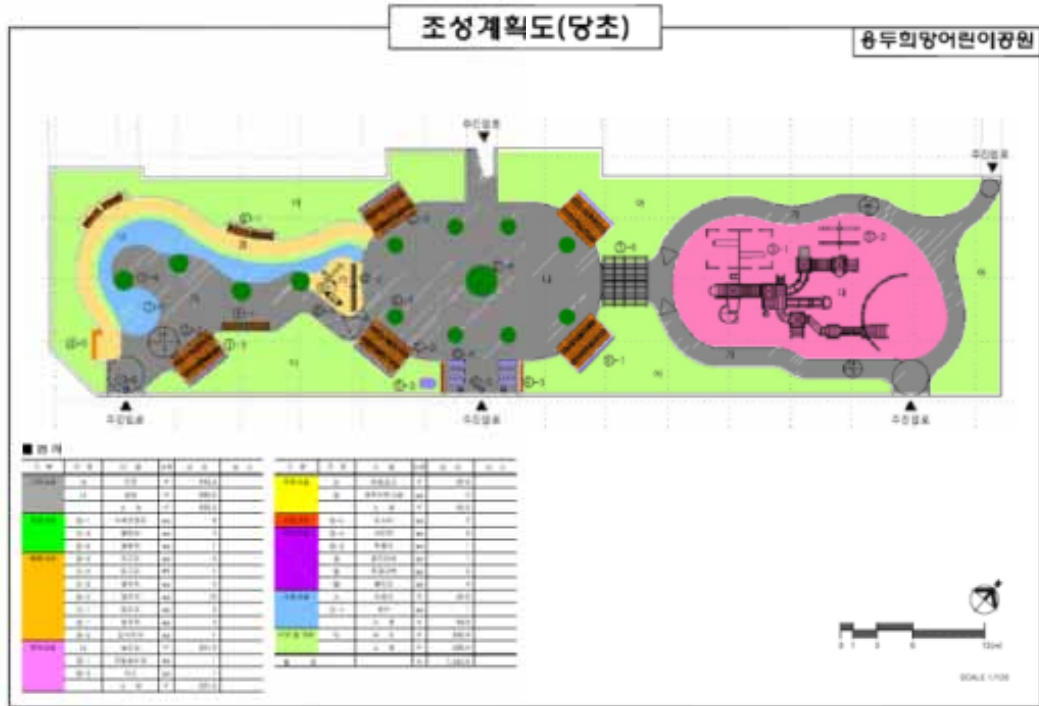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440.0	853.6								1,291.0	772.0					45	감) 81.6㎡
기반 시설	소계			520.0	520.0								429.0	429.0					-	감) 91.0㎡
	도로	가	부지내	240.0	240.0					-		부지내	105.0	105.0					-	감) 135.0㎡
	광장	나	부지내	280.0	280.0					-	가	부지내	324.0	324.0					-	증) 44.0㎡
											가-1	부지내	(219.0)	(219.0)					-	
											가-2	부지내	(105.0)	(105.0)					-	
조경 시설	소계			-	-					13			-	-					11	-
	수목보호판	㉔-1	광장							8	㉔-2	광장							11	
	플랜터	㉔-4	산책로							4										
	플랜터	㉔-6	광장							1										
휴양 시설	소계			-	-					32			64.0	64.0					16	증) 64.0㎡
	휴게소										라		64.0	64.0					-	증) 64.0㎡
	파고라	㉔-2	광장							4	㉔-1	부지내							1	
		㉔-3	산책로							1	㉔-2	휴게소							1	
	평의자	㉔-2	산책로							4	㉔-1	부지내							6	
	평의자	㉔-3	광장							16										
	등의자	㉔-1	산책로							2										
	등의자	㉔-1	운동공간							4	㉔-1	부지내							8	
	연석의자	㉔-5	부지내							1										
유희 시설	소계			221.6	221.6					2			231.0	231.0					4	증) 9.4㎡
	놀이터	다	부지내	221.6	221.6	STS				-	나	부지내	231.0	231.0	STS				-	증) 9.4㎡
											나-1		(129.0)	(129.0)					-	
											나-2		(76.0)	(76.0)					-	
											나-3		(26.0)	(26.0)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 시설	조합놀이대	㉓-1	놀이터							1	㉓-1	놀이터								1	
	그네										㉓-2	놀이터								1	
	회전무대										㉓-3	놀이터								1	
	시소	㉓-2	놀이터							1	㉓-4	놀이터								1	
운동 시설	소 계			62.0	62.0					3			48.0	48.0						4	감) 14.0㎡
	운동공간	라	부지내	62.0	62.0					-	다	부지내	48.0	48.0						-	감) 14.0㎡
	체력단련시설	㉓	부지내			목재 AL- Casting				3	㉓	부지내			목재 AL- Casting					4	
교양 시설	소 계			-	-					2			-	-						-	-
	전시벽	㉓-3	녹지			철근 콘크리 트				2											
관리 시설	소 계			-	-					17			-	-						10	-
	게이트	㉓-4	광장							6											
	회호석	㉓-2	녹지			철근 콘크리 트				1											
	장미아치	㉓	산책로							1	㉓	산책로								2	
	목재가벽	㉓	녹지			방부목				5											
	볼라드	㉓	부지내			STS				4	㉓	부지내								8	
수경 시설	소 계			50.0	50.0					1			-	-						-	감) 50.0㎡
	도설지	사	부지내	50.0	50.0					-											
	분수	㉓-1								1											
녹지 기타	소 계			586.4	-					-			519.0	-						-	감) 67.4㎡
	녹지 및 기타	아	부지내	586.4	-					-	마	부지내	519.0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00.6	240.0				
변경					35.0	105.0				
당초	산책로	소 계			100.6	240.0				
변경	산책로	소 계			35.0	105.0				
당초	산책로	산	1	1.5~ 3.0	14.0	27.0	산책로	대상지경계	산책로 2	
변경		산	1	5.0	3.0	15.0	산책로	대상지경계	가-1	
당초		산	2	1.6	57.0	91.2	산책로	대상지경계	산책로 1	
변경		산	2	3.0	2.5	7.5	산책로	대상지경계	가-1	
당초		산	3	3.3	4.2	13.9	산책로	산책로 2	가	
변경		산	3	3.0	19.0	57.0	산책로	대상지경계	가-1	
당초		산	4	3.5~ 5.0	25.4	107.9	산책로	대상지경계	가	
변경		산	4	3.0	3.5	10.5	산책로	가-1	가-2	
신설		산	5	3.0	3.0	9.0	산책로	대상지경계	가-2	
신설		산	6	1.5	4.0	6.0	산책로	대상지경계	가-2	

()



2021 - 131

() ()

서울특별시고시 제24호(1986. 1. 13)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폐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동대문구청장

1. 결정사유

행정동 통·폐합, 청사 이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향후 추가적인 공공청사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폐지)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공공 청사	동대문구 이문동 270-32	142	감)142	0	서울특별시고시제24호 (1986. 1. 13.)	이문2동 사무소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면적 142㎡→0㎡ 감) 142㎡	• 행정환경의 변화로 향후 추가적인 공공청사 수요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5668)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도면
- 기정



- 변경



2021 - 14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3-26호(2003.04.16.)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일부를 경미한 면적축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15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공동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의 일부분이 주차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해당부분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서 제외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답십리동 36-12	609.0	감)22.0	587.0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3-26호(2003.4.16.)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주차장	· 면적변경 609.0㎡→587.0㎡ 감) 22.0㎡	현장조사결과 공공재산(주차장)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일부를 이용현황에 맞게 경미한 면적축소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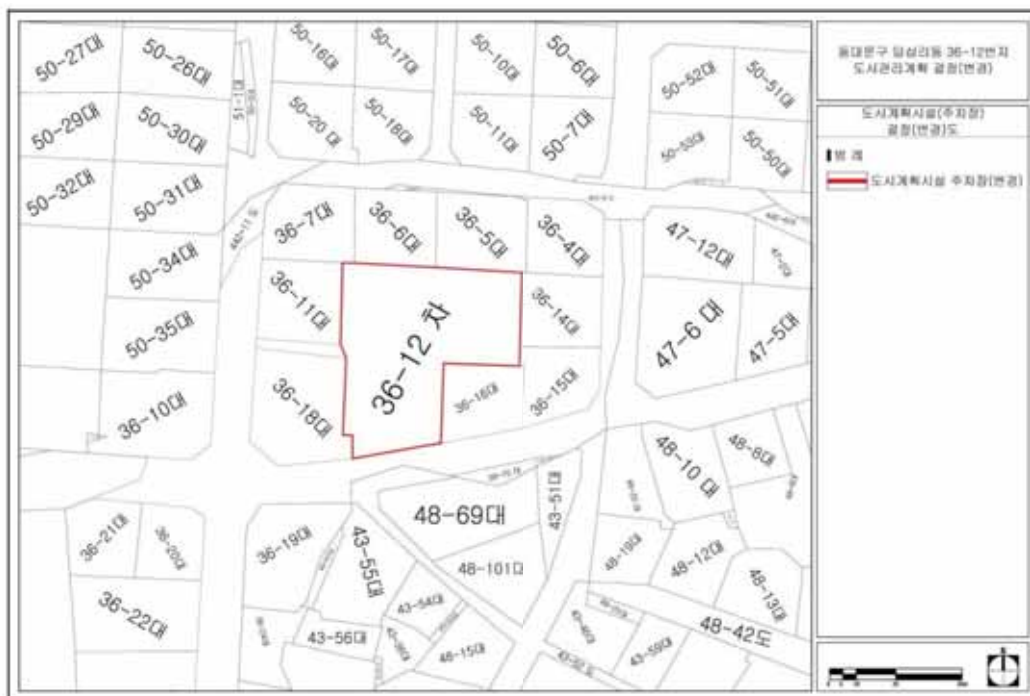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5) 및 주차행정과(☎2127-4878)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변경)



2021 - 112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279-3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중랑구청장

1. 결정취지 : 우리 구 관내 새우개 경로당 주변 도로확장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7	4	국지 도로	93	신내동27 9-3	신내동27 8-60	일반 도로	-	'09.12.12.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93	신내동27 9-3	신내동27 8-60	일반 도로	-	-	도로곡선부 선형조정

○ 변경 사유서

변경前 도로명	변경後 도로명	변경내용	비고
소로 3-7	소로 3-7	-도로확장 · 폭원 4m → 6m	-내부 도로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확폭 및 정비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 2094-2173) 및 도로과(☎ 2094-270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위치 : 신내동 279-3 일대, 축척 : 1/1,000)

■ 지정



■ 변경



2021 - 112

()
() 가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2. 수락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40호(2019.3.28.)로 실시계획 인가 하였으며, 노원구 상계동 138-235번지 일대 수락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된, 노원구고시 제2019-110호(2019.10.04.)에 대해 사업기간(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다시 인가고시(변경)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8-23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수락산근린공원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17,303㎡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 변경 : 실시계획인가 최초 고시일로부터 5년간

사. 고시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6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근린공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계동 138-235	도로		109	109	서울특별시					
2	상계동 138-172	잡종지		149	14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압류	
3	상계동 138-173	잡종지		149	149	서울특별시					
4	상계동 138-174	잡종지		149	149	서울특별시					
5	상계동 산150-18	임야		1,843	1,756 (1/3)	서울특별시					
					1,756 (1/3)	서울특별시					
					1,756 (1/3)	서울특별시					
6	상계동 산150-5	임야		2,583	2,583 (1/2)	서울특별시					
					2,583 (1/2)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상계동 산149-7	임야		5,124	5,124 (1/4)	서울특별시					
					5,124 (1/4)	서울특별시					
					5,124 (1/4)	서울특별시					
					5,124 (1/4)	서울특별시					
8	상계동 산145-14	임야		7,258	7,258 (65/100)	서울특별시					
					7,258 (35/100)	서울특별시					
9	상계동 112-93	임야		26	26	서울특별시					

2021 - 154

() 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8-282호(1978.06.13.) 및 동작구 고시 제2020-97호(2020.06.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0-78호(2020.06.18.)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1-1077호(2021.06.17.)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5동 1139-1 ~ 190-220	144	6	1,704	사당5동 118-1	사당5동 190-220
변경	사당5동 1139-1 ~ 190-220	144	6	1,062.6	사당5동 118-1	사당5동 190-220

※ 변경사유 : 착오에 의한 도로면적 정정,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189-25	도	14.0	11.0	***	서울 중구				
	변경	동작구 사당동	189-25	도	14.0	14.0	***	서울 중구				

2021 - 15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사항 없음)

가. 성명 및 주소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최준규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15, 상정빌딩 4층(상도1동 261))

※ 공동사업주체 : 현대건설(주) 박동욱(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75)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용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기정	아파트	35/5	4	608	13,843.00	89,497.75	24.64	396.35	4,593.65	367,171,739	2025.06
변경	아파트					90,527.45	25.59	396.43	4,595.48	421,563,322	

4. 사업시행기간

가. 기정 : 2020.12.~2024.06.

나. 변경 : 2020.12.~2025.06.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변경사항 없음)

6. 관계도서 : 생략[동작구청 주택과(☎02-820-1381)에 비치함]

2021 - 157

()

가

1. 동작구 고시 제2017-77호(2017.9.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1-81호(2021.4.2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상도동 159 - 2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상도근린공원(일부) 및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 - 820 - 1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상도근린공원(일부) · 소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상도근린공원(일부) - 동작구 상도동 산 65-116번지 일대
소공원 - 동작구 상도동 204-192번지 일대 (변경없음)
- 면 적 : 상도근린공원(일부) - 4,746㎡
소공원 - 1,390㎡ (변경없음)

- 내 용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기반시설(공원) 조성 (설계도서 변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 행 자 :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외1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 4(상도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08. 31.까지 (변경없음)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준공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60

(:)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상도동 일원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현황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변경 및 착오기재에 따른 기준점을 정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		162	상도4동 215-13	상도4동 210-18			서울시 354 (1990.10.31)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706㎡ → 855㎡) 착오기재에 따른 기준점 정정
변경	소로	3		6		162	상도4동 188-42	상도4동 187-2				
기정	소로	3		6		594	사당2동 73-6	동작동 56-31			서울시 54 (1973.04.30)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3,849㎡ → 3,813㎡)
변경	소로	3		6		594	사당2동 73-6	동작동 56-31				
기정	소로	3		4		48	본동 10-30	본동 10-41			서울시 100 (1972.07.19)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237㎡ → 236㎡)
변경	소로	3		4		48	본동 10-30	본동 10-41				
기정	소로	3		4		110	상도4동 201-135	상도4동 240-45			서울시 354 (1990.10.31)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407㎡ → 449㎡)
변경	소로	3		4		110	상도4동 201-135	상도4동 240-45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	소로3	· 선형 일부 변경	· 한국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 성과 반영 · 착오기재에 따른 기종점 정정

3. 관계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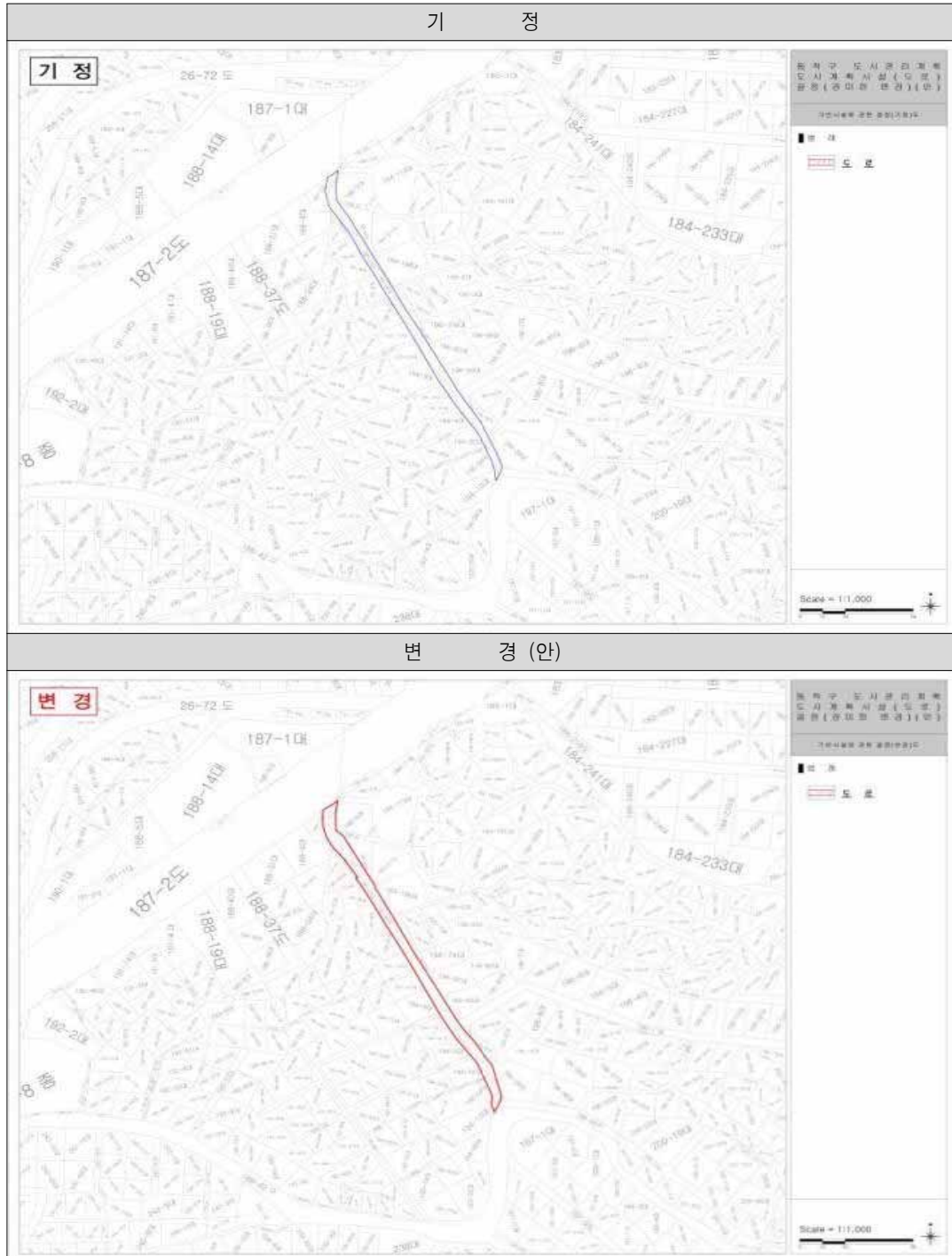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630), 도로관리과(☎820-990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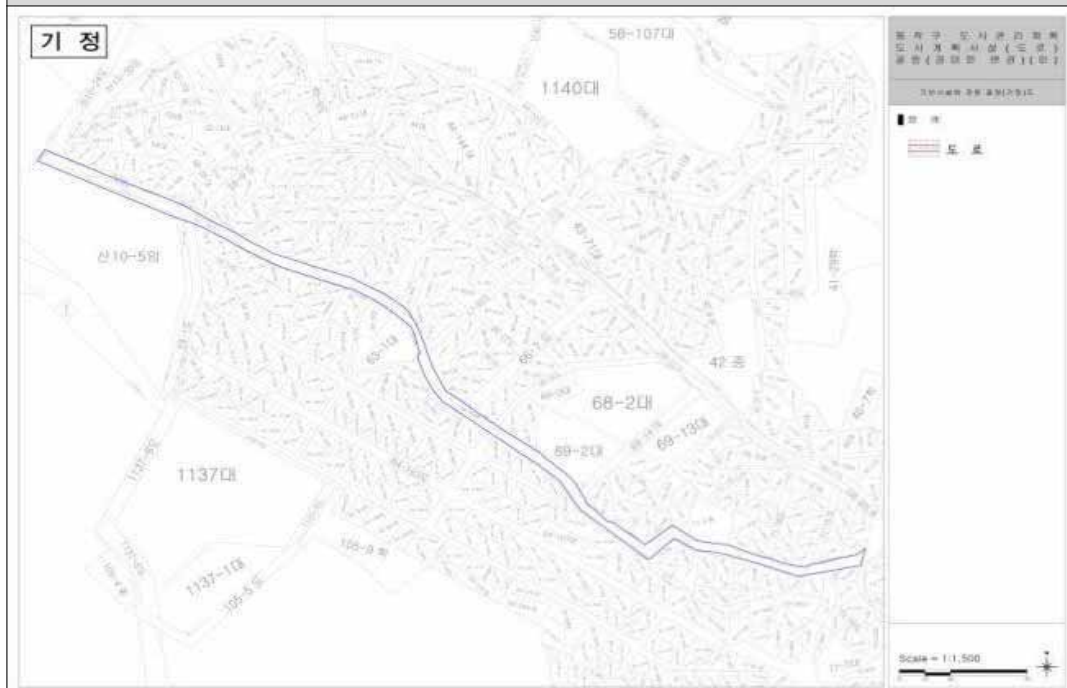
[]

1. 상도4동 188-42 ~ 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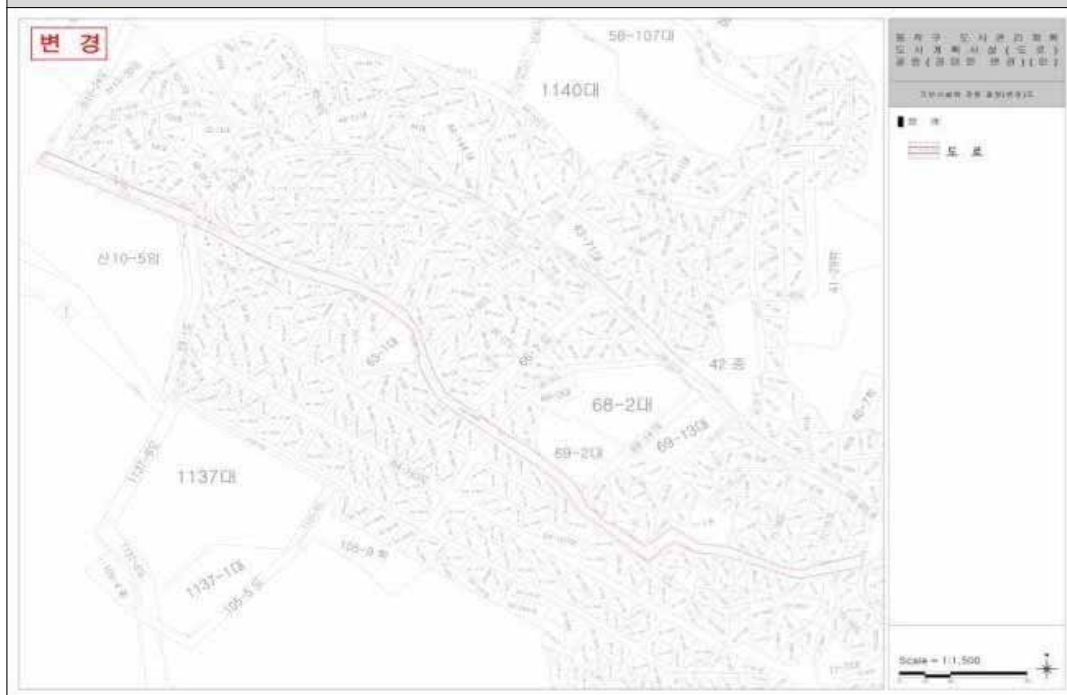


2. 사당2동 73-6 ~ 동작동 5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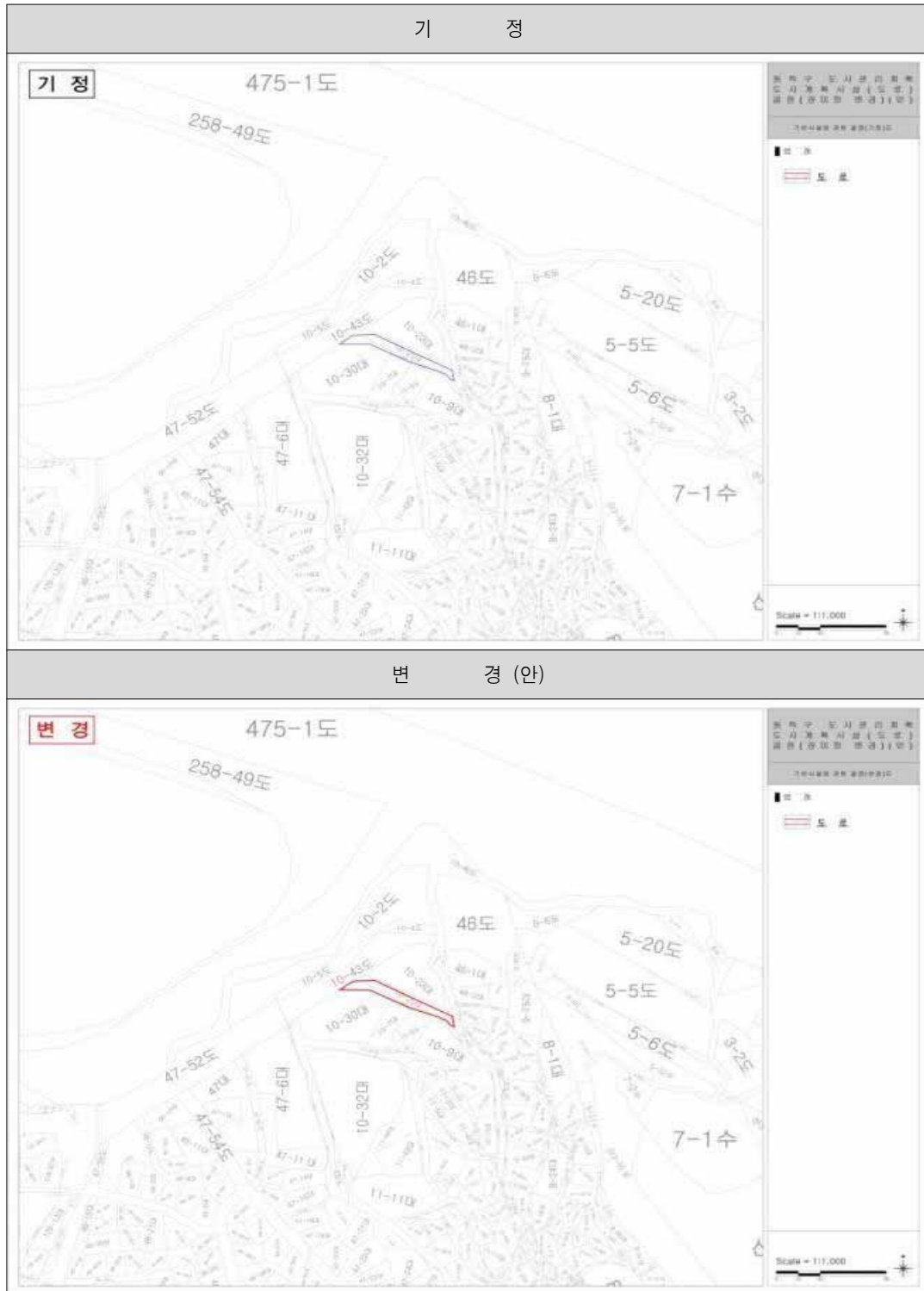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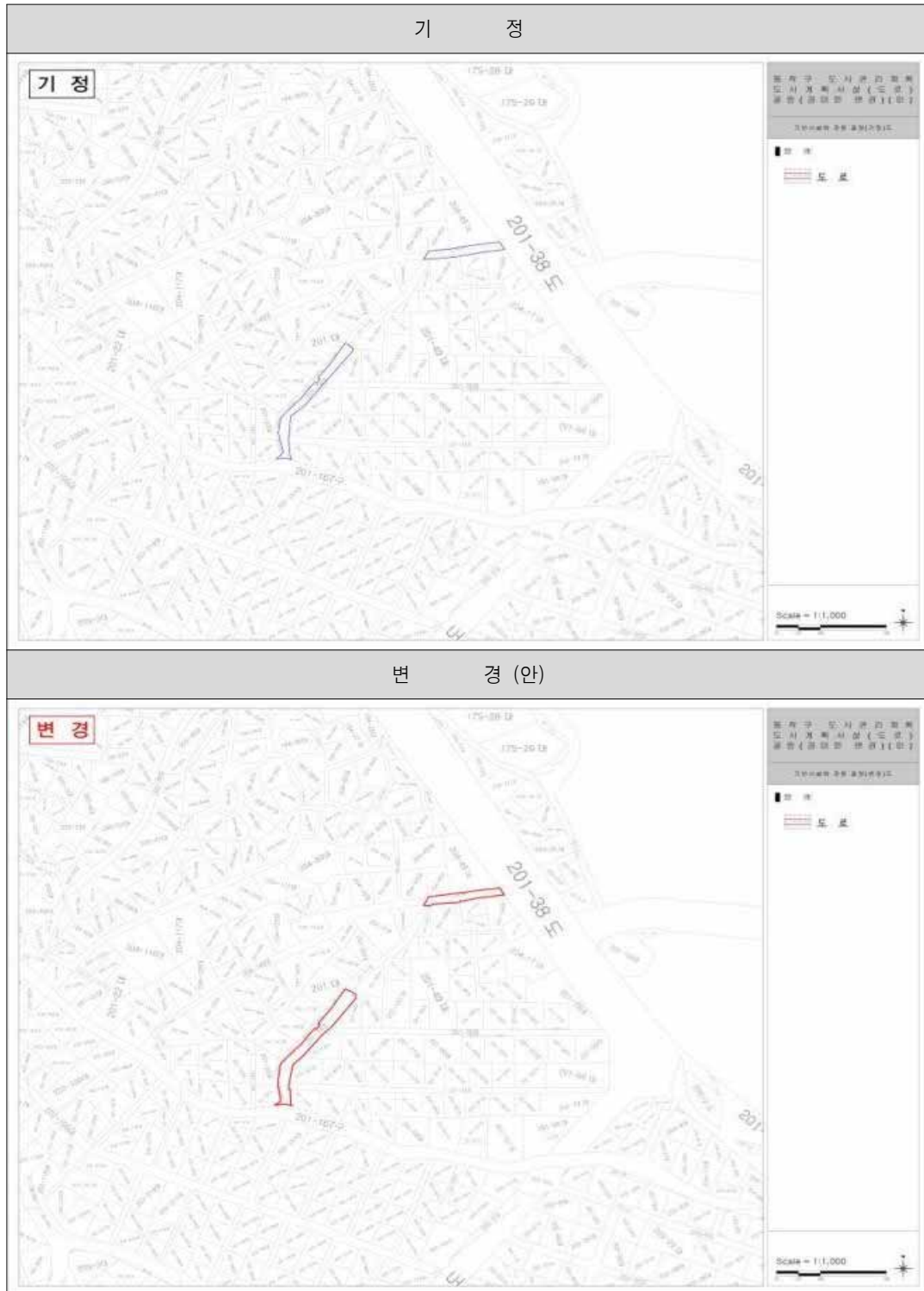
변 경 (안)



3. 본동 10-30 ~ 본동 10-41



4. 상도4동 201-135 ~ 상도4동 240-45



2021 - 136

(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방이동 38-5번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주민 제안(도로확폭,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축소 등)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395.7)	-	858,791 (395.7)	서고제397호 ('84.7.4)	

※ ()는 사업부지 면적임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66	6~9 (7)	국지 도로	250	방이동 38-3	방이동 43-8	일반 도로	-	건고제244호 ('71.5.5)	
변경	소로	3	66	6~9 (8)	국지 도로	250 (23.3)	방이동 38-3	방이동 43-8	일반 도로	-	건고제244호 ('71.5.5)	
기정	소로	3	82	2 (2)	국지 도로	35	방이동 38	방이동 38-5	일반 도로	-	건고제244호 ('71.5.5)	
변경	소로	3	82	2~3 (3)	국지 도로	34 (16.5)	방이동 38	방이동 38-5	일반 도로	-	건고제244호 ('71.5.5)	

※ 폭원, 연장의 ()는 사업부지 내 사항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66	소로3-66	●폭원 : 6 ~ 9m (사업부지 : 7→8m)	●방이동 38-5번지 신축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1m 도로 확폭
소로3-82	소로3-82	●연장 : 34m ●폭원 : 2 ~ 3m (사업부지 : 2→3m)	●방이동 38-5번지 신축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1m 도로 확폭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7-9	방이동 38-5	395.7	349.2	단독개발	도로 기부채납 (감 46.5㎡)

※ 도로 1m(46.5㎡) 기부채납 제외, 향후 지적측량에 따라 일부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7m도로변: 2m - 2m도로변: 3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7m도로변: 1m - 2m도로변: 2m	결정도 참조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7m도로변(차도형): 2m - 2m도로변(차도형): 3m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7m도로변(차도형): 1m - 2m도로변(차도형): 2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사업부지 7m도로변 및 2m도로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폭원 1m 축소	●지구단위계획 기준(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에 의한 연접도로(7m도로변 및 2m도로변) 1m 확폭 및 이에 따른 건축선·전면공지 폭원 축소 (선형변경 없음)

③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 권장사항

- 부설주차장은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현재 주차대수 이상 유지할 것
- 지하층의 DA 계획이 지상층에 반영되도록 수정할 것
- 아래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
 - 1층 화장실의 공용공간에서의 출입 계획에 대하여 검토
 - 2, 3층 근생 계단실 우측의 다운스텝 시작을 통행안전을 위해 바깥쪽 계단 한 면에 통일 배치하는 방안 검토
 - 2, 3층 근생 복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복도 길이를 계단실 우측 끝까지 일치시켜 근생 출입문을 복도 끝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
 - 피난계단이 협소하여 피난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계단실의 크기와 계단의 단높이, 너비의 적정 계획 검토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2021 - 789

() () 가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25호(2019.04.18.)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54호(2020.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93호(2020.06.29.)」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23호(2021.02.25.)」로 최종 인가고시한 내용 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공원 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33-12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면적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조성
- 4) 사업면적: 5필지 2,687㎡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라.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바.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아. 공고방법: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종로구청 공원녹지과(☎02-2148-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계		2,976	2,687							
1	-	홍지동 33-12	대	659	659	황명환	단독	종로구 홍지문1길 26	김명산	종로구 홍지문1길 26	상속	홍지동 33-4 에서 분할
									황성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23길 13-10(청량리동)	상속	
									황준호	종로구 홍지문1길 26	상속	
									황정희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3길 43, 101동 503호(신월동, 수명산 동원대자뷰아파트)	상속	
									황재호	종로구 홍지문1길 26	상속	
									황경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8-26, 다동 103호(계산동, 신한아파트)	상속	
									황건배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27, 104동 309호(성내동, 성내동삼성아파트)	상속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황순배	Soon Bae Hwang, 210 W. 7th St. #804 Los Angeles, CA	상속		
									황은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55, A동 103호(서초동, 두성빌라)	상속		
2		홍지동 35-9	대	6	6	김정희	122.3/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에이동 101호					홍지동3 5-3 에서 분할
						이상을	122.3/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에이동 203호					
						박경호	122.3/1,22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20, 103동 715호(킴스빌리지)					
						조현이	122.3/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비동 101호					
						곽남신	122.3/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에이동 201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대출실행센터)	근저당권		
						김도걸	122.3/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비동 202호	세검정 새마을금고	서울시 종로구 평창11길 6 (평창동)	근저당권		
						박세연	122.3/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에이동 102호					
						김영희	122.3/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비동 201호	서서울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42-2(세검정지점)	근저당권		
						최환석	61.15/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비동 102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만리동지점)	근저당권		
						유옥선	61.15/1,223	종로구 홍지문1길 17, 비동 102호					
						임영순	122.3/1,223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0, 205동 2004호(동천동, 동천마을현대2차홈타운)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	홍지동 36-15	대	1,485	1,485	한상만	단독	종로구 자하문로 260-9, 1동 304호				
4	-	홍지동 36-19	대	337	109	장사익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고원선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84 (논현사거리지점)	근저당권	
5	-	홍지동 36-21	대	489	428	박기옥	단독	종로구 세검정로 209-17	남방희	종로구 홍지동 36-21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효자동지점)	근저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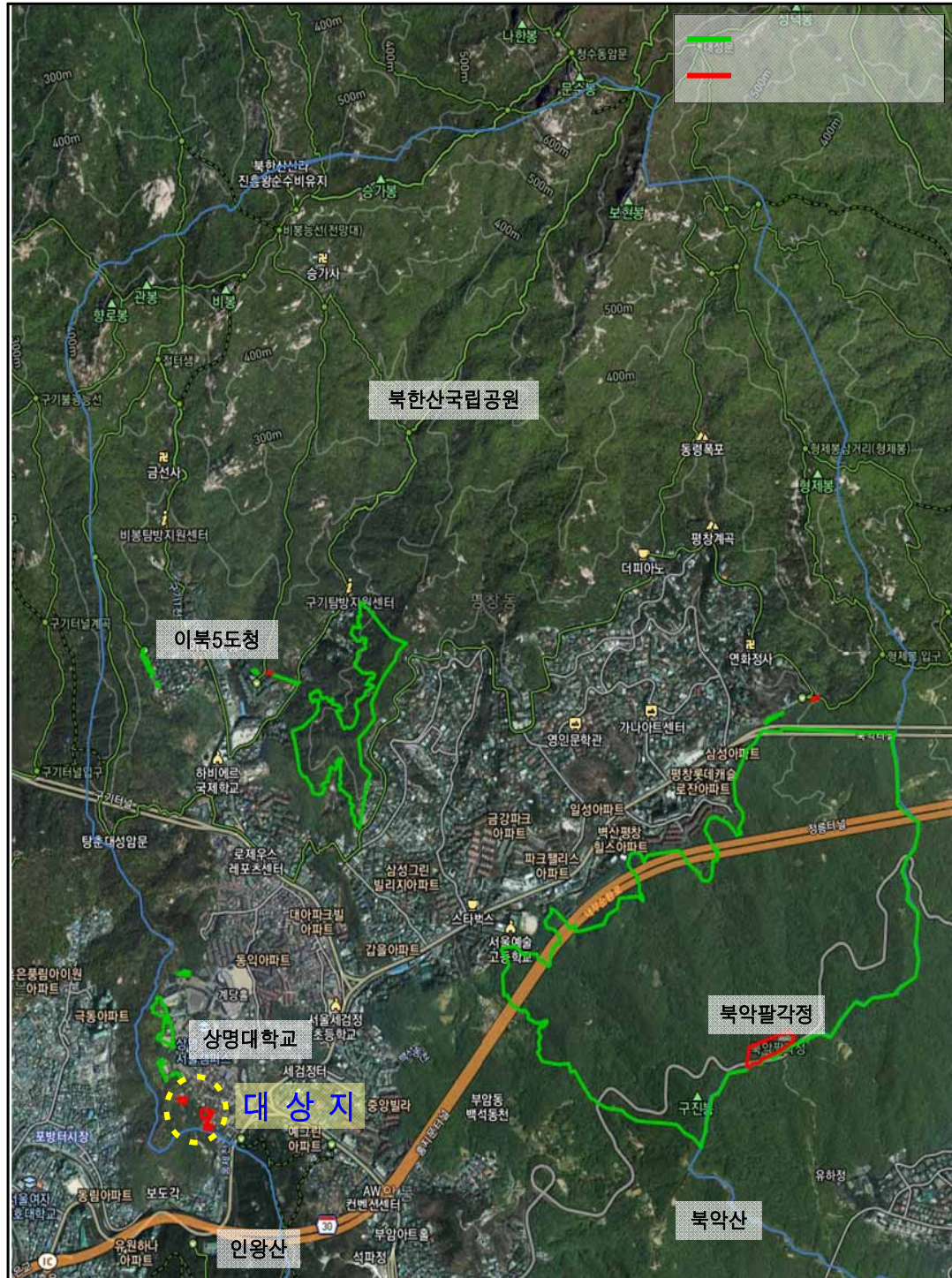
-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	홍지동 33-12	무허가	벽돌조	110	110	황명환	단독	종로구 홍지문1길 26	김명산	종로구 홍지문1길 26	상속	홍지동 33-4 에서 분할			
				판넬	16	16				황성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23길 13-10(청량리동)	상속				
				판넬	2	2				황준호	종로구 홍지문1길 26	상속				
			화단	2*2.5	1식	황정희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3길 43, 101동 503호(신월동, 수명산 동원대자뷰아파트)	상속					
			장독대	5*3	1식							황재호		종로구 홍지문1길 26	상속	
			수목	감나무	H7.0*R35											1주
				감나무	H5.0*R30	2주				황건배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27, 104동 309호(성내동, 성내동삼성아파트)					상속
				감나무	H2.0*R8	1주										
				앵두나무	H1.0*R5	1주										
				오가피	H1.5*R8	1주										
				대추나무	H2.0*R7	1주										
				대추나무	H3.0*R20	1주										
				살구나무	H6.0*R35	1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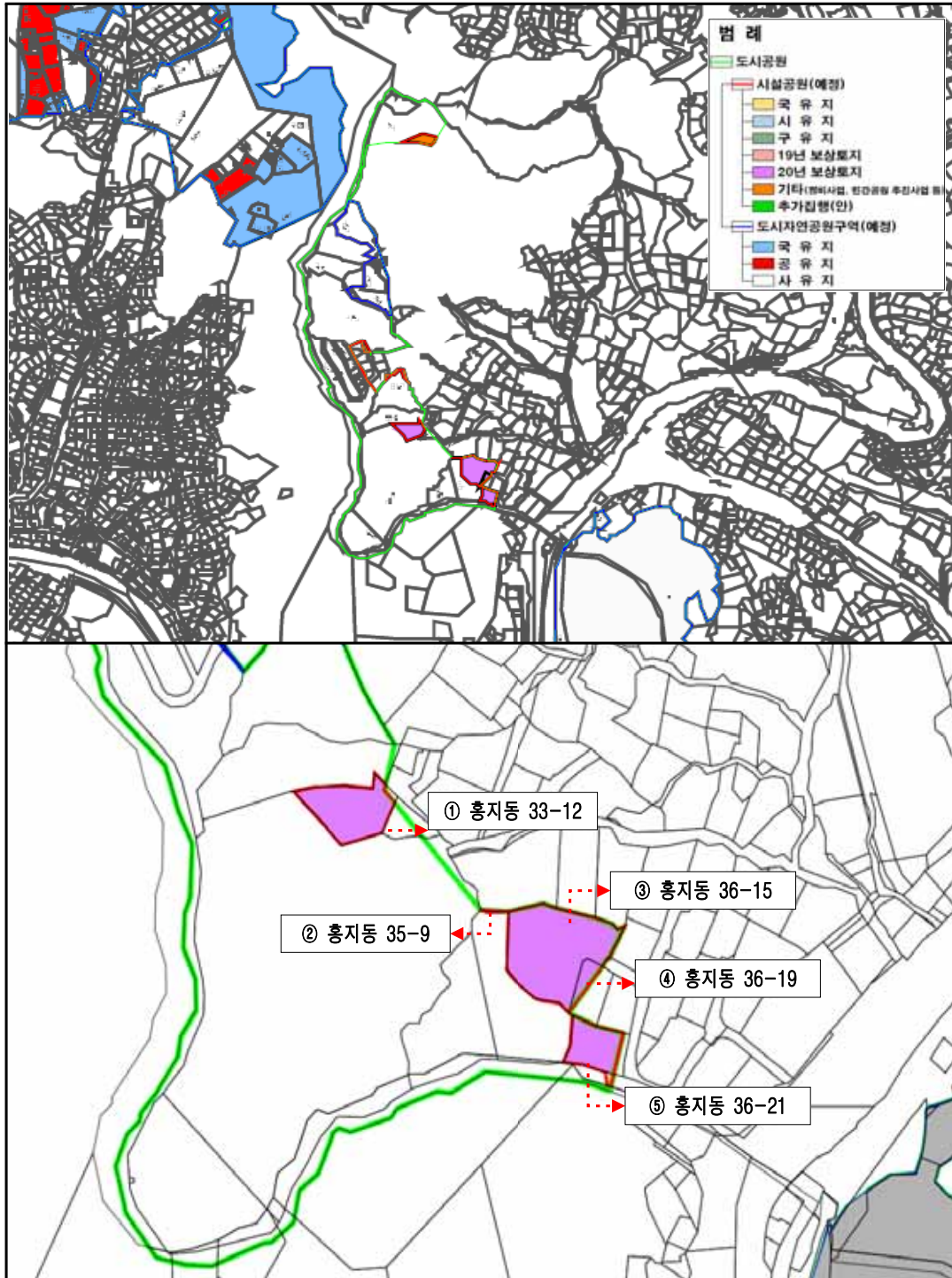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살구나무	H2.0*R10	1주				황순배	Soon Bae Hwang, 210 W. 7th #804 St. Los Angeles, CA	상속	
					뽕나무	H5.0*R8	1주							
					옻나무	H2.0*R4	2주							
					자두나무	H3.0*R15	1주							
					황매화	H1.0*W0.6	12㎡							
					목단	H1.5*W1.0	1주				황은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55, A동 103호(서초동, 두성빌라)	상속	
					명자나무	H1.5*W0.6	1주							
					수수꽃다리	H1.0*R30	1주							
					수수꽃다리	H1.5*R19	1주							
					수수꽃다리	H1.0*W0.6	3㎡							
					주목	H0.6*W0.6	1주							
					사철나무	H1.0*R5	3주							
					사철나무	H1.0*R14	2주							
					사철나무	H1.0*W0.6	5㎡							
					개나리	H1.0*W0.6	3㎡							
2	-	홍지동 36-15	일반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65.36	65.36	한갑수	단독	종로구 세검정로 209-21				
					1층	106.2	106.2							
					2층	131.04	131.04							
					3층	123.98	123.98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변경	홍지동 36-19	일반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구조	98.1	41.79	장사익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고완선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주식회사 국민은행	종구 남대문로 84 (노현사거리지점)	근저당권	
4	-	홍지동 36-21	무허가	-	37	16	박기옥	단독	종로구 세검정로 209-17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021 - 790

() () 가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67호(2013.01.03.)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54호(2020.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92호(2020.06.29.)」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22호(2021.02.25.)」로 최종 인가고시한 내용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676 외 7필지

나.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면적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조성
- 4) 사업면적: (당초) 8필지 1,421.0㎡
(변경) 8필지 1,421.2㎡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라.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바.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아. 공고방법: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종로구청 공원녹지과(☎02-2148-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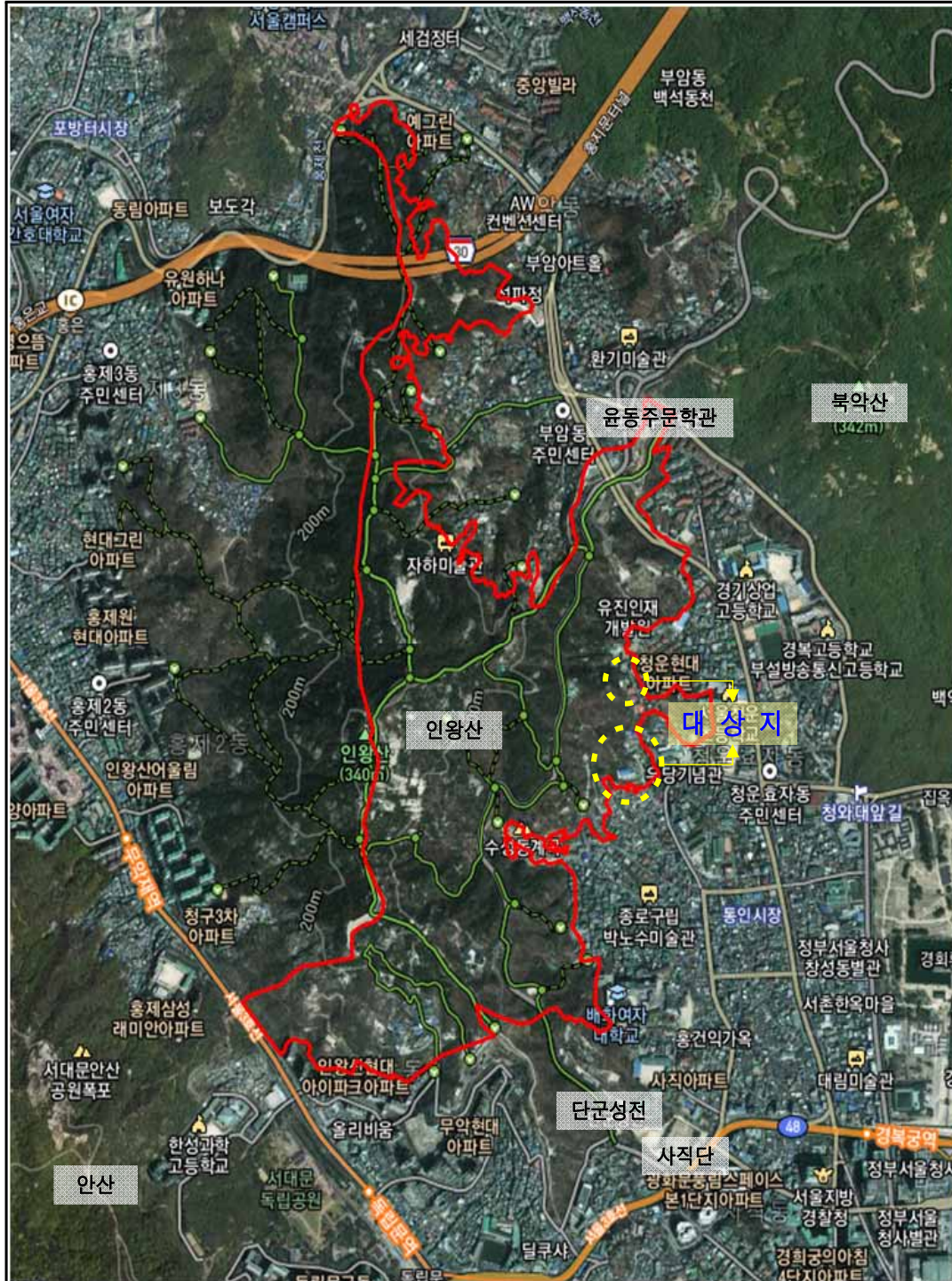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계		1,668.3	1,421.0							
	변경	계		1,421.6	1,421.2							
1	-	옥인동 47-676	대	134.4	134	강애경	단독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45번길 32	청운효자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필운대로 116	근저당권	
									청운효자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필운대로 116	지 상 권	
2	기정	옥인동 47-383	대	247.9	1.3	이호종	단독	종로구 옥인5길 40				지번 분할
	변경	옥인동 47-682	대	1.2	1.2	이호종	단독	종로구 옥인5길 40				
3	-	청운동 56-39	대	245.6	245.6	김형수	544.47/847.3	종로구 자하문로33길 78				
4	-	청운동 56-92	대	168.6	168.6				김병진	302.83/847.3	강남구 연주로 332, 101동 303호	
5	-	청운동 56-93	대	433.1	433.1							
6	-	신교동 2-78	대	247.9	247.9	김영자	단독	종로구 필운대로11길 35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120	근저당권	
7	-	신교동 2-86	대	94.9	94.9	김명애	단독	종로구 옥인5길 59-5	청운효자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필운대로 116	근저당권	
8	-	신교동 2-99	대	95.9	95.9	김윤미	단독	종로구 옥인5길 59-7	서서울 농업협동조합	은평구 응암동 397-95 (신사지점)	근저당권	
									서서울 농업협동조합	은평구 응암동 397-95 (신사지점)	근저당권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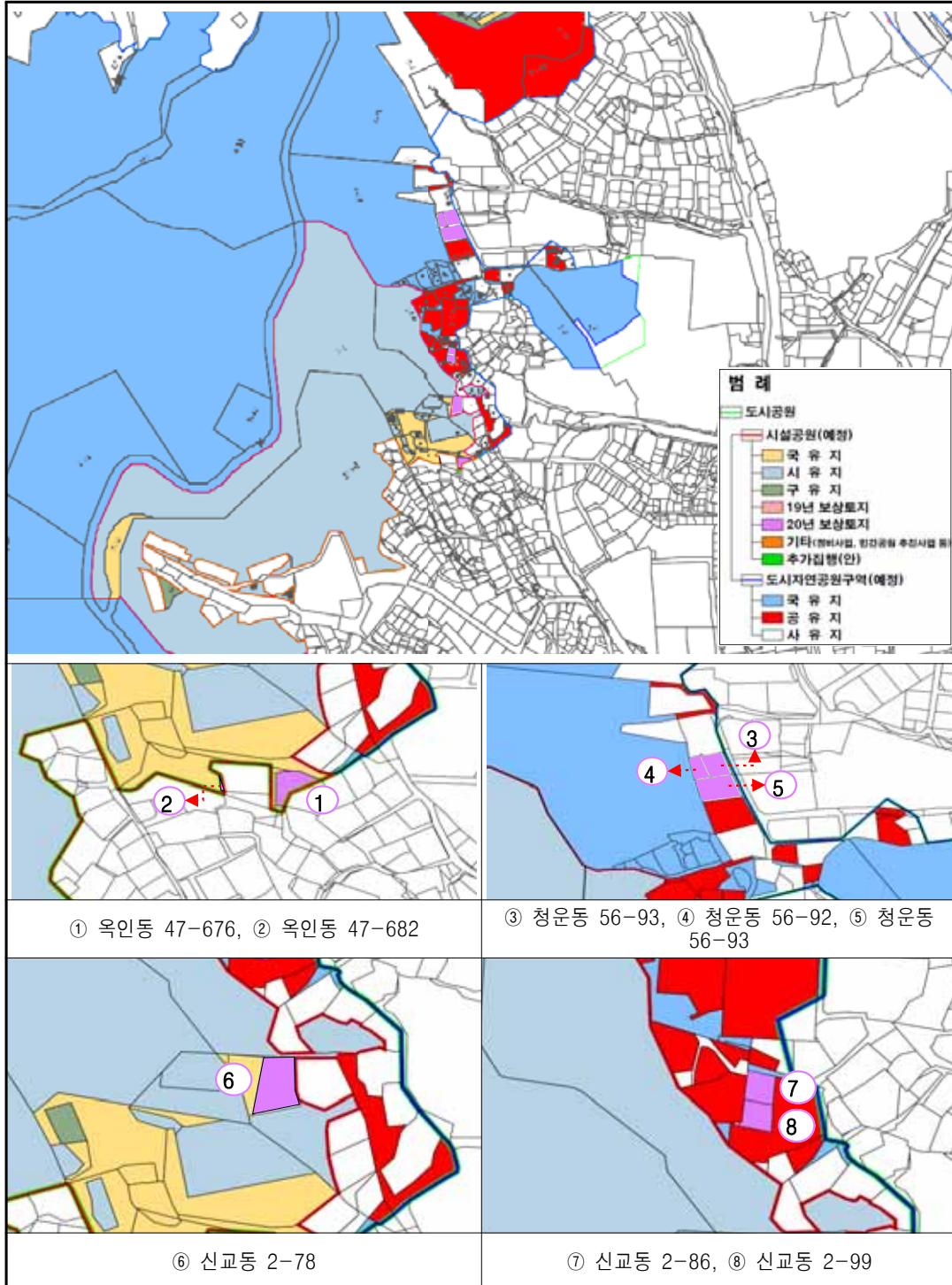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옥인동 47-676	무허가 건축물	목조		65.5	4.8	강애경	단독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45번길 32				
2	청운동 56-39	일반 건축물	연와조	1층	145.45	145.45	김병진	1층 (145.45/406.97)	강남구 연주로 332, 101동 303호				
3	청운동 56-92			2층	191.27	191.27	김형수	2, 3층 (261.52/406.97)	종로구 자하문로33길 78				
4	청운동 56-93			3층	70.25	70.25							
5	신교동 2-78	일반 건축물	연와조	지하	31.83	31.83	김영자	단독	종로구 필운대로11길 35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120	근저당권	
				1층	87.37	87.37							
6	신교동 2-86	일반 건축물	연와조		61.75	61.75	김명애	단독	종로구 옥인5길 59-5	청운효자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필운대로 116	근저당권	
7	신교동 2-99	일반 건축물	연와조		66.65	66.65	김윤미	단독	종로구 옥인5길 59-7	서서울 농업협동조합	은평구 응암동 397-95 (신사지점)	근저당권	
										서서울 농업협동조합	은평구 응암동 397-95 (신사지점)	근저당권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021 - 990

6,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47(2010.12.09)호 및 제2009-84(2009.03.0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성동구 행당동 130-125일대 행당제6,7구역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30-125번지 일대
○ 행당제6,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2. 공원면적
○ 기 정 : 14,488.90㎡
○ 변 경 : 14,430.30㎡
3. 조성계획 변경(안)
○ 시설면적 : 5,390.93㎡
○ 주요시설 : 광장, 화계, 조형열주, 파고라, 관리화장실, 녹지 등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4)
7.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총괄표(위치: 성동구 고산자로 8라길(행당동 130-125번지)일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14,488.90	5,473.40	1	102.00	102.00	176	14,430.30	5,424.17	1	102.0	102.0	228	감 58.60㎡
기 반 사 설	소 계	3,473.70	3,473.70					4,000.44	4,000.44					증 526.74㎡
	도 로	2,493.40	2,493.40					3,356.03	3,356.03					증 862.63㎡
	광 장	980.3	980.3					644.41	644.41					감 335.89㎡
조경시설		378.20	378.20				55	199.06	199.06				14	감 179.14㎡
휴양시설		855.90	855.90				58	603.67	603.67				74	감 252.23㎡
유흥시설		497.20	497.20				5	232.67	232.67				7	감 264.53㎡
운동시설		164.60	164.60				13	280.93	280.93				8	증 116.33㎡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103.80	103.80	1	103.80	103.80	1	107.40	107.40	1			3	증 3.60㎡
관리시설		-	-				44	-	-				122	
녹지 및 기타		9,015.50	9,015.50					9,006.13	9,006.13					감 9.37㎡

시 설 률	$(5,473.4 / 14,488.9) \times 100 = 37.8\%$	$(5,424.17 / 14,430.30) \times 100 = 37.59\%$	법정 40% 이하
건 폐 율	$(102.00 / 14,488.9) \times 100 = 0.70\%$	$(102.00 / 14,430.30) \times 100 = 0.71\%$	법정 15% 이내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합 계			14,488.90	5,473.40	R/C	1	102.0	102.0	176			14,430.30	5,424.17	R/C	1	102.00	102.00	228	감 58.6㎡
기반 시설	소 계		행당동130-125	3,473.70	3,473.70							행당동130-125	4,000.44	4,000.44						증 526.74㎡
	도로			2,493.40	2,493.40								3,356.03	3,356.03						증 862.63㎡
	광 장	가-1	"	58.70	58.70						가-1		285.38	285.38						
	광 장	가-2	"	213.40	213.40						가-2		237.25	237.25						
	광 장	가-3	"	48.90	48.90						가-3		121.78	121.78						
	광 장	가-4	"	659.30	659.30															
조경 시설	소 계			378.20	378.20					55			199.06	199.06					14	감 179.14㎡
	회계A	①	행당동130-125	180.90	180.90					17										
	회계B	②	"	57.30	57.30					8										
	장식벽A	③	"	7.20	7.20					3										
	장식벽B	④	"	7.60	7.60					3										
	장식가벽	⑤	"	20.20	20.20					2										
	수목보호대	⑥	"	11.70	11.70					4										
	플랜터	⑦	"	5.20	5.20					1	①		101.82	101.82					12	
	수목보호흙덮개	⑧	"							5										
	목재게이트	⑨	"							5										
	열주	⑩	"	1.50	1.50					6										
	수경(벽천폰드)	⑪	"	86.60	86.60					1	②		41.70	41.70					1	
휴양 시설	바닥분수			-	-					-	③		55.54	55.54					1	
	소 계			855.90	855.90					58			575.24	575.24					74	감 280.66㎡
	휴게소-1	나-1	행당동130-125	40.60	40.60															
	휴게소-2	나-2	"	37.20	37.20															
	휴게소-3	나-3	"	25.20	25.20															
	휴게소-4	나-4	"	36.40	36.40															
	휴게소-5	나-5	"	39.60	39.60															
	휴게소-6	나-6	"	47.20	47.20															

구 분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휴양시 설	휴게소-7	나-7	행당동130-125	30.50	30.50															
	휴게소-8	나-8	"	100.90	100.90															
	휴게소-9	나-9	"	39.40	39.40															
	휴게소-10	나-10	"	237.50	237.50															
	휴게소-11	나-11	"	29.30	29.30															
	파고라	㉔	"	148.10	148.10					9	④		112.80	112.80					6	
	앉음벽	㉕	"	33.30	33.30					9	⑤		69.47	69.47					19	
	평의자	㉖	"							27	⑥								21	
	등의자	㉗	"	10.70	10.70					13	⑦								28	
	데크쉼터-1										나-1		27.10	27.10						
	데크쉼터-2										나-2		123.58	123.58						
	데크쉼터-5										나-3		32.00	32.00						
	휴게쉼터-1										나-4		84.42	84.42						
	휴게쉼터-2										나-5		109.20	109.20						
휴게쉼터-3										나-6		45.10	45.10							
유흥시 설	소 계			497.20	497.20					5			232.67	232.67					7	감 264.53㎡
	유흥공간-1	다-1	행당동130-125	109.00	109.00						다-1		232.67	232.67						
	유흥공간-2	다-2	"	144.80	144.80															
	유흥공간-3	다-3	"	70.20	70.20															
	유흥공간-4	다-4	"	64.00	64.00															
	유흥공간-5	다-5	"	109.20	109.20															
	미끄럼대	㉘	"							1										
	그네	㉙	"							1	⑨								1	
	회전무대	㉚	"							1										
	흔들놀이대	㉛	"							2	⑩								3	
	조합놀이대										⑧								1	
	시소										⑪								2	

구 분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운동 시설	소 계			164.60	164.60					13			280.93	280.93					8	증 116.33㎡
	운동공간-1	라-1	행당동130-125	15.40	15.40					1	라-1		34.49	34.49						
	배드민턴장	㉔	"	149.20	149.20								147.46	147.46						
	운동공간-2												147.46	147.46						
	운동공간-3										라-3		98.98	98.98						
	야외체육시설	㉕	"							12	㉖								6	
	지붕형 운동시설A										㉗								1	
지붕형 운동시설B										㉘								1		
편의 시설	소 계			103.80	103.80					1			107.40	107.40					3	증 3.60㎡
	관리사무소(화장실)	㉙	행당동130-125	102.00	102.00	R/C	1	102.00	102.00		마-1		102.00	102.00	R/C	1	102.00	102.00		
	음수전	㉚	"	1.80	1.80					1	㉛		5.40	5.40					3	
관리 시설	소 계			-	-					44									122	
	안내판	㉜	행당동130-125							2	㉝								4	
	계단	㉞	"							8	㉟								13	
	CCTV			-	-					-	㊱								7	
	공원등	㊲	"							24	㊳								40	
	볼라드등	㊴	"							10	㊵								58	
녹지 및 기타				9,015.50	9,015.50								9,006.13	9,006.13						감 9.37㎡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 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812.7	2,493.40				
변경					1,000.0	3,356.03				
당초	소로	소계			753.6	2,428.5				
		3	1	5.7~4.7	140.7	612.7	진입로	휴게소-10	광장-1	
		3	2	6.0~2.4	148.9	474.7	진입로	남측진입로	소로-1	
		3	3	3.0	84.9	260.8	연결로	소로-1	소로-1	
		3	4	3.0	27.4	85.9	연결로	소로-1	소로-12	
		3	5	3.0~2.7	44.6	121.8	연결로	소로-9	소로-12	
		3	6	3.0~2.7	45.5	127.3	진입로	휴게소-10	소로-9	
		3	7	2.5	53.9	137.3	진입로	북측진입로	소로-9	
		3	8	3.0	30.3	100.7	연결로	소로-9	광장-2	
		3	9	3.0~2.5	35.3	101.8	연결로	소로-6,7	소로-1	
		3	10	2.0	13.1	26.1	연결로	운동공간-1	소로-1	
		3	11	2.5	19.8	50.2	연결로	소로-2	소로-3	
		3	12	4.0~3.0	44.7	165.9	연결로	광장-2	소로-1	
		3	13	2.5	64.5	162.8	연결로	광장-1	소로-1	
	산책로	소계			59.1	64.9				
		-	1	1.2	18.1	18.1	산책로	소로-12	소로-8	
		-	2	1.2	10.8	10.8	산책로	산책로-3	-	
		-	3	1.2	18.2	21.7	산책로	소로-5	소로-8	
		-	4	1.2	12.0	14.3	산책로	소로-5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 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소로	소계			1,000	3,356.03				
		3	1	2.5	120.5	374.94	주진입로	부출입구	소3-11	
		3	2	3.0	28.0	84.00	연결로	부출입구	소3-1	
		3	3	3.5	10.0	90.00	연결로	부출입구	광장-3	
		3	4	2.5	6.0	15.00	연결로	휴게쉼터-3	소3-1	
		3	5	2.5	33.0	92.50	연결로	소3-7	소3-4	
		3	6	2.5	11.0	27.50	연결로	소3-11	운동공간-3	
		3	7	3.0	81.0	343.00	연결로	소3-11	소3-11	
		3	8	3.0	8.0	24.00	연결로	소3-11	소3-7	
		3	9	2.0	22.0	44.00	연결로	소3-11	소3-11	
		3	10	2.0	47.0	304.00	연결로	부출입구	소3-11	
		3	11	4.0	139.5	513.59	주진입로	부출입구	광장-2	
		3	12	2.0	20.0	40.00	연결로	소3-11	소3-11	
		3	13	3.0	4.0	12.00	연결로	부출입구	소3-12	
		3	14	3.0	148.0	544.00	주진입로	소3-11	부출입구	
		3	15	2.5	13.0	32.50	연결로	소3-11	소3-14	
		3	16	2.5	18.0	45.00	연결로	소3-17	소3-11	
		3	17	3.0	72.0	316.00	연결로	소3-14	광장-2	
		3	18	3.0	16.0	48.00	연결로	소3-17	소3-14	
		3	19	2.0	23.0	46.00	연결로	소3-17	소3-14	
		3	20	2.0	111.0	222.00	연결로	소3-14	부출입구	
		3	21	2.0	10.0	20.00	연결로	소3-14	소3-20	
		3	22	2.0	56.0	112.00	연결로	부출입구	향토유적부지	
		3	23	2.0	3.0	6.00	연결로	부출입구	소3-6	

2021 - 995

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84(2009.3.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성동구 행당동 128-1번지 일대 행당제7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1번지 일대
2. 공원면적 :
 - 기 정 : 3,188.0m²
 - 변 경 : 3,208.0m²
3. 조성계획(안)
 - 시설면적 : 1,749.97m²
 - 주요시설 : 조합놀이대, 시소, 파고라, 앉음벽 등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4)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1. 총괄표(위치: 성동구 행당동 128-1일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3,188.00	1,864.74				30	3,208.00	1,749.97				56	증 20.0㎡
기 반 시 설	소 계	778.64	778.64					779.26	779.26					증 0.62㎡
	도 로	532.14	532.14					595.25	595.25					증 63.11㎡
	광 장	246.50	246.50					142.23	142.23					감 104.27㎡
조경시설		196.62	196.62				6	26.37	26.37				4	감 170.25㎡
휴양시설		147.80	147.80				14	93.19	93.19				23	감 54.61㎡
유흥시설		735.23	735.23				7	744.39	744.39				9	증 9.16㎡
운동시설		-	-					98.36	98.36				1	증 98.36㎡
교양시설		-	-					-	-					-
편익시설		6.45	6.45				1	8.40	8.40				1	증 1.95㎡
관리시설		-	-				2	-	-				18	
8. 녹지 및 기타		1,323.26						1,458.03						증 134.77㎡

시 설 률	$(1,864.74 \div 3,188.00) \times 100\% = 58.49\%$		$(1,749.97 \div 3,208.00) \times 100\% = 54.55\%$		법정 60% 이하
건 폐 율	-		-		법정 5% 이내

2.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합 계				3,188.0						30			3,208.00							증 20.0㎡
기 본 시 설	소 계			778.64								행당동128-1	779.26							증 0.62㎡
	도 로		행당동128-1	532.14									595.25							
	광 장	가-1		144.64							가-1		142.23							
	광 장	가-2	행당동128-1	101.86							가-2		41.78							
조 경 시 설	소 계			196.62						6			26.37						4	감 170.25㎡
	화계	①	행당동128-1	74.67						2	①	행당동128-1	19.52						3	
	가벽	②	"	6.66						2			-					-		
	플랜터A	③	"	49.57						1	②		6.85					1		
	플랜터B	④	"	65.72						1			-					-		
휴 양 시 설	소 계			147.80						14			93.19						23	감 54.61㎡
	데크쉼터	나-1	행당동128-1	118.55							나-1	행당동128-1	34.30							
	휴게소	나-2	"	24.32																
	휴게쉼터			-						-	나-2		26.17							
	파고라	⑤	"							2	③							2		
	평의자	⑥	"							6	④							6		
	등의자			-						-	⑤							6		
	조형파고라	⑦	"							1			-					-		
	야외테이블	⑧	"							2			-					-		
	앉음벽	⑨	"	4.93						3	⑥		32.72					9		

구분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유희 시설	소 계			735.23						7			744.39						9	증 9.16㎡
	유희공간	라-1	행당동128-1	735.23							다-1	행당동128-1	744.39							
	미끄럼대	⑩	"							1		-	-						-	
	그물놀이대	⑪	"							1		-	-						-	
	그네	⑫	"							1	⑨								1	
	흔들놀이대	⑬	"							3	⑩								3	
	모래놀이장	⑭	"							1		-	-						-	
	경사놀이대			-						-	⑦								1	
	조합놀이대			-						-	⑧								1	
	트램폴린			-						-	⑪								2	
4인시소			-						-	⑫								1		
운동 시설	소 계			-									98.36						1	증 98.36㎡
	운동공간		행당동128-1	-							라-1	행당동128-1	98.36							
	지붕형운동시설			-						-	⑬								1개소	
편의시 설	소계			6.45						1			8.40						1	증 1.95㎡
	음수대	⑮	행당동128-1	6.45						1	⑭	행당동128-1	8.40						1개소	
관리시 설	소 계			-						2									18	
	공원안내판	⑯	행당동128-1	-						2	⑮	행당동128-1							2개소	
	CCTV			-						-	⑯								3개소	
	수목보호대			-						-	⑰								13개소	
녹지			1,323.26									1,458.03							증134.77㎡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79.4	532.14				증 63.11㎡
변경					186.2	595.25				
당초	소로	소 계			179.4	532.14				
변경					186.2	595.25				
당초		3	1	3.0	123.5	378.54	진입로	부출입구	부출입구	
변경		3	1	3.0	160.0	501.95	주진입로	부출입구	부출입구	
당초		3	2	2.5	51.4	140.02	연결로	소로-1	광장-1	
변경		-	-	-	-	-				폐지
당초		3	3	3.0	4.5	13.58	연결로	광장-2	소로-1	
변경		3	2	3.0	4.5	16.5	연결로	광장-2	소로-1	
신설		3	3	3.5	5.4	21.9	연결로	광장-2	소로-1	
신설		3	4	4.0	6.0	21.0	연결로	소로-1	광장-1	
신설		3	5	3.0	10.3	33.9	연결로	부출입구	소로-1	

2021 - 1034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48-3호 외 1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501.6	-	3,501.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증) 3,501.6	3,501.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501.6	감) 3,501.6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초안산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도봉구 창동 산48-3호 일원	897,270.8	감) 3,404.0	893,866.8	1971.8.7. (건고465)	
변경	-	쌍문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도봉구 방학동 산47-1 일원	260,649.9	증) 4,068.5	264,718.4	1977.7.9. (건고138)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문화 시설	문화예술 회관	도봉구 창동 산48-3호 일원	-	증) 3,501.6	3,501.6	-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관련도서 및 도면 비치)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091-3592), 문화관광과(☎2091-225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1 - 944

()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256호(2016.08.25.)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수락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1-1 일대

나. 공원면적

- 기 정 : 6,692,795㎡

- 변 경 : 76,842㎡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 서울시고시[제2020-254호(2020.6.29.)] 도시관리 계획(도시 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사항 등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바.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66)

사. 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2021. 07

요구부서 : 노원구청

가. 수락산 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기 정(수락산 도시자연공원)						구분	변 경(수락산 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692,795.00	54,657.00	2	1,627.00	1,915.00	143	계	76,842.00	12,353.01	3	1,339.00	1,627.00	183	감 6,615,953㎡
공원 시설 구역	소계	606,268.00	54,657.00	2	1,627.00	1,915.00	143	소계	76,842.00	12,353.01	3	1,339.00	1,627.00	183	감 529,426.00㎡
	수락계곡 지구	342,860.00	8,941.00	-	126.00	126.00	-	-	-	-	-	-	-	-	감 342,860.00㎡
	노원골지 구	83,250.00	9,144.00	-	22.00	22.00	-	-	-	-	-	-	-	-	감 83,250.00㎡
	-	-	-	-	-	-	-	1지구	28,183.40	1,712.05	1	28.00	28.00	45	증 28,183.40㎡
	당고개 지구	48,668.00	11,100.00	2	1,311.00	1,599.00	143	2지구	45,714.60	10,640.96	2	1,311.00	1,599.00	138	감 2,953.40㎡
	-	-	-	-	-	-	-	3지구	1,480.00	-	-	-	-	-	증 1,480.00㎡
	동막골 지구	131,490.00	25,472.00	-	168.00	168.00	-	4지구	1,464.00	-	-	-	-	-	감 130,026.00㎡
시설지구외		6,086,527.00	-	-	-	-	-	-	-	-	-	-	-	-	감 6,086,527.00㎡
시설율 (법정40%)		54,657.00 / 6,692,795.00 x 100 = 0.81%						12,353.01 / 76,842.00 x 100 = 16.08%							
건폐율 (법정15%)		1,627.00 / 6,692,795.00 x 100 = 0.02%						1,339.00 / 76,842.00 x 100 = 1.74%							

나. 시설별 총괄표(시설지구)

구 분		기 정(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변 경(수락산 근린공원)					비고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4,657.00	2	1,627.00	1,915.00	143	12,353.01	3	1,344.30	1,632.30	183	감 42,303.99㎡
기 반 시 설	소계	18,237.00	-	-	-	-	6,808.35	-	-	-	-	증 11,428.65㎡
	도로	14,261.00	-	-	-	-	2,941.28	-	-	-	-	감 11,319.72㎡
	광장	3,976.00	-	-	-	-	3,867.07	-	-	-	-	감 108.93㎡
조경시설		2,880.00	-	-	-	6	550.90	-	-	-	6	감 2,329.10㎡
휴양시설		11,302.00	-	-	-	53	70.90	-	-	-	78	감 11,231.10㎡
유희시설		1,396.00	-	-	-	4	838.00	-	-	-	6	감 558.00㎡
운동시설		11,352.00	1	1,312.00	1,600.00	11	3,649.06	1	1,262.00	1,550.00	6	감 7,702.94㎡
교양시설		696.00	-	-	-	-	346.00	-	-	-	-	감 350.00㎡
편익시설		7,252.00	-	204.00	204.00	-	-	-	-	-	-	감 7,252.00㎡
관리시설		1,542.00	1	111.00	111.00	69	160.70	2	77.00	77.00	87	감 1,381.30㎡
녹지및기타		551,711.00	-	-	-	-	59,820.67	-	-	-	-	-

다. <변경> 지구별 세부조서

1-1 수락산 근린공원 1지구(신설)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1지구_신설)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28,183.40	1,712.05	1	28.00	28.00	45	신설 (현황반영)
기 반 시 설	소계	-	-	-	-	-	-	5,858.05	1,482.45	-	-	-	-	
	도로	-	-	-	-	-	-	5,710.05	1,334.45	-	-	-	-	
	광장	-	-	-	-	-	-	148.00	148.00	-	-	-	-	
휴양시설		-	-	-	-	-	-	70.90	70.90	-	-	-	25	
유흥시설		-	-	-	-	-	-	112.00	112.00	-	-	-	2	
관리시설		-	-	-	-	-	-	46.70	46.70	1	28.00	28.00	18	
녹지 및 기타		-	-	-	-	-	-	22,095.75	-	-	-	-	-	

1-2 수락산 근린공원 1지구(신설)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1지구_신설)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28,183.40	1,712.05	-	1	28.00	28.00	45	신설 (현황반영)
기 반 시 설	소 계			-	-	-	-	-	-	-			5,858.05	1,482.45	-	-	-	-	-	
	도 로			-	-	-	-	-	-	-			5,710.05	1,334.45	-	-	-	-	-	
	광 장			-	-	-	-	-	-	-	가	상계동 산149-12	148.00	148.00	-	-	-	-	-	
후 양 시 설	소 계			-	-	-	-	-	-	-			70.90	70.90	-	-	-	-	25	
	쉼터			-	-	-	-	-	-	-	나		70.90	70.90	-	-	-	-	-	
				-	-	-	-	-	-	-	나-1	상계동 산145-14	(16.00)	(16.00)	-	-	-	-	-	
				-	-	-	-	-	-	-	나-2	상계동 산149-12	(54.90)	(54.90)	-	-	-	-	-	
	파고라			-	-	-	-	-	-	-	①	전지역	-	-	-	-	-	-	2	
	평의자			-	-	-	-	-	-	-	②	전지역	-	-	-	-	-	-	8	
	등의자			-	-	-	-	-	-	-	③	전지역	-	-	-	-	-	-	4	
	체력단련 기구			-	-	-	-	-	-	-	④	전지역	-	-	-	-	-	-	11	
유 회	소 계			-	-	-	-	-	-	-		112.00	112.00	-	-	-	-	2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1지구_신설)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시 설	어린이 놀이터			-	-	-	-	-	-	-	다	상계동 산145-14	112.00	112.00	-	-	-	-	-	
	조합 놀이대			-	-	-	-	-	-	-	⑤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시소			-	-	-	-	-	-	-	⑥	어린이 놀이터	-	-	-	-	-	-	1	
관 리 시 설	소 계			-	-	-	-	-	-	-			46.70	46.70	-	1	28.00	28.00	18	
	관리 사무소			-	-	-	-	-	-	-	1	상계동 산149-12	46.70	46.70	-	1	28.00	28.00	-	
	공원 안내판			-	-	-	-	-	-	-	⑦	상계동 산149-12	-	-	-	-	-	-	1	
	방향 안내판			-	-	-	-	-	-	-	⑧	전지역	-	-	-	-	-	-	2	
	수목 보호판			-	-	-	-	-	-	-	⑨	전지역	-	-	-	-	-	-	3	
	공원등			-	-	-	-	-	-	-	⑩	전지역	-	-	-	-	-	-	10	
	볼라드			-	-	-	-	-	-	-	⑪	전지역	-	-	-	-	-	-	2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	-	-	-	-	-			22,095.75	-	-	-	-	-	-	
	녹 지			-	-	-	-	-	-	-			22,095.75	-	-	-	-	-	-	

1-3 수락산 근린공원 1지구(신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354.0	1,334.45 (4,375.60)				신설 (현황반영)
당 초	중 로	계			-	(4,375.60)	도시계획도로			
당 초		2류	1	-	-	(3,429.80)	도시계획도로			
당 초		2류	1	-	-	(504.20)	도시계획도로			
당 초		2류	2	-	-	(184.70)	도시계획도로			
당 초		2류	3	-	-	(256.90)	도시계획도로			
신 설	소 로	계			125.5	975.05				
신 설		3류	1	5.0~9.0	123.0	965.19	연결로	도시 계획도로	공원경계	
신 설		3류	2	4.0	2.5	9.86	진입로	공원경계	중로 2-1	
신 설	산책로	계			228.5	359.40				
신 설			1	2.0	18.0	36.00	산책로	녹지	산책로 4	
신 설			2	4.0	1.5	6.20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2	
신 설			3	1.5	89.0	134.94	산책로	산책로 2	도시 계획도로	
신 설			4	1.5	3.0	4.50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4	
신 설			5	1.5	67.0	102.24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4	
신 설			6	2.3	1.0	2.02	산책로	산책로 6	중로 2-1	
신 설			7	1.5	20.0	30.00	산책로	중로 2-1	운동마당 라-3	
신 설			8	1.5	29.0	43.50	산책로	중로 2-1	운동마당 라-3	

2-1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당고개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8,668.00	11,100.00	2	1,311.00	1,599.00	143	45,714.60	10,640.96	2	1,311.00	1,599.00	138	감 459.04㎡
기 반 시 설	소계	5,682.00	5,682.00	-	-	-	-	5,582.83	5,325.90	-	-	-	-	감 356.10㎡
	도로	1,706.00	1,706.00	-	-	-	-	1,606.83	1,606.83	-	-	-	-	감 99.17㎡
	광장	3,976.00	3,976.00	-	-	-	-	3,719.07	3,719.07	-	-	-	-	감 256.93㎡
조경시설		480.00	480.00	-	-	-	6	480.00	480.00	-	-	-	6	-
휴양시설		-	-	-	-	-	53	-	-	-	-	-	53	-
유희시설		726.00	726.00	-	-	-	4	726.00	726.00	-	-	-	4	-
운동시설		3,752.00	3,752.00	1	1,262.00	1,550.00	11	3,649.06	3,649.06	1	1,262.00	1,550.00	6	감 102.94㎡
교양시설		346.00	346.00	-	-	-	-	346.00	346.00	-	-	-	-	-
관리시설		114.00	114.00	1	49.00	49.00	69	114.00	114.00	1	49.00	49.00	69	-
녹지 및 기타		37,568.00	-	-	-	-	-	34,780.92	-	-	-	-	-	감 2,787.08㎡

2-2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기 정(당고개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48,668.00	11,100.00	-	2	1,311.00	1,599.00	143			45,714.60	10,640.96	-	2	1,311.00	1,599.00	138	
기 반 시 설	소 계			5,682.00	5,682.00	-	-	-	-	-			5,582.83	5,325.90	-	-	-	-	-	
	도 로			1,706.00	1,706.00	-	-	-	-	-			1,606.83	1,606.83	-	-	-	-	-	
	광 장	가		3,976.00	3,976.00	-	-	-	-	-	가		3,719.07	3,719.07	-	-	-	-	-	
		가-1	산151-1 공	(2,581.00)	(2,581.00)	-	-	-	-	-	가-1	상계동 산151-1	(2,581.00)	(2,581.00)	-	-	-	-	-	
		가-2	산151-1 공	(198.00)	(198.00)	-	-	-	-	-			-	-	-	-	-	-	폐지 (현황반영)	
		가-3	산151-1 공	(252.00)	(252.00)	-	-	-	-	-	가-2	상계동 산151-1	(252.00)	(252.00)	-	-	-	-	-	
		가-4	산151-1 공	(206.00)	(206.00)	-	-	-	-	-	가-3	상계동 산151-1	(206.00)	(206.00)	-	-	-	-	-	
		가-5	산151-1 공	(85.00)	(85.00)	-	-	-	-	-	가-4	상계동 산151-1	(26.07)	(26.07)	-	-	-	-	-	변경 (현황반영, 감 58.93㎡)
		가-6	산151-1 공	(14.00)	(14.00)	-	-	-	-	-	가-5	상계동 산151-1	(14.00)	(14.00)	-	-	-	-	-	
		가-7	산151-1 공	(302.00)	(302.00)	-	-	-	-	-	가-6	상계동 산151-1	(302.00)	(302.00)	-	-	-	-	-	
		가-8	산151-1 공	(338.00)	(338.00)	-	-	-	-	-	가-7	상계동 산151-1	(338.00)	(338.00)	-	-	-	-	-	
조 경	소 계			480.00	480.00	-	-	-	-	6			480.00	480.00	-	-	-	-	6	

구 분	시 설 명	기 정(당고개지구)									변 경(2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시 설	소폭포	나	산151-1 공	66.00	66.00	-	-	-	-	-	나	산151-1공	66.00	66.00	-	-	-	-	-	
	연 못	다	산151-1 공 113전	223.00	223.00	-	-	-	-	-	다	산151-1공 113전	223.00	223.00	-	-	-	-	-	
	장의자	①	산151-1 공	33.00	33.00	-	-	-	-	5	①	산151-1공	33.00	33.00	-	-	-	-	5	
	조형 파고라	②	산151-1 공	158.00	158.00	-	-	-	-	1	②	산151-1공	158.00	158.00	-	-	-	-	1	
휴 양 시 설	소 계			-	-	-	-	-	-	53			-	-	-	-	-	-	53	
	평의자	③	산151-1 공	-	-	-	-	-	-	17	③	산151-1공	-	-	-	-	-	-	17	
	등의자	④	산151-1 공 114전	-	-	-	-	-	-	30	④	산151-1공 114전	-	-	-	-	-	-	30	
	파고라	⑯	산151-1 공	-	-	-	-	-	-	1	⑯	산151-1공	-	-	-	-	-	-	1	
	사각 의자	㉑	산151-1 공	-	-	-	-	-	-	4	㉑	산151-1공	-	-	-	-	-	-	4	
	앉음벽	㉒	산151-1 공	-	-	-	-	-	-	1	㉒	산151-1공	-	-	-	-	-	-	1	
유 의 시 설	소 계			726.00	726.00	-	-	-	-	4			726.00	726.00	-	-	-	-	4	
	어린이놀 이터	라		726.00	726.00	-	-	-	-	-	라		726.00	726.00	-	-	-	-	-	

구 분	시 설 명	기 정(당고개지구)									변 경(2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라-1	산151-1 공	(116.00)	(116.00)	-	-	-	-	-	라-1	산151-1공	(116.00)	(116.00)	-	-	-	-	-	
		라-2	산151-1 공 113전	(220.00)	(220.00)	-	-	-	-	-	라-2	산151-1공 113전	(220.00)	(220.00)	-	-	-	-	-	
		라-3	산151-1 공 113전	(390.00)	(390.00)	-	-	-	-	-	라-3	산151-1공 113전	(390.00)	(390.00)	-	-	-	-	-	
	스페이스 넷	⑤	산151-1 공	-	-	-	-	-	-	1	⑤	산151-1공	-	-	-	-	-	-	1	
	미끄 럼틀	⑥	산151-1 공 113전	-	-	-	-	-	-	1	⑥	산151-1공 113전	-	-	-	-	-	-	1	
	통나무놀 이대	⑦	산151-1 공 113전	-	-	-	-	-	-	1	⑦	산151-1공 113전	-	-	-	-	-	-	1	
	기어 오르기	⑧	산151-1 공 113전	-	-	-	-	-	-	1	⑧	산151-1공 113전	-	-	-	-	-	-	1	
이 네 오 시 설	소 계			3,752.00	3,752.00	-	1	1,262.00	1,550.00	11			3,649.06	3,649.06	-	1	1,262.00	1,550.00	6	
	배드 민턴장	마	산151-1 공	600.00	600.00	-	-	-	-	-	마	산151-1공	600.00	600.00	-	-	-	-	-	

구 분	시 설 명	기 정(당고개지구)								변 경(2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인공 압벽	바	산151-1 공	925.00	925.00	-	1	-	-	2	바	산151-1공	925.00	925.00	-	-	-	-	-	변경 (현황반영) (2→0)
	능구장	사	산151-1 공	737.00	737.00	-	-	-	-	-	사	산151-1공	737.00	737.00	-	-	-	-	-	
	체력 단련장	아		228.00	228.00	-	-	-	-	-	아		125.06	125.06	-	-	-	-	-	
		아-3	산151-1 공	(61.00)	(61.00)	-	-	-	-	-	아-3	산151-1공	(61.00)	(61.00)	-	-	-	-	-	
		아-4	산151-1 공	(55.00)	(55.00)	-	-	-	-	-	아-4	산151-1공	(55.00)	(55.00)	-	-	-	-	-	
		아-5	산151-1 공	(53.00)	(53.00)	-	-	-	-	-	아-5	산151-1공	(5.38)	(5.38)	-	-	-	-	-	변경 (현황반영, 감 47.62㎡)
		아-6	산151-1 공	(59.00)	(59.00)	-	-	-	-	-	아-6	산151-1공	(3.68)	(3.68)	-	-	-	-	-	변경 (현황반영, 감 55.32㎡)
	균형대	㉑	산151-1 공	-	-	-	-	-	-	3	㉑	산151-1공	-	-	-	-	-	-	3	
	윗몸 일으키기	㉒	산151-1 공	-	-	-	-	-	-	2	㉒	산151-1공	-	-	-	-	-	-	2	
	레더	㉓	산151-1 공	-	-	-	-	-	-	1	㉓	산151-1공	-	-	-	-	-	-	1	

구 분	시 설 명	기 정(당고개지구)								변 경(2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실내 배드민턴 장	2	산151-1 공	1,262.00	1,262.00	철골조	지상 2층	(1,262.00)	(1,550.00)	-	2	산151-1공	1,262.00	1,262.00	철골 조	지상 2층	(1,262.00)	(1,550.00)	-	
교 양 시 설	소 계			346.00	346.00	-	-	-	-	-			346.00	346.00	-	-	-	-	-	
	야외 무대	자	산151-1 공	346.00	346.00	-	-	-	-	-	자	산151-1공	346.00	346.00	-	-	-	-	-	
관 리 시 설	소 계			114.00	114.00	-	1	49.00	49.00	69			114.00	114.00	-	1	49.00	49.00	69	
	관리 사무소	1	산151-1 공	114.00	114.00	-	1	49.00	49.00	-	1	산151-1공	114.00	114.00	-	1	49.00	49.00	-	
	조명 열주	㉔	산151-1 공	-	-	-	-	-	-	24	㉔	산151-1공	-	-	-	-	-	-	24	
	공원등	㉕	산151-1 공	-	-	-	-	-	-	44	㉕	산151-1공	-	-	-	-	-	-	44	
	종합 안내도	㉖	산151-1 공	-	-	-	-	-	-	1	㉖	산151-1공	-	-	-	-	-	-	1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7,568.00	-	-	-	-	-	-			34,780.92	-	-	-	-	-	-	
	녹 지		전지역	37,568.00	-	-	-	-	-	-			34,780.92	-	-	-	-	-	-	

2-3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726.00	1,706.00				
변 경					731.19	1,606.83				
신설		계			(56.3)	(292.72)	도시계획도로			
신설		3류	3-1	5.0~6.0	(56.3)	(292.72)	도시계획도로			
당 초	산책로	계			726.00	1,706.00				
변 경					674.89	1,606.83				
당 초			1	1.8	4.00	7.00	시설연결로	산책로 19	산책로2	
변 경			1	1.8	4.00	7.00	연결로	산책로 18	어린이놀이터 라-1	
폐 지			2	1.8	45.00	81.00	시설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2	
당 초			3	2.5	34.00	85.00	시설연결로	112-91	중심광장 가-1	
변 경			3	2.5	34.00	85.00	연결로	소로 3-1	광장 가-1	
당 초			4	1.5	50.00	75.00	시설연결로	산책로3	야외무대	
변 경			4	1.5	50.00	75.00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3	
당 초			5	2.0	37.00	74.00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3	
당 초			6	4.8	15.00	72.00	시설연결로	진입광장 가-2	중심광장 가-1	
변 경			6	4.8	15.47	70.53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당 초			7	2.0	81.00	162.00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11	
변 경			7	2.0	36.13	73.1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6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8	2.0	36.00	72.00	시설연결로	114전	조형파고라	
변 경			8	2.0	36.00	72.00	연결로	광장 가-6	조형파고라 ②	
당 초			9	2.0	29.00	58.00	시설연결로	조형파고라	산책로11	
변 경			9	2.0	29.00	58.00	연결로	조형파고라 ②	산책로11	
당 초			10	2.0	12.00	24.00	시설연결로	산책로11	산책로7	
변 경			10	2.0	9.40	20.36	연결로	산책로11	공원경계	
당 초			11	2.5	54.00	135.00	시설연결로	중심광장 가-1	진입광장 가-5	
변 경			11	2.5	48.80	126.49	연결로	광장 가-1	공원경계	
당 초			12	2.5	99.00	236.00	산책로	진입광장 가-5	광장 가-7	
변 경			12	2.5	99.00	236.00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6	
당 초			13	3.0	12.00	36.00	시설연결로	산책로 12	조형파고라	
변 경			13	3.0	12.00	36.00	연결로	산책로 12	조형파고라 ②	
당 초			14	3.0	6.00	18.00	시설연결로	산책로 19	중심광장 가-1	
변 경			14	3.0	6.00	18.00	연결로	산책로 18	광장 가-1	
당 초			15	1.3	2.00	3.00	시설연결로	관리사무소	산책로7	
변 경			15	1.3	2.00	3.00	연결로	관리사무소 1	산책로 7	
당 초			16	2.5	41.00	103.00	산책로	광장 가-7	중심광장 가-1	
변 경			16	2.5	41.00	103.00	산책로	광장 가-6	광장 가-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17	2.5	9.00	21.00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6	
당 초			18	3.2	116.00	370.00	산책로	산152-4임	산책로 19	
변 경			18	3.2	116.00	370.0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당 초			19	1.7	44.00	74.00	산책로	산152-4임	산책로 18	
변 경			19	1.7	79.55	135.1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8	
신 설			2	2.0	10.54	23.23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라-2	어린이놀이터 라-1	

3-1 수락산 근린공원 3지구(신설)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3지구_신설)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480.00	-	-	-	-	-	신설 (현황반영)
녹지 및 기타	-	-	-	-	-	-	1,480.00	-	-	-	-	-	

3-2 수락산 근린공원 3지구(신설)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3지구_신설)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	-	-	-	-	-	-			1,480.00	-	-	-	-	-	-	신설 (현황반영)
녹지 및 기타	소 계			-	-	-	-	-	-	-			1,480.00	-	-	-	-	-	-	
	녹 지			-	-	-	-	-	-	-			1,480.00	-	-	-	-	-	-	

3-3 수락산 근린공원 3지구(신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	-				
-		-	-	-	-	-		-	-	
당 초	산책로	계			-	-				
변 경					-	-				
-			-	-	-	-		-	-	

4-1 수락산 근린공원 4지구(동막골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동막골지구)						변 경(4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31,490.00	25,472.00	-	168.00	168.00	-	1,464.00	-	-	-	-	-	감 25,472.00㎡
기반시 설	소계	6,030.00	6,030.00	-	-	-	-	-	-	-	-	-	-	감 6,030.00㎡
	도로	6,030.00	6,030.00	-	-	-	-	-	-	-	-	-	-	감 6,030.00㎡
조경시설		2,400.00	2,400.00	-	-	-	-	-	-	-	-	-	-	감 2,400.00㎡
휴양시설		4,840.00	4,840.00	-	-	-	-	-	-	-	-	-	-	감 4,840.00㎡
유흥시설		670.00	670.00	-	-	-	-	-	-	-	-	-	-	감 670.00㎡
운동시설		3,230.00	3,230.00	-	50.00	50.00	-	-	-	-	-	-	-	감 3,230.00㎡
교양시설		350.00	350.00	-	-	-	-	-	-	-	-	-	-	감 350.00㎡
편익시설		6,676.00	6,676.00	-	68.00	68.00	-	-	-	-	-	-	-	감 6,676.00㎡
관리시설		1,276.00	1,276.00	-	50.00	50.00	-	-	-	-	-	-	-	감 1,276.00㎡
녹지 및 기타		106,018.00	-	-	-	-	-	1,464.00	-	-	-	-	-	-

4-2 수락산 근린공원 4지구(동막골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기 정(동막골지구)								변 경(4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31,490.00	25,472.00	-	-	168.00	168.00	-			1,464.00	-	-	-	-	-	-	
기 반 시 설	소 계			6,030.00	6,030.00	-	-	-	-	-			-	-	-	-	-	-	-	폐지 (현황반영)
	도 로			6,030.00	6,030.00	-	-	-	-	-			-	-	-	-	-	-	-	
조 경 시 설	소 계			2,400.00	2,400.00	-	-	-	-	-			-	-	-	-	-	-	-	폐지 (현황반영)
	잔디밭	21	상계 산155	2,400.00	2,400.00	-	-	-	-	-			-	-	-	-	-	-	-	
휴 양 시 설	소 계			4,840.00	4,840.00	-	-	-	-	-			-	-	-	-	-	-	-	폐지 (현황반영)
	야유 회장	24	상계 산155	1,000.00	1,000.00	-	-	-	-	-			-	-	-	-	-	-	-	
	야유 회장	25	상계 산155	1,600.00	1,600.00	-	-	-	-	-			-	-	-	-	-	-	-	
	야유 회장	27	상계 산155	1,140.00	1,140.00	-	-	-	-	-			-	-	-	-	-	-	-	
	야영장	29	상계 산155	1,100.00	1,100.00	-	-	-	-	-			-	-	-	-	-	-	-	
유 의 화 시 설	소 계			670.00	670.00	-	-	-	-	-			-	-	-	-	-	-	-	폐지 (현황반영)
	모험 놀이장	28	상계 산155	670.00	670.00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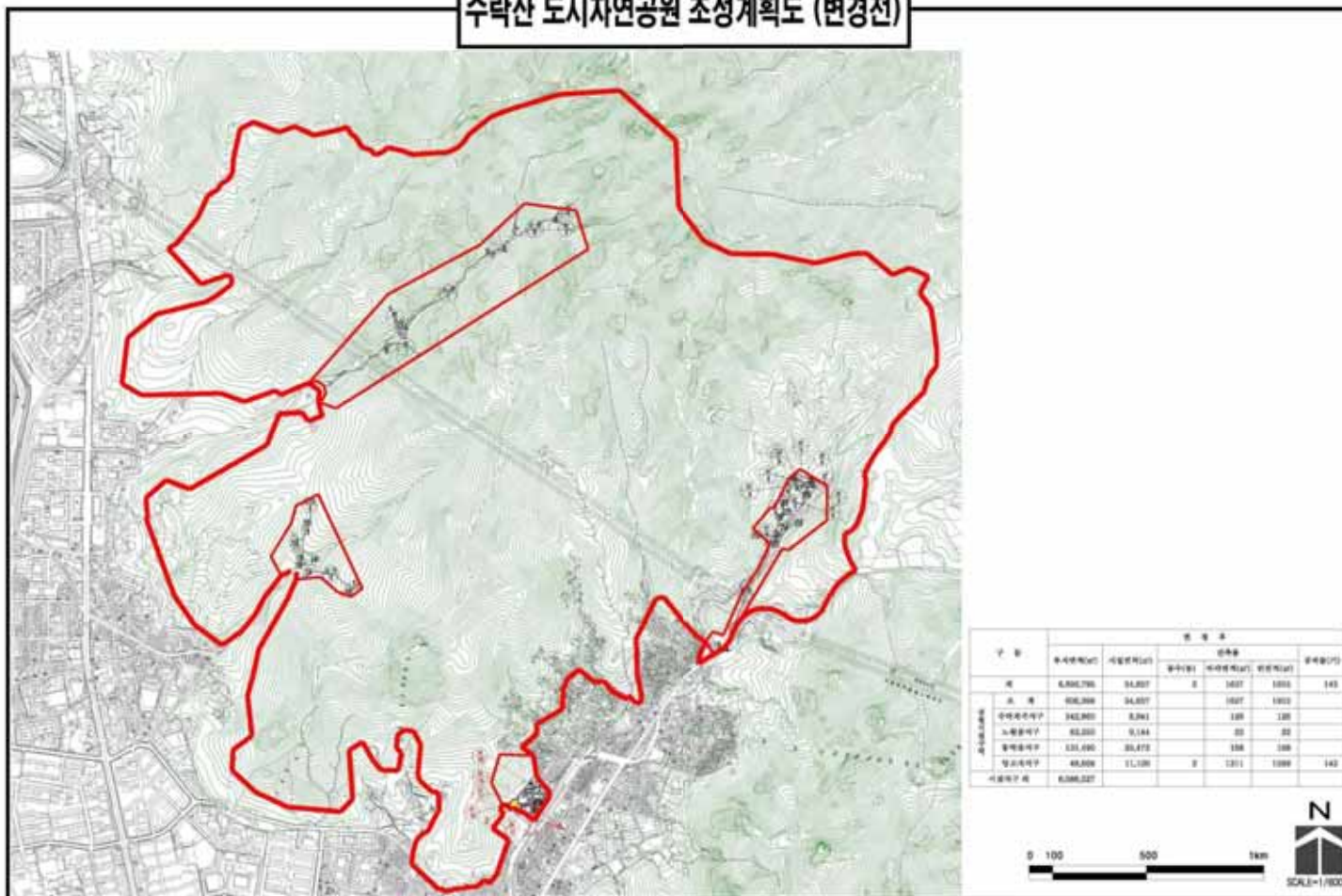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명	기 정(동막골지구)									변 경(4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 시설	소 계			3,230.00	3,230.00	-	-	50.00	50.00	-			-	-	-	-	-	-	-	폐지 (현황반영)
	체력 단련장	20	상계 산155	730.00	730.00	-	-	-	-	-			-	-	-	-	-	-	-	
	국공장	23	상계 산155-1	2,500.00	2,500.00	-	-	50.00	50.00	-			-	-	-	-	-	-	-	
교양 시설	소 계			350.00	350.00	-	-	-	-	-			-	-	-	-	-	-	-	폐지 (현황반영)
	임간 교실	26	상계 산155	350.00	350.00	-	-	-	-	-			-	-	-	-	-	-	-	
편의 시설	소 계			6,676.00	6,676.00	-	-	68.00	68.00	-			-	-	-	-	-	-	-	폐지 (현황반영)
	매점	31	상계 산155-1	12.00	12.00	-	-	12.00	12.00	-			-	-	-	-	-	-	-	
	매점	32	상계 산155-1	12.00	12.00	-	-	12.00	12.00	-			-	-	-	-	-	-	-	
	매점		상계 산155-1	6.00	6.00	-	-	6.00	6.00	-			-	-	-	-	-	-	-	
	주차장	19	상계동 32-4	6,600.00	6,600.00	-	-	6.00	6.00	-			-	-	-	-	-	-	-	
	공중 변소		상계 산155-1	16.00	16.00	-	-	16.00	16.00	-			-	-	-	-	-	-	-	
	공중 변소		상계 산157	8.00	8.00	-	-	8.00	8.00	-			-	-	-	-	-	-	-	

구 분	시 설 명	기 정(동막골지구)									변 경(4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중 변소		상계 산155-1	8.00	8.00	-	-	8.00	8.00	-			-	-	-	-	-	-	-	
	취사장		상계 산155-1	14.00	14.00	-	-	-	-	-			-	-	-	-	-	-	-	
관 리 시 설	소 계			1276.00	1276.00	-	-	50.00	50.00	-			-	-	-	-	-	-	-	폐지 (현황반영)
	관리 사무소	30	상계 산155-1	1276.00	1276.00	-	-	50.00	50.00	-			-	-	-	-	-	-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106,018.00	-	-	-	-	-	-			1,464.00	-	-	-	-	-	-	
	녹 지			106,018.00	-	-	-	-	-	-			1,464.0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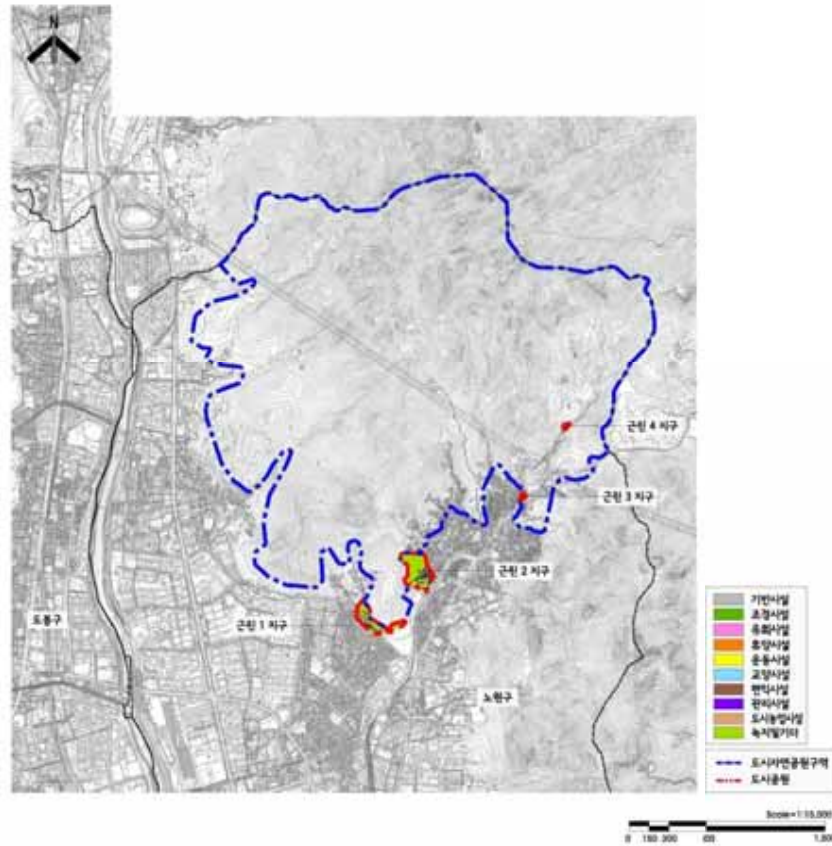
4-3 수락산 근린공원 4지구(동막골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2,054.00	6,030.00				
변 경					-	-				
당 초	소 로	계			1,366.00	4,998.00				
변 경					-	-				
폐 지		3	1	5.0	450.00	2,250.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3	5	3.0	258.00	774.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3	6	3.0	156.00	468.00				
폐 지		3	7	3.0	450.00	1,350.00				
폐 지		3	8	3.0	52.00	156.00		상계 30	상계 산 157	
당 초	산책로	계			688.00	1,032.00				
변 경					-	-				
폐 지			5	1.5	150.00	225.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6	1.5	20.00	30.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7	1.5	66.00	99.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8	1.5	126.00	189.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9	1.5	58.00	87.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10	1.5	124.00	186.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11	1.5	34.00	51.00		상계 산 155	상계 산 155	
폐 지			12	1.5	110.00	165.00		상계 산 157	상계 산 155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도 (변경전)



수락산 근린공원 조성계획도 (변경후)



■ 총합표

구분	총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부지 총 면적	76,842.00	28,183.40	45,714.60	1,480.00	1,464.00
사업 총 면적	12,353.01	1,712.05	10,640.96	-	-
기타	6,808.35	1,482.45	5,325.90	-	-
도로	2,941.28	1,334.45	1,606.83	-	-
공원	3,867.07	148.00	3,719.07	-	-
조경시설	480.00	-	480.00	-	-
휴식시설	70.90	70.90	-	-	-
체육시설	838.00	112.00	726.00	-	-
운동시설	3,649.06	-	3,649.06	-	-
교양시설	346.00	-	346.00	-	-
연식시설	-	-	-	-	-
도시농업시설	160.70	40.70	114.00	-	-
녹지 일기터	50,820.67	22,095.75	34,780.87	1,480.00	1,464.00
동수(동)	3	1	2	-	-
건축물 비적면적	1,339.00	28.00	1,311.00	-	-
연면적	1,627.00	28.00	1,599.00	-	-
공원율(%)	163	45	136	-	-
비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	-
	4,008.32	4,375.00	292.72	-	-

* 공원시설율 : 12,353.01 / 76,842.00 = 16.08%

* 도시자연공원계획상 청소산수면시설 노선유지 및 운동시설율

: 3,649.06 / 15,076.54 = 24.54%

* 건축율 : 1,339.00 / 76,842.00 = 1.74%

2021 - 1159

() ()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5호(2001.06.2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3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된 불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21.07.15.(목)

나. 열람기간 : 2021.07.16.~07.29.(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4)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272-5번지 일대	160,531	증)18,713	179,244	1996.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 1166

()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1973.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3호(1974.3.7.), 은평구고시 제1994-50호(1994.10.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은평구고시 제2020-26호(2020.3.19.)로 실시계획 작성고시된 “불광동 166-8~168-26 도로개설”, “불광동 301-8~301-46 도로개설”, “불광동 76-8~452-9 도로개설”, “불광동 171-46~산8-1 도로개설”, “신사동 171-4~171-19 도로개설”, “신사동 237-539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를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연번	사업종류 및 명칭	시행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불광동 166-8~168-26 도로개설	은평구 불광동 166-8~168-26	B=6m L=112m	2020.03.19. ~ 2021.02.19.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불광동 301-8~301-46 도로개설	은평구 불광동 301-8~301-46	B=4m L=80m	2020.03.19. ~ 2021.04.16.
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불광동 76-8~452-9 도로개설	은평구 불광동 76-8~452-9	B=6m L=64m	2020.03.19. ~ 2021.04.16.
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불광동 171-46~산8-1 도로개설	은평구 불광동 171-46~산8-1	B=6m L=112m	2020.03.19. ~ 2021.02.19.
5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신사동 171-4~171-19 도로개설	은평구 신사동 171-4~171-19	B=10m L=66m	2020.03.19. ~ 2021.06.11.
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신사동 237-539 도로개설	은평구 신사동 237-539	B=3m L=35m	2020.03.19. ~ 2021.05.14.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다.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도로과(☎351-79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 1162

() ()
(755 - 1 2)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7-414호(2017.3.30.)로 열람공고한 강서구 내발산동 755-1번지 공공시설용지2의 용도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서울특별시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고 관련до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 ①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②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692)
- ③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2	내발산동 737-193일원	812.5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변경
변경	2	내발산동 755-1번지	812.5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시설용지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획지번호)	공공2	공공2	변경없음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변경없음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5층 이하	5층 이하	변경없음
계획 내용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제외), 교육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연구시설, 운동시설 •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무소에 한함) ※ 단,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50% 미만으로 한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변 : 2m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기정	-	내발산동 755-1번지
	변경	• 근린생활시설용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계획 -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4% 이상 - 조성방식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시설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당해 용도는 향후 운영기간이 종료될 경우, 운영 행정기관이 타 공공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설위치 : 지상3층 - 시설규모 : 연면적 132㎡ 이상, 부속토지 66㎡ 이상	

④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9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 - 18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사업장 부재로 행정처분 사항의 열람·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양천소방서장

1. 공고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알림

2. 공고기간: 2021. 7. 15.

3. 공고내용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7600(2021.6.7.) 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주식회사 현이엔지]』

나. 예방과-7830(2021.6.10.) 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다. 예방과-8411(2021.6.23.) 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계획』

라. 예방과-9092(2021.7.5.) 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마. 예방과-9493(2021.7.12.) 호 『소방시설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개최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2. 양천소방서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처분내용 (위반일자) (처분일자)
주식회사 현이엔지	이건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6-02-00379] (2015-02-05)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나. 3차	등록취소 (2020.9.21.) (2021.7.12.)
※ 사업자 등록번호		108-86-15607(2019.1.31. 사업자 말소로 나라장터 처분사항 입력 불가)				

끝.

2021 - 18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자(사전통지과태료 부과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7.15. ~ 2021. 7.28.(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1. 7.29. ~ 2021. 8.1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위반장소
1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6	000009	김*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마스크 미착용	2021-06-23 02:10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가길 *	***호 (사당동)	잠원한강공원 2호 매점 옆 그늘막
2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6	000010	박*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마스크 미착용	2021-06-23 02:10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논현동)	잠원한강공원 2호 매점 옆 그늘막
3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6	000011	엄*유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마스크 미착용	2021-06-23 02:10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 (역삼동)	잠원한강공원 2호 매점 옆 그늘막



2021 - 321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강남구청장 (치수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43-1번지 및 343-2번지 일원
 - 면 적: 37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하수관로 설치
 - 내 역: 강관(D=2600mm, L=67.6m / D=1600mm, L=67.6m),
차집관거 연결흡관(D=600mm, L=67.6m),
유출부 집수정 5.2×13.6×8.4m
5. 점용기간: (당초) 2014.09.21. ~ 2019.09.20.
(변경) 2019.09.20. ~ 2024.12.31.

2021 - 322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성동구청장 (지역경제과)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360 (성수동2가 623)
 - 면 적: 0.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상징조형물 설치
 - 내 역: 조형물(0.3×1.6) 1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6.07.12. ~ 2021.07.11.
(변경) 당초허가만료일 ~ 2026.12.31.

2021 - 326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장 (물재생시설과)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번지 등 7필지
- 면 적: 6,853.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차집관로 설치
- 내 역: 암거 1,239m (3.0×3.0m, L=656m / 2.0×2.0m, L=583m),
관로 131m (D1500×1열, D1100×2열)

5. 점용기간: (당초) 2015.11.17. ~ 2020.11.16.

(변경) 2020.11.17. ~ 2025.12.31.

2021 - 327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급수운영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일원
 - 면 적: 2.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급수관 설치
 - 내 역: 급수관 D=20mm, L=115m, 계량기보호소 1식
5. 점용기간: (당초) 2006.04.17. ~ 2011.04.16.
 (변경) 2011.04.17. ~ 2016.04.16. (서울 제886-2호)
 2016.04.17. ~ 2021.04.16. (서울 제886-3호)
 2021.04.17. ~ 2026.06.30. (서울 제886-4호)

2021 - 329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교통부 장관 (첨단항공과)
 - 주 소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어진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7-105번지 일원
 - 면 적 : 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드론착륙장 및 안전펜스 설치
 - 내 역 : 드론착륙장(3m×3m) 1개소, 안전펜스 1개소
5. 점용기간 : 2021.07.09. ~ 2021.11.19.
6. 공사기간 : 점용기간 내 매주 토·일요일 13시~18시,
시행 당일 설치 후 당일 해체

2021 - 331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과)
 -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일원
 - 면 적: 8,195.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헬리포트 설치
 - 내 역: 활주로, 계류장, 유도로, 주차장, 콘테이너, 울타리, 경관조명등, 풍향등 등
5. 점용기간: (당초) 2016.02.05. ~ 2021.02.04.
(변경) 2021.02.05. ~ 2026.06.30.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